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4권중 제4권

2009.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0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 제2권 : 식량·원예·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찾기)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7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V. 기타 주요사항	14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식량·원예·식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	15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80
3. 농지매입·비축사업	197
4. 배수개선사업	211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2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3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0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5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80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91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300
1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19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337
14. 농기계 임대사업	353
II. 생산 및 유통개선	373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375
16.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04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22

【원예·식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431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33

1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446
20.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459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69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0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5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25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539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551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563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5
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96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41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5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49
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654
34. 생산자용·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663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669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693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23
37.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25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42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759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78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794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811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19
43.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	821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839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849
4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75
II. 기술개발	1011
47. 농림기술개발사업	1013
48. 신기술보급사업	1021
III. 인력육성	1031
49.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33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48
IV. 소득보전	1061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063
5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31
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40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72
5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89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210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1216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252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275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307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309

61. 한계농지정비사업	1350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359

【임업·산촌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1375
63. 산림경영계획사업	1377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1386
65. 산림소득증대사업	1403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38
67. 산림수목원지원사업	1445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51
6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462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1470
II. 산림자원조성	1483
71. 조림·숲가꾸기사업	1485

제4권 축산·수산·광특회계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1501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03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1532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548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57
76. 마필산업육성사업	1582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91
78. 양봉산업육성사업	1599
79. 낙농체험 관광사업	1610

II. 생산 및 유통개선	1623
80.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1625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631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40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684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745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55
85.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1757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1768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79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781
88.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1796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23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1829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831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840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864
IV. 소득보전	1887
9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889
94.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07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915

【광특회계】

9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927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955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969

99.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2007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2034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041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49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2067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080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087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김정욱 사무관 우만수·안규정	02-500-2041 02-500-2052~3, 2070~1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장 송택호 팀장 신동렬	02-2127-7400 02-2127-7437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조사료 자급율(%)	84	78	80	82	2010.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225	123	150	193	2010.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 청보리등 사일리지용 재배면적(천ha)	60	12	23	40	2010.3	시·도별 농가 파종면적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6,262	41,400	81,897	100,200	414,800
보 조	20,601	34,500	71,497	89,800	383,600
용 자	5,661	6,900	10,400	10,400	31,2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
 - 재배농가 :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재배농가 유형>

- 지역 농·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
-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
-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 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3. 지원대상

- 동·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 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하계작물은 수확 후 트렌치 사일로 보관분 포함)
-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일리지 제조비 : 보조 100%(축발기금 보조 60%, 지방비 40%)
- 유통비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0천원/톤, (하계 사료작물) 20천원/톤
 - 시·군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함
-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30천원/톤 임
 - 유통되는 조사료는 반드시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 부착 제품은 관외 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상 품 명	(곤포, 소포장)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 가 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	연 락 처	000-0000-0000
품 질 등 급		주 의 사 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규격 : 가로20cm * 세로 10cm, 재질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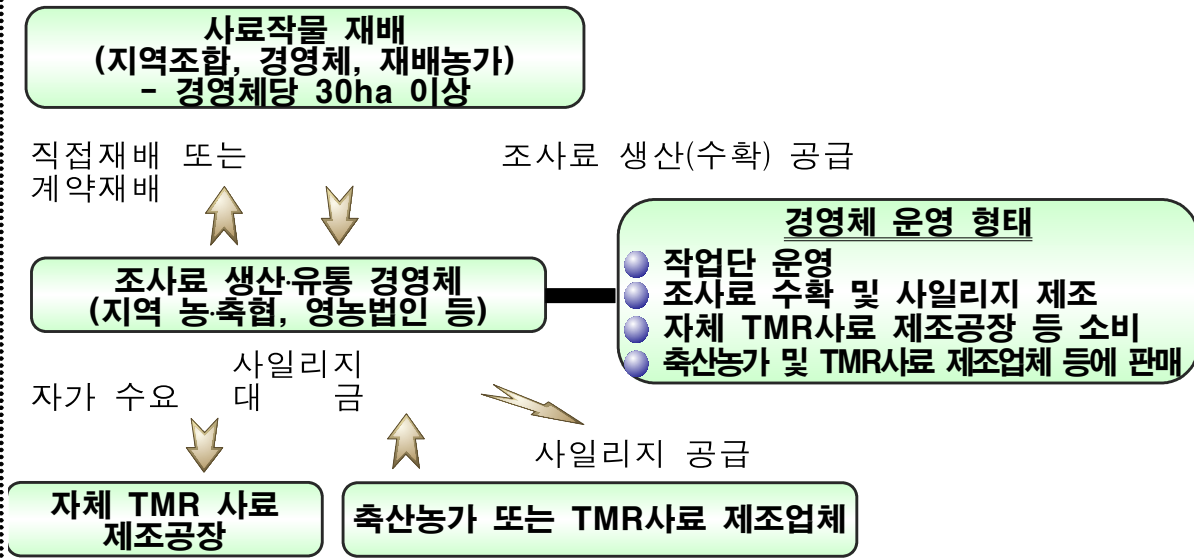
<별표 2>

조사료 품질 등급 표기(양식)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중 량(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급(A~C)	A	A	B	C

- 제조비 및 유통비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공급계약 체결
 -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경영체는 보리·호맥 등 사료작물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1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경영체가 협의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
 - 경영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곤포 사일리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 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임대 추진

②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농가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기계·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는 <별표 3> 참조

<별표 3>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기계·장비 (예)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운		플라우	4연	
정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비		퇴비살포기	4톤	
파종		파종기	12조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	4톤	
예취		모우어	2.4m	
		하베스트	1~3조	
집초		레이크	3.0m	
곤포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골조식조인드, 절단 네트장치 포함)	드럼폭174cm내외	사각도 가능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100	
	적재기	적재기(로더,그래플 포함)		
합계				

※ 장비구입가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 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준용

- 개별농가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등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랜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섬유질사료가공공장(TMR)의 사일로 용량은 1기당 500톤을 기준으로 하되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절단기능, 소포장기계 등 포함)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 공사가 진행 중인 간척지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기존 보유한 기계·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기계·장비 지원을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개별농가·섬유질사료가공공장 : 용자 8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에서 조사료용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장비구입단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 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참조
 - 지원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의 경우 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형식검사나 안전검증 등을 받지 않은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을 확인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 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② 위의 ①호 이외 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2.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제조·수입업자, 별표 4·5 참조)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6cm
작업기명		
형식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종명	부착위치
트랙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종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우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베스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이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일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뽀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③ 벚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벚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벚짚 등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처리비
- 벚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비닐랩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비닐 구입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지원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동일한 용도(시설)에 대해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에서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기본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용자 50%
- 기본시설 : 축발기금 용자 80%, 자부담 20%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자금 지원기준은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총채벼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촉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
-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역 농·축협 및 낙농육우협회 등을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을 지원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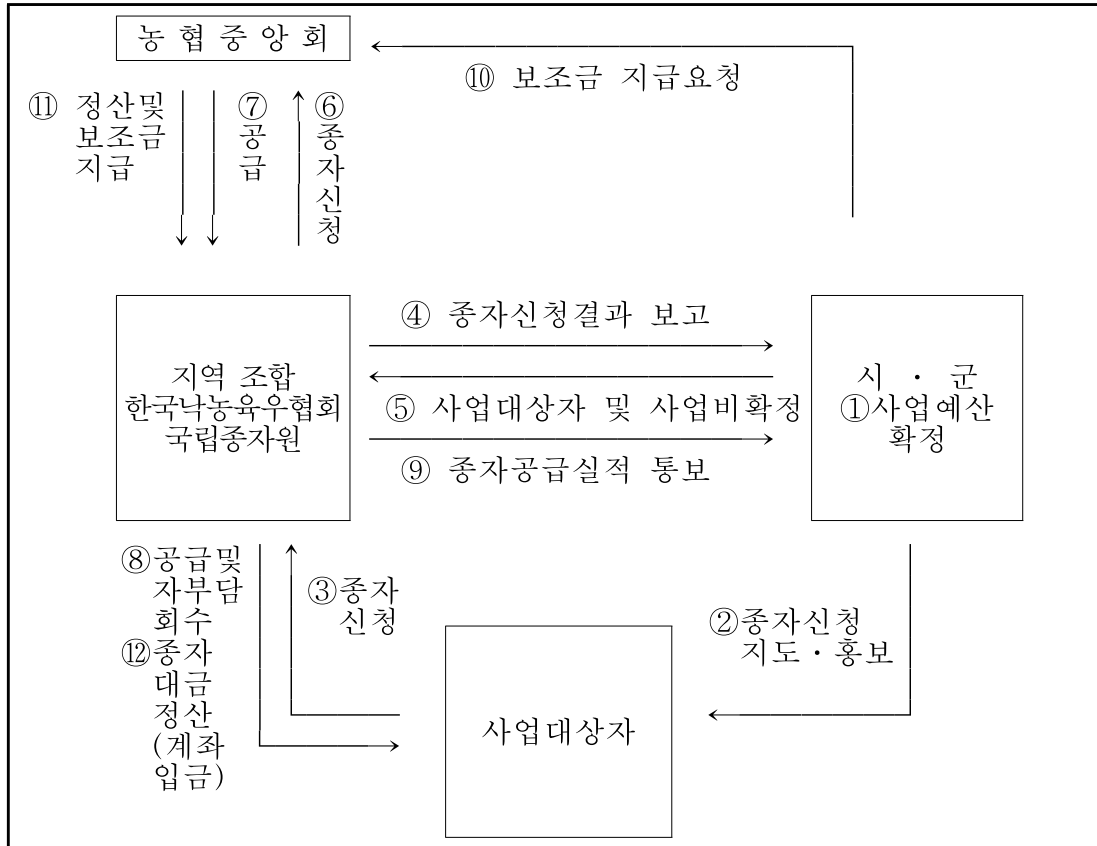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요청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 자 공 급 체 계 도



※ ⑥,⑦은 지역조합만 해당되며, ⑧ 종자대금 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⑥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가공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등(토지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액은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전년도 12월)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 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서식 4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전년도 3월)
-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전년도 9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경영체는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영체는 농가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10. 1월말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 기재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10. 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지원 계획 등을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 3월말)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사업희망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 시·도의 검토를 거쳐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대상자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를 사용하지 않겠음”을 확약한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는 세부시행요령을 수립한 후

각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통보(1월말)

* 시·도(시·군)은 경영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 세부시행요령 :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사업 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구·판매 수요제출
 - 생산주체 :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를 제조 또는 확보한 경영체
 - 구매주체 :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제조시설에서는 수입조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후 <서식 5>, <서식 6>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추진(보고기한 : 전년도 11.10)
 -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개별농가 기계·장비, 밧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6>에 따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11.1.31까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식품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후 그 결과를 <서식 1>, <서식 2>, <서식 5>, <서식 6>, <서식 7>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서식 1>, <서식 5>, <서식 6>, <서식 7>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동계 '10.7월, 하계 10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종료시 추진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식품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기계 구입지원사업과 동일)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 및 살포대상지 도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곤포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 점검일정 :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재배농가가 곡실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정부수매대상 보리에서 제외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 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 보 고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중앙회
·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계획·실적 보고 * <서식 5>, <서식 6>	(하계) 당해연도 10월 (동계) 당해연도 7월	시·도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원실적 * <서식 1>	(동·하계) 당해연도 10월	농협중앙회
· 사료작물·목초 종자 공급실적 보고 * <서식 7>	(하계) 당해연도 7월 (동계) 당해연도 10월	시·도, 농협중앙회
· 사료작물 파종실적 보고 * <서식 5> 참조	(하계) 당해연도 6월 (동계) 당해연도 11월	시·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제재》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3.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 경영체에 대하여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
 -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여주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용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 시·도(시·군)에서는 연 1회 이상 원료사용 실적 등을 확인하고, 협약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관계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조사료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등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조사료 자급률 : 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 사료작물 재배면적 : 종자공급실적(정책지원량 및 자가 확보량) 및 파종·수확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시·도별 사료작물 종자 공급실적 집계, 파종 및 수확실적 등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측정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0.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0.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0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0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0.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1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0.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 ('10.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1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11.1월

201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실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톤 (ha)							톤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채 - 개별농가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볏짚등 부존자원 활용 -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기 톤							기 톤							
⑤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⑥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⑦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ha)							톤 (ha)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설치지원	개							개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계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청보리										-
	호밀										-
	라이그라스										-
	귀리										-
	기타										-
	계	-	-	-	-	-	-	-	-	-	-

<서식 3>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주소 : (생년월일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천원 (100%)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 출 등 각종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10~'11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5>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 배 면 적 (ha)										생 산 · 구 매 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서식 6>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대)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 러 등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2010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 가 확 보 분			계 (A+B)	
	농협 중앙회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 가 채종	자 체 구입		소 계 (B)
○사료작물종자									
- 청보리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호밀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 귀 리									
- 유 채									
- 기 타									
소 계									
합 계									

73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59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배효문 팀 장 신용식	02-2080-6550 02-2080-6553

I.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한우사업단 소속 번식농가의 번식률 및 송아지 폐사를 줄이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번식농가 및 비육농가의 가축비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사업단컨설팅과 초음파육진단료 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년간 현황			산출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한우1등급 이상 출현율(%)	57.0	51.0	54.0	55.7 ('09.10월 누계)	'11년 1월중	'10.1~12월까지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	9,600	38,400
보 조	-	-	-	4,000	16,00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5,600	22,4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초음파진단료 지원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

3. 지원대상

- 기초한우사업단(농림수산식품부 인증)
-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한 기초한우사업단에 지원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2~27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으로 2회 초음파 진단한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한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를 제공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업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30%, 자부담 또는 지방비 70%
- 사업량 : 연간 400천두(200천두*2회 초음파진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0,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000원, 자부담(지방비) : 14,000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생후 22~27개월령 거세 비육우에 대한 2~3개월 간격 진단 2회 한함

② 한우사업단컨설팅 지원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기초한우사업단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인증한 한우사업단
 - 사업대상 우선순위 :
 - 한우사업단 컨설팅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인증시 인증 점수 및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사업단 주체별로 구분 적용 : 축협, 비축협), 참여농가 또는 사육규모가 큰 사업단 순서
 - 개량컨설팅 : 한우사업단으로서 한우암소검정 시범사업 지정 사업단을 개량컨설팅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
 - 시·도는 컨설팅 희망사업대상자를 추천
- * 당해연도에 한우사업단 컨설팅과 개량컨설팅은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사업단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사업단 컨설팅

- 한우사업단 운영 체계
- 번식우 및 비육우의 사양관리 체계 및 공동출하 체계 구축
-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개량 컨설팅
- 한우사업단의 브랜드 육성 지도 등

○ 개량 컨설팅

- 한우암소 검정 시범사업 지정 사업단의 개량 컨설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업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100%

- 사업량 : 연간 40개소(한우사업단컨설팅 20개소, 개량컨설팅 20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0백만원/년(단, 개량컨설팅은 10백만원/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초음파진단료 지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기초한우사업단 인증결과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09.12월)
 - 농협중앙회, 기초한우사업단, 지자체(시·군 및 도) 및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10.1~2월)
 - 기초한우사업단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지자체(시·군 및 도)

-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자기 부담금을 농가지원 예산에 반영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소속농가의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협중앙회에 참여 신청('10.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기초한우사업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대상 선정결과와 함께 세부사업실시요령을 해당 기초한우사업단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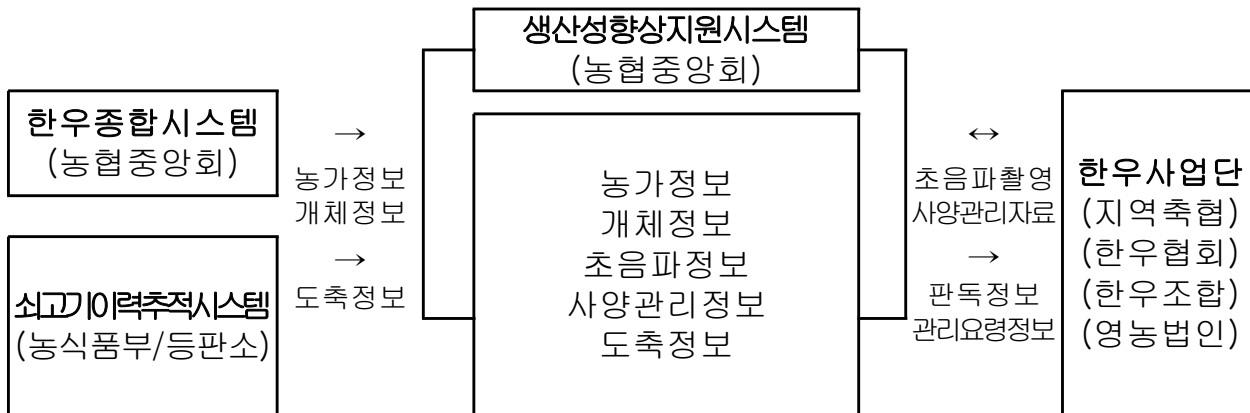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요청한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심의한 후 농협중앙회에 결과 통보('10.3월)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승인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사업홍보와 초음파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실적 보고(분기, 연말)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전산관리시스템 체계도>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초음파육질진단 관련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기초한우사업단은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기초한우사업단은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자부담 및 지방비를 별도 계정과목(또는 별도 회계)으로 정리하여 관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추진실적에 따라 기초한우사업단의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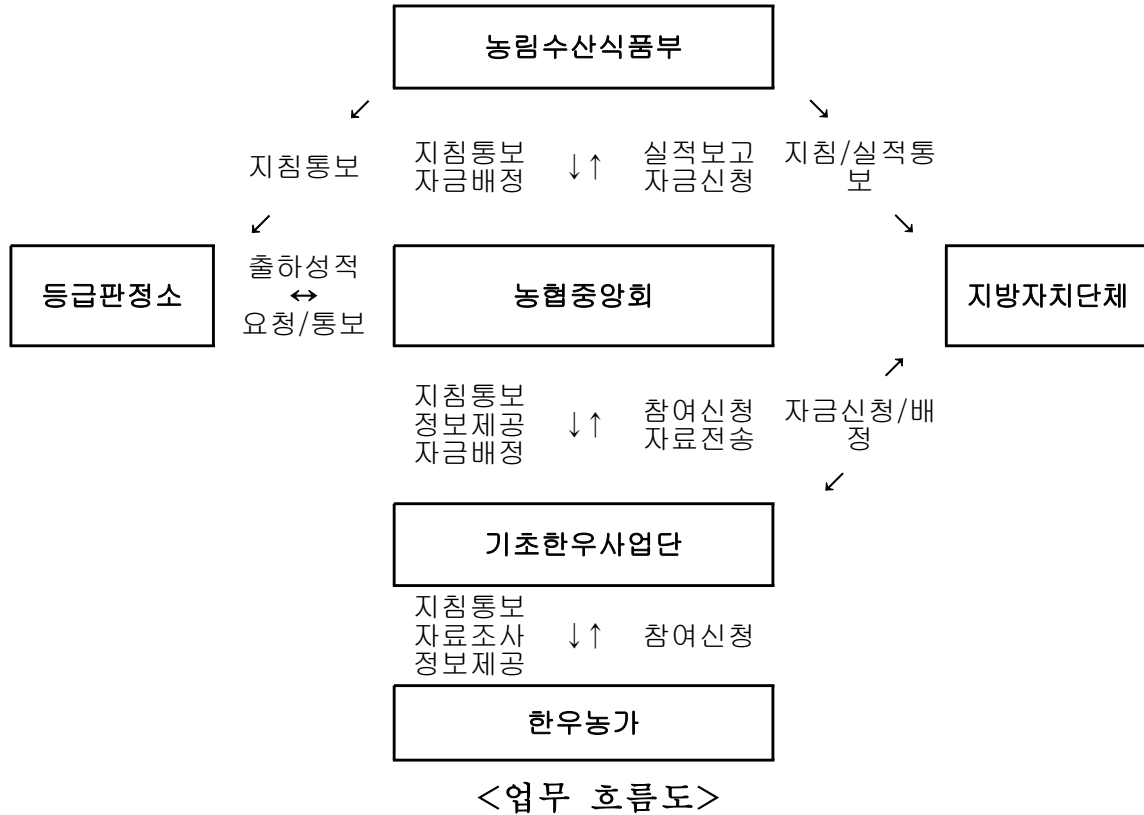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는 기초한우사업단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서 보조금 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
- 농협중앙회는 사업관리비와 정보 제공료를 기초한우사업단에게 청구

시·군 및 도(지자체)

- 시·군 및 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 부담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지방비 지원 지자체에 한함)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자기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청구
 - 지자체부담금 및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기초한우사업단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보전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농가부담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별 항목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규모 : 연간 2회 이상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등에 반영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점검규모 : 연간 4회 이상(기초한우사업단)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 대상축의 개체식별번호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지 않은 조작됐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기타 관련자료가 허위이거나 본 사업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10년도 1~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시 기 : 사업년도 12월 중
- 담 당 : 농협중앙회
- 대 상 : 사업참여 기초한우사업단 소속 참여농가(100여명 내외)
- 방 법 : 설문조사(팩스 및 우편)
- 내 용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 기 : 사업년도 12월 중
- 담 당 : 농협중앙회
- 방 법 : 성과지표항목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 고 : 평가결과는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의 성과미흡 시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개선 추진

② 한우사업단컨설팅 지원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0.1~2.10)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10.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10.3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 지도·감독

3. 컨설팅 업체의 지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단, 사업단이 컨설턴트를 지명한 경우 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을 실시하여 [붙임3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

정. 단, 개량컨설팅기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통보된 컨설팅기관(대학 및 가족개량기관)으로 함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기초한우사업단 종합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우사업단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개량컨설팅기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선정된 개량컨설팅기관으로 함)
-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으로 구성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기초한우사업단과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농가 생산성 향상실적(번식율, 고급육출현율, 출하 월령, 공동출하량, 암소개량, 교육 등)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계약서 작성(단, 개량컨설팅은 유전능력평가, 검정자료 수집분석 등이 포함)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컨설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보조금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요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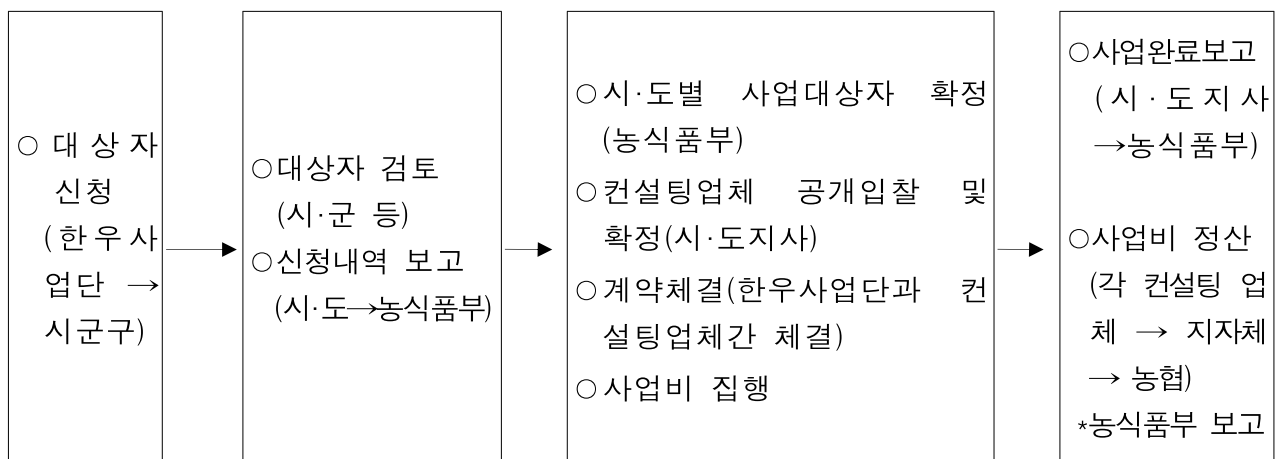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지원 지자체에 한함)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기초한우 사업단에게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기)
-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기초한우사업단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 포함)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한우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 교육실적, 개량실적,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기초한우사업단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3)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10년도 1~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 계획대비 참여 사업단수를 파악하여 목표 달성여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계량화 하여 분석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 2010년도 한우사업단 운영 평가('10.11월)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우선 순위 확정

<붙임 1>

기초한우사업단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한우사업단명 :

2. 소재지 :

3. 주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

4. 사업단 규모(농가수, 사육두수 등)

* 참여농가수(번식, 비육, 일관), 사육두수(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등 구분 기재

* 참여농가 사양관리, 개량, 계통출하계획, 농가교육계획 등 사업단 주요 사업 내용 등

5.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단 운영 체계 부문
- 농가 관리 부문(번식·비육우 사양관리 및 공동출하)
- 암소개량 부문
- 기타 부문

6.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기초한우사업단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1. 컨설팅 한우사업단 개요

- 한우사업단명 :
- 소재지 :
- 주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
- 사육두수 : 구체적으로 작성
 - 참여농가수(번식, 비육, 일관), 사육두수(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등 구분 기재
- 농가 등록번호 :

2. 컨설팅 업체 현황

- 업체명 :
- 컨설팅 전문가 :

3. 한우사업단 사업 향상 실적

컨설팅 항목	계 획	실 적
○ 번식우 개량실적		
○ 공동출하 실적		
○ 거세우 고급육 출현율		
○ 거세우 출하월령		
○ 농가 교육 실적		
○ 컨설팅 비용 확보 및 집행		
○ 기타 컨설팅 관련사항		

* 계획 및 실적 : 컨설팅업체가 제시한 컨설팅 당초 계획(일정 등)에 따른 실적기재

* 자금확보 및 집행실적은 항목별로 기재하되,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증빙자료 징구 등을 통한 최종 정산

4. 컨설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첨부) : 기초한우사업단별 최종 컨설팅 내용에 대한 평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기초한우사업단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수의·사양·육종·번식·식육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분야 컨설팅지도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대학,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개별사항]

- 컨설팅 업체는 전문 인력중 수의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반드시 포함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생산자단체(농축협, 한우협회, 영농조합 등), 한우브랜드 등에 최근 1년간 컨설팅(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법인 설립전 컨설팅 실적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축산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참고사항]

- 컨설팅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컨설팅 표준화를 위한 교육 계획('10.2~3월중)(개량컨설팅기관은 희망하는 경우 참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허태웅 사무관 안규정	02-500-2058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장 송택호 팀장 김진원	02-2127-7400 02-2127-165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장 홍순찬 과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국장 정진국 과장 권현무	02-585-2223 02-585-2223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91개의 사료공장이 HACCP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사료검사결과 위반율을 2.0%이하로 유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7	'08	'09		
▪ HACCP인증 사료공장수 (대상: 96개 배합사료공장)	85	68	76	80	'11.1	HACCP지정 담당기관 의 인증실적 보고
▪ 국산 배합사료 검사결과 위반율(%)	2.0	2.4	1.4	1.4	'11.2	사료검사기관(각 시·도)의 사 료검사 및 처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52,956	84,300	50,400	60,400	60,400
보 조	-	-	-	-	-
용 자	52,571	83,900	50,000	60,000	6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385	400	400	400	400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용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용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초)
 - 주관기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 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 중 선택 가능함
 -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건설팀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조치(전년도 12.5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전년도 12.10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사료공장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업체에 한함),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현황(해당 업체에 한함), 공동구매 계약 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내용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전년도 12.15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전년도 12월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함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P인증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또는 계획한 자, 국내산 조사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업체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및 분기별 사업계획 이행 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제조시설자금은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가능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 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0.2월말)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0.3.15일 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10.3월말)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사료제조시설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생년월일)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계	용자 (축발기금)	자부담	계	용자 (축발기금)	자부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 시설명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계									

【 붙임 2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생년월일)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0/0 분기)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김정욱	02-500-2041
		사무관 하옥원	02-500-2055
		주무관 진필식	02-500-2056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 환경 보전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가축분뇨자원화율 (% , 주지표)	86	83	84	85	2011.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 가축분뇨해양배출량 (천톤, 부지표)	700	2,019	1,459	1,200	2011.1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 관리시스템(해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62,304	96,010	118,256	130,410	123,196
보 조	22,510	31,289	50,807	53,142	50,258
용 자	19,884	35,097	24,602	25,950	24,750
지방비	17,300	26,184	38,645	42,812	40,465
자부담	2,610	3,340	4,202	8,505	8,12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 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 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병 정착촌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경종농가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액비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공통 적용사항
 - ‘10년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중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 ’11년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실적 6개월 이상 적용)은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 다음 시설·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단, 사업비 중 5%는 상용화기술 연구개발비로 사용)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 보조	지방비	국비 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50	30	20		
- 에너지화	30	30	20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액비저장조시설	30	50		20	
액비유통센터	40	40		20	
액비살포비	50	50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
-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용자금은 조속히 반납(다만, 공동자원화시설 용자금은 대체 불가)
- ※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은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젓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 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 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4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00 (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 100톤 초과는 2천만원 이내 적용)				
- 에너지화		7,000 (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톤당 7천만원 이내 적용)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공동자원화사업(에너지화)의 사업추진 절차 등 별도 통보 계획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군·구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
- * 다만,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단, 공동자원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시·도별 자체 평가팀을 구성하여 우선순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농식품부에서 선정계획 별도 시달)

보조사업자(축산농가 등)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세부계획,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10.12.중순까지 우선순위 결정
- 대상지역 우선순위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1만톤 이상)
 - 도시화 등으로 개별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역
- 사업자 통보 :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확정 통보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까지 확정·통보
- * 사업 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로 실시, 대출능력 등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10.1.31.한 선정 통보)

○ 우선순위

- '개' 사육 농가의 경우 '09년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농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치의 시급성 등을 감안, '10년 사업 신청 시 당해연도 우선지원('10년도에 한함)
- 시·도(시·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중도장 종합점검 결과 우수 중도장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액비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공동자원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정심의회(가축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을 것
 - * 사업타당성 검토단계 : 세부사업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준공전
- 시·도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 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내용을 직 상위 기관에 보고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로 계획수립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허가청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 특성 및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 완료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상 유의 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스키드로더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곳에 지원하고 구입 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2)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08.10)
 - 종류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퇴비단여과시설, 호기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3)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자원화 시스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한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를 받은 퇴·액비화 시스템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 인증’을 받은 퇴·액비화 시스템의 경우 우선 선정 할 수 있음
 - 사업 주관기관은 시스템 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주체, 도(시·군),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법인 내부 전문가 1/3 이내)
 - ※ 평가항목 : 자산 건전성, 설계도면의 적정성, 물질수지 타당성, 설치 비용의 적정성, 기술력, 시설운영 경제성·편리성 등을 평가하여 적정공법 선정
-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자원화 시설 반입 원료 :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퇴비화의 경우 양돈분뇨를 50% 이상 이용,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 대상농가 : 기존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선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해양배출량이 많은 농가 위주로 참여케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퇴·액비 저장시설 확보 : 퇴·액비 제조 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보조사업자(시공업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1>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집행)과 정산

가. 적용 원칙

- 사업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용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및 정산

나.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용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지자체),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보조사업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 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 요구 가능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2·3 참조>
-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에

반납 조치

- 공동자원화시설은 2~6개월 수준(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생산된 퇴·액비 및 방류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퇴·액비 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 2·3>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 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용자금대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해당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분기(2·5·8·11)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0년 6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인·허가 및 착공한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페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 의뢰하고, 결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블록조,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등)	10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0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0.3.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서식 4>
○ 2010 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	2010.12.31한	”	
○ 2009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1. 3.15한	”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0.12.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별지<서식 5>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는 3년간 사업참여 제한

6. 성과(지표)측정단계

- 가축분뇨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 측정시기 :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농림수산식품부)
 - 《 우수 지자체 》
 - 평가대상 : 전국 시·군
 - 평가대상 기간 : '10년 1월 ~ 12월(증감율 및 전년대비 실적은 2010.12월말 기준 적용)
 - 평가항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과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실적, 교육·홍보 등을 대상으로 평가
 -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기간 : '10년 1월 ~ 12월
 - 평가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 기준에 따른 액비 살포실적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추가지원

- 우수 지자체(시·군) 5개소를 평가·선정하여 개소당 500백만원 지원
-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80백만원을 지원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유통센터는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1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0.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0.4월)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는 가동률 등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차등 지원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서식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입회관계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불임서류 : 1.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p> <p style="text-align: right;">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입회관계자 인</p>			

<서식2>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보조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3>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용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합 계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용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용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4 : 엑셀>

()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단위	사업량	계 획				실 적(정산)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개별시설 (농가)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 화 시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개별시설 (법인체)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 화 시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 화 (에너지) 시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정착촌구조개선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부대 기계·장비																	
	소 계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개별시설(법인체 등),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유통센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5>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김정옥 사무관 김휴현	02-500-2041 02-500-2054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증대에 기여
-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수요 증대 및 도·농 교류 촉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주마 자급율 75% 유지, 승용마 시장규모 지속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경주마 자급율(%)	75±1	72.4	72.9	72.9	매년 1월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의 백분율
▪ 경주마 주파기록	2:10.8	2:11.8	2:11.2	2:11.2	매년 1월	우승한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 승용마 등록 두수 (누적)	2,000	-	-	-	매년 1월	승용마 등록시스템 등록 두수
▪ 승마장 등록수 (누적)	190	-	-	-	매년 1월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록 승마장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81,260	19,171	24,066	15,970	
보 조	7,519	3,840	6,167	5,925	
용 자	84,727	7,636	5,866	2,060	
지방비	7,519	3,840	6,167	5,925	
자부담	81,495	3,855	5,866	2,06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및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운영(말 입식 포함)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을 1년 이상 사육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
- 마필관련 전문교육과정(전문고교, 지자체, 마사회, 민간단체 주관)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말을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및 승마장·승마체험장 설치 운영 (희망)비농업인은 지원자격 및 요건 제한 없음

3. 지원대상(내용)

- 말 생산 및 육성·조련 시설, 장비, 마필(별표 1 참조)
- 승마체험장·승마장 시설 및 마필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말 전용 경매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구입(씨암말 구입 포함)
- 마사, 관리자, 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
- 실내·외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시설보완 포함)
- 말 전용 경매장 설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 1년(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경매장은 1~2년)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구입 및 사육·조련시설 지원 : 용자 7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전용 경매장 및 제주마 혈통보존 : 보조 50%, 지방비 50%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비율에 적용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체험장 : 개소당 10억원 이내
- 승마장 : 개소당 15억원 이내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억원 이내
- 말 전용 경매장시설 : 개소당 30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시·도(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4월)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8월)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10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말 관련 단체·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①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 사업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험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농로·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거나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공동육성조련시설

- 경주마 사육두수가 많거나 인근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이 근거리에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③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한국마사회의 종부 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2,000㎡ 이상) 및 방목장을 확보한 농가
- 시·군·구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

* 조합, 법인 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매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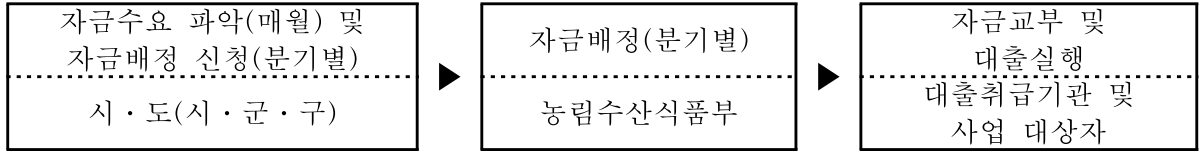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필요시 월별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10년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장비 등 기타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지원 : 시·도지사
 - 씨암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점검 일정 : 상반기 1회(6월), 하반기 1회(11월)
 - 점검반 :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용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 승마체험장·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등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담당자 등
 - 점검 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2월)
- 주요평가지표 : 경주마 자급률 및 주과기록, 승용마 및 승마장 누적 등록수 등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 경주마 자급률 : 연간 경마장에 입사되는 신마 중 국산마 두수 백분율
 - 경주마 주과기록 : 우승 국내산 경주마 기록의 평균
 - 승용마 등록두수 : 승용마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누적두수
 - 승마장 등록수 : 말산업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누적 승마장 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씨암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씨암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IV.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인 경우 시·도지사 경유)은 2011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11. 4월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1년부터는 정부의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개인 등에게 지원되는 **승마장 (승마체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보조지원에서 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별표 1]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말구입	○ 씨암말	-	-	70	30	3두/호이내	50백만원/두	○구입단가가 지원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단가를 적용
	○ 일반말	-	-	70	30	5두/호이내	10백만원/두	
사육 시설	○ 마 사	-	-	70	30			○ 부속시설 포함
	○ 관리사	-	-	70	30			
	○ 창 고	-	-	70	30			
조련 시설	○ 실내마장	-	-	70	30			○ 중련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 실외마장	-	-	70	30			
	○ 자동보행기	-	-	70	30			
	○ 원형마장	-	-	70	30			
	○ 약·목욕장	-	-	70	30			
	○ 주 로	-	-	70	30			
공동 육성 조련 시설	○ 개인	20	20	30	30			○ 개소당 30억원이내 ○ 마장(실내·실외·원형), 마사(10칸이상), 관리사, 주로, 약·목욕장, 창고, 퇴비사에 지원
	○ 지자체	50	50	-	-			
장비	○ 수송차량	-	-	70	30	1대/호		○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 주로 보유시만 지원
	○ 그레이더 (주로정지)	-	-	70	30	1대/호		
	○ 트랙터 등	-	-	70	30			
승마 체험장 및 승마장 설치	○ 개인	20	20	30	30			○ 개소당 10억원이내(체육 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승마장은 15억원) ○ 마장(실내·실외), 마사(10칸 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 말구입에 지원
	○ 지자체	50	50	-	-			
경매장	○ 지자체, 생산자단체	50	50	-	-			

- ※ 기준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5억원 초과 지원 불가(승마체험장·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 경매장은 제외)
-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77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02-500-2058
		사무관 박홍식	02-500-2059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배효문	02-2080-6550
		팀 장 신용식	02-2080-6553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가임율(%) (주지표)	90%	104.5	105.4	104.6	'10.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통계청의 가축통계 자료 이용
▪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974	894	1,016	1,059	'10.12.	'10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 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주) 지자체의 인공수정료 지원 등 외부요인과 사육두수 증가세로 연초 가임암소 두수 보다 초과가입으로 가입실적이 높게 형성되었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78,093	41,724	45,281	18,469	18,469
보 조	38,211	34,607	30,514	11,771	11,771
지방비	19,882	3,553	7,275	3,319	3,319
자부담	20,000	3,564	7,492	3,379	3,379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을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30만원/두)에서 지원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0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09.12.1~2010.5.3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0.1.1(계약일)~2010.12.31(1년간)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

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수산물부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 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0.5.31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2010.8.31일 이후)
 - 계약신청기간(2010.5.31)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제 재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압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관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2009.12.1~2010.5.31)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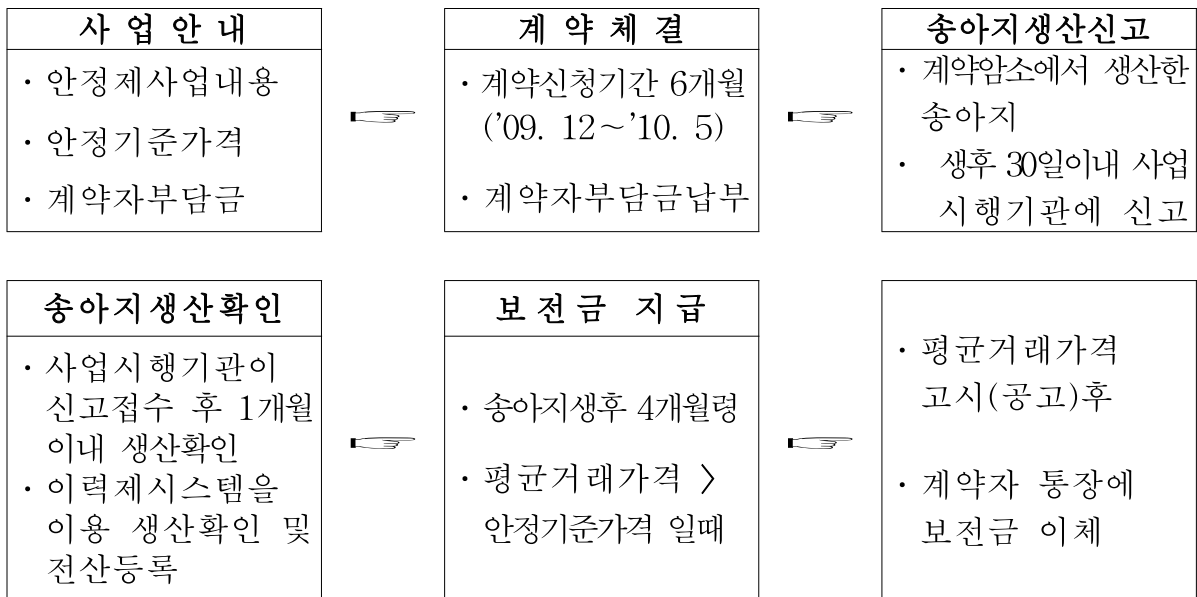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02-500-2058
		사무관 이연섭	02-500-2062
한국양봉협회		회 장 배경수	02-3486-0883
		사무총장 최규철	02-3486-0884

I. 사업개요

1. 목 적

- (밀원수묘목보급) 밀원수 묘목을 보급하여 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으로 육성
- (우수품종꿀벌보급)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군당 생산량(kg)	15	13	14	14.5	약년1/4분기	양봉협회 벌꿀 생산량 추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00	100	288	288	2,100
보 조	100	100	250	250	1,740
지방비	-	-	38	38	360
○ 밀원수 묘목보급	648	-	188	188	1,800
- 보 조	518	-	150	150	1,440
- 지방비	130	-	38	38	360
○ 우수품종꿀벌보급	198	100	100	100	300
- 보 조	198	100	100	100	300
- 자부담	-	-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밀원수 묘목보급) (사)한국양봉협회 시·군·구 지부 소속 양봉농가 및 관할지역 희망 농가
- (우수품종꿀벌보급) 국내 우수품종 선발·보급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양봉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밀원수 묘목보급) 시·군·구별 한국양봉협회에 소속된 양봉농가 또는 일정 규모(50군 이상 사육농가)이상의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 (우수품종꿀벌보급) 경력 10년 이상, 전업규모(100군 이상) 이상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중 육종장 가능한 농가

2. 지원대상

- (밀원수 묘목보급) 밀원을 위한 묘목대비 지원
- (우수품종꿀벌보급) 우수꿀벌 품종 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밀원수 묘목보급) 밀원에 소요되는 묘목대비 지원
- (우수품종꿀벌보급) 우수꿀벌 품종 선발·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
- 인건비, 조사연구비, 농가실험용(입식비, 교미상, 사료비, 방역비, 기자재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축산발전기금
- (밀원수 묘목보급) 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량 : 350ha 식재(350천본)
- (우수품종꿀벌보급) 보조 100%
 - 사업량 : 육종장 지원을 통해 여왕벌 보급 1,500마리 보급
 - * 지자체가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이 필요한 경우, 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사업에 초과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밀원수 묘목보급 및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조건대로 지원하되
 - 밀원수 묘목보급사업인 경우 개인당 지원한도액이 2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인 경우에는 육종장 1개소당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 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한국양봉협회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사무국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희망자

- (밀원수 묘목보급) 사업희망자는 한국양봉협회 시·군·구 지부 또는 지자체(시·군·구) 축산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0.1.5일까지), (양식 : 별지1-1호)
- (우수품종꿀벌 보급) 사업희망자는 한국양봉협회에 사업신청('10.1.5일까지) (양식 : 별지2호)

양봉협회 지부, 지자체

- (밀원수 묘목보급) 양봉협회 지부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내용을 취합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 축산담당부서에 사업신청('10.1.10)
 - 지자체(시·군·구) 축산담당부서는 양봉협회 지부 및 개별 신청한 양봉농가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 신청('10.1.15), (양식 : 별지1-2호)

시·도, 한국양봉협회

- (밀원수 묘목보급)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10.1.20), (양식 : 별지3호)
- (우수품종별꿀보급)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10.1.20), (양식 : 별지 4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밀원수 묘목보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양봉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원 예산 확정('10.1.30)
- (우수품종별꿀보급) 한국양봉협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대상자별 지원 예산 확정('10.1.30)

시·도지사, 양봉협회

- (밀원수 묘목보급)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여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선정·통보('10.2.5)
- (우수품종별꿀보급) 양봉협회에서는 지원예산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0.2.5)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기관

(양식 : 별지3호, 별지 4호)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0.1.20까지)하고,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사업추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10.1.30)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계약서,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사업시행기관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별지 5호)
 - 매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재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검토 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밀원수묘목보급사업인 경우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 요구

사업시행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자금배정》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축발기금사무국

- 축발기금사무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시행기관에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 반기 익월 15일까지)(별지 5호), 최종결과보고서는 사업주관기관 자율양식에 따라 사업보고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는 기관별 평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고, 특히 제도 개선사항은 자세히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

《제재》

사업시행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지침에 따름

6. 성과측정 단계

- 사업종료 후 벌꿀 생산량 추정(기타가축통계 등 활용)을 통하여 군당 생산량 측정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한국양봉협회)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 한국양봉협회)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1. 2월말
- 평가내용 : 평가목표 달성여부(지자체별 봉군당 벌꿀 생산량 반영), 사업 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11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 20%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시 사업지침에 반영
 -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선사항 1건에 대해 예산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 강구
 -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가점을 주는 방안을 평가 전담부서와 협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밀원수묘목보급사업은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10.10~12월)
 - '10년도는 '09.1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
- 우수품종벌꿀보급사업은 한국양봉협회가 주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차년도 사업대상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10.8~12월)

(별지 1-1호)

밀원수묘목보급사업 신청서
(개 인 용)

1. 신청자 현황

- 농가명(업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FAX)

2. 경영현황

구분	봉군수	군당 생산량	생산실적	연간생산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3. 밀원수 묘목 신청현황

성명	식재지주소	묘목명	식재량	단가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합계
000							

(별지 1-2호)

밀원수묘목보급사업 신청서
(양봉협회 지부, 시·군·구 용)

1. 신청자 현황

- 시·군·구(양봉협회 지부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FAX)

2. 경영현황(시·군·구 통계, 또는 지부 통계치)

구분	봉군수	군당 생산량	생산실적	연간생산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3. 밀원수 묘목 신청현황

성명	식재지주소	묘목명	식재량	단가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합계

(별지 2호)

우수품종벌꿀보급사업 신청서
(개 인 용)

1. 신청자 현황

- 농가명(업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FAX)

2. 경영현황

구분	봉군수	군당 생산량	생산실적	연간생산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3. 우수품종벌꿀보급 신청현황

성명	품종명	생산계획	보급계획	사업비		
				국고보조	자부담	합계
000						

(별지 3호)

밀원수묘목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시·도 작성용)

1. 사업목적

2. 현황(도내 양봉산업 규모)

양봉 농가수	봉군당 생산량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액	관내 밀원 현황		비고
				묘목명	식재면적	

3. 사업내용

4. 사업의 필요성

5. 밀원수묘목보급 신청현황

시·군·구	식재지주소	묘목명	식재량	단가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합계

6. 사업의 기대효과

(별지 4호)

우수품종벌꿀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양봉협회 작성용)

1. 사업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추진방향(기본방향)

4. 세부사업추진계획

- 우수품종벌꿀 생산 및 보급계획을 자세히 기재

5. 우수품종벌꿀보급 신청현황

농장명	봉군당 생산량	연간 생산량	생산 계획	보급 계획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합계

6. 사업의 기대효과

7. 소요예산 세부산출근거

(별지 5호)

농림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1. 사업명 :

2. 사업개요

3. 추진현황

○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량, 예산 집행실적 등)

4. 사업점검 결과

○ 문제점

○ 개선방향(제도 개선사항 포함)

5.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79	낙농체험관광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사무관 이성주	02-500-2058 02-500-2066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팀 장 조재준	02-6007-5541

I. 사업개요

1. 목 적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촉진
-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낙농체험목장 20개소로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7	'08	'09		
▪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4	-	4	4	'10.12월	'10년도 낙농체험관광목장 개소수 사업완료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400	400	600	2,400
용 자	-	400	400	600	2,400
○ 낙농체험관광		400	400	600	2,400
- 용 자	-	400	400	600	2,400

* 예산액은 당초계획임, 2011년이후는 중기수치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장을 경영하며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로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후계자로서 목장환경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목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낙농가
 -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

3. 지원대상

- 체험시설설치 : 관람용 트레일러, 치즈체험장 및 제조설비 등
- 환경개선 : 사용자 편의시설, 진입로 및 주차시설 포장공사 등
- 프로그램 개발 : 체험목장 연수교육, 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융자 지원

※ 자금지원 용도

- 목장 관람용 트랙터 트레일러 제작
- 치즈 체험장 건립 또는 치즈 제조설비 구입
- 체험객 편의 시설(휴게공간, 옥외 화장실 등) 공사
- 진입로 확장(포장) 또는 주차장 공사
- 국내·외 낙농체험목장 연수교육
- 소비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기타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융자 100%(무이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10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 4개소 6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기준 지원금액 : 150백만원

*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기준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개소수, 지원금액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시·도 및 낙농진흥회)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낙농 조합, 낙농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농가 홍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을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 대상자 중 선정 요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낙농진흥회장에게 송부('10. 1. 16일까지)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견적서 등)
- 목장부지 배치도(향후 변경사항 포함, 별표 2 목장부지 작성예시도 참고)
-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축산업등록증(시·군 발행)
- 목장 경영경력 확인서(납유업체 발행)
- 젓소 검정사업 참여 확인서(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 발행)
 - 젓소 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에 제출

※ 시·도지사 의견서

- 낙농체험 관광사업 신청 대상자의 목장여건, 사육환경 등 향후 발전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신청대상자를 「별표 1. 낙농체험관광사업 신청자 평가표(안)」에 의하여 심사·실사하되,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사 실시
- 낙농관련기관(단체)으로 구성된 「낙농체험관광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신청자 평가실시
- 낙농진흥회는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 평가결과와 신청자의 심사항목 내용을 종합한 현황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0. 2. 6일까지)

※ 사업자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건

- 시·도(지자체), 낙농관련 기관(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사료포 또는 방목용 초지가 확보된 농가
- 시설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확보된 농가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운영 농가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 HACCP 인증목장

※ 사업자 평가시 감점 부여 조건

- 낙농자조금 미납부 농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낙농진흥회에 통보('10. 2.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낙농체험관광사업 시행지침 작성·시달(12월 경)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장은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해당 농가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낙농진흥회(사업주관기관)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
-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후 사업 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사업 대상자는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자금 수령하고, 대출 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즉시 낙농진흥회장에게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 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후 대출 실시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대출 실행내역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추진기간 중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운영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보고(별지 제3호 서식, 정산결과서 및 사진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낙농진흥회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실적 및 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낙농진흥회)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제재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자금집행 세부요령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서(1천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비치 (원본은 사업대상자 비치, 사본은 사업주관기관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취득한 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회수시까지 사후관리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낙농체험관광목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성으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낙농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중
 - 조사대상 : 낙농체험관광사업 대상자
 - 조사내용 :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과정 시 애로사항, 자금지원 규모 적정성 등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우편)
 - 조사주체 : 낙농진흥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낙농진흥회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매년 12월말까지
 - 성과측정 자료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평가기준 : 낙농진흥회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실시
 - 체험목장 방문인원수 및 방문자 유형 등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낙농체험관광사업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사업대상자		낙농진흥회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 · 사업대상자 심의 ·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추천 → ←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출 →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점검.운영지도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보고 	보고 →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낙농진흥회 합동조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10년 4/4분기 중에 시·도(시·군) 및 낙농관련기관(단체)를 통해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 낙농가 수요조사 실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

낙농체험관광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목장명 :)
- 사업자 주소 :
- 연락처 : ○ 목장설립년도 : 년 (종사자수 : 명)

2. 목장현황

사육두수	젖 소 : 착유우- 두, 건유우- 두, 육성우- 두, 송아지- 두 기타가축 : 육우- 두, 한우- 두, 말- 두, 기타()- 두
생산현황	일생산량- l/일 (납유업체-), 분뇨처리방법-
시설현황	목장부지- m ² , 축사면적- m ² (축사동수 : 동) 사 료 포- m ² , 방 목 포- m ² , 기타시설- m ² (용도-)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계					

-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예상효과(낙농체험목장 운영계획 포함)
- 연차별 상환계획

4.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목장소개서(목장현황 및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동기 등, 목장 전경·시설 사진)
- 목장부지 배치도(별표 2 참조), 시설설치 등 견적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축산업등록증, 각종 증명서(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목장 지정증명서, 젖소 검정사업 참여 확인서, 목장유가공시설 운영농가 확인서, 낙농후계자 명단, HACCP 인증서, 목장경영경력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별지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호(생년월일)		대 표 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 3>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농장명(사업자 성명) :
- 주 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구 분	농 장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 획	실적	%	계	용자 (A)	자담	계	용자 (B)	자담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기타

- 사업 완료시 시설 설치 사진 등을 첨부

<별표 1>

낙농체험관광사업 신청자 평가표(안)

□ 사업 신청자 : (목장명 :)

□ 평가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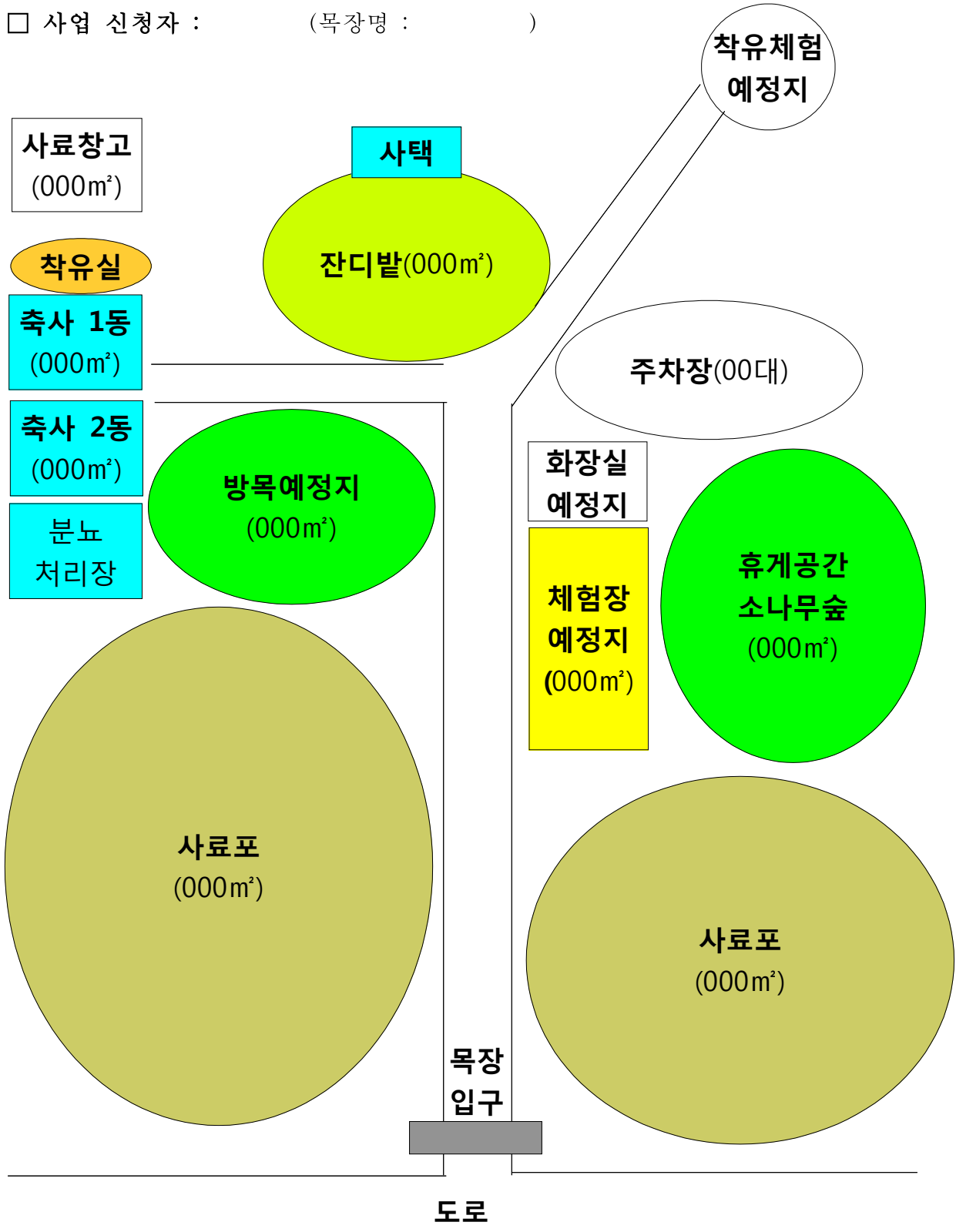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경력 및 자질 (33점)	사업신청자 의식 및 자질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낙농체험 관광사업 참여 동기	18
	낙농후계자 확보 여부	5
	낙농분야 표창 수상여부 (깨끗한 목장 등)	5
	낙농체험 운영 경험 보유	5
	사육환경 (30점)	사육두수 대비 축사규모 적정성 축사, 착유실 등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분뇨처리장 확보 및 운영 적정성
	HACCP 인증 목장	5
	젖소 능력검정사업 참여	2
	목장부지 내 방목 가능한 초지 또는 사료포 보유	8
목장환경 체험여건 (22점)	체험객 편의시설(화장실, 휴게공간) 목장내 체험객을 위한 체험공간 및 편의공간 활용도	10
	주변 도시에서의 접근성	3
	목장입구 방역시설 설치	3
	주차장 확보 또는 조성가능 여부	3
	악천후 대피시설 확보 여부 (60명 기준)	3
체험프로그램 (15점)	목장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계획	8
	치즈공방, 체험장 설치 및 운영 계획	4
	치즈 등 유가공품 생산기술 보유	3
계(A)		100
감점기준 (△25점)	목장내 대형버스 진입 불가	△5
	목장 진입로 주변 혐오시설 여부	△5
	체험객 안전 위협요소 및 시설물 여부	△5
	목장내 체험관련 시설물 추가설치 불가	△5
	낙농자조금 미납부 농가	△5
소계(B)		△25
합 계 (A-B)		

<별표 2>

목장부지 배치도 작성 예시

(수기작성 가능)

□ 사업 신청자 : (목장명 :)



축산분야

II.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허태웅 사무관 송광현	02-500-2058 02-500-2068

I. 사업개요

1. 목적

-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축산물 브랜드 홍보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43.5	32.6	39.3	41.4	2011.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63.7	51.7	59.5	61.6	2011.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합계	-	-	20,000	24,000	56,000
보조	-	-	8,000	9,600	22,400
자부담 (또는 지방비)	-	-	12,000	14,400	33,6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도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5개 이상의 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 입점하는 브랜드는 과거 3년 동안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에 한함
 - 다만, 사업주체가 시·군인 경우 40% 범위 내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브랜드경영체도 입점 가능
- ※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는 입지를 확정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 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 주변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
 -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 판매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
-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사업량 : 4개소(2년차 계속사업)
-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사업비 : 100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에 알림

신청조직(시·도, 시·군 또는 농협)

- 사업주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는 브랜드육 타운 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을 브랜드 경영체에 통보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접수하여 입점 브랜드를 결정(1개소당 5개 이상 브랜드 입점)
 - 시·도(시·군) 주관의 경우 타 시·도(시·군)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타 시·도(시·군)의 브랜드도 입점이 가능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 이외의 브랜드에도 사업계획을 알려 회원 조합 이외의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체는 입점 브랜드 경영체와 함께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시·군은 시·도 경유)
 - 사업계획서는 자율양식이며, 브랜드육 타운 입지 결정, 브랜드 입점계획, 타운 조성 및 운영계획, 판매장 및 음식점 운영계획,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군 주관의 경우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에 관할 시·도가 참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계, 유통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
- 농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성공 가능성, 입지 적절성, 운영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브랜드육 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주체는 추진일정이 포함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함께 제출)
- 사업주체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확보(매입 또는 장기임대), 타운 설계, 입점이 결정된 브랜드 경영체와 세부계약 등을 추진하고, 브랜드육 타운 시설 건축 - 사업주체와 입점 경영체는 가칭 “브랜드육 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운 관리주체, 임대료, 관리비, 홍보방안 등 협의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의 명소화를 위해 놀이시설·공원·화장실 등 공동 시설 설치
- 입점한 브랜드 경영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주체는 사업지원항목, 운영방법, 입점브랜드 등 중요 사업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

4. 자금배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조치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 진행에 따른 자금배정 요청서를 받아 사업비 배정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사업주체는 농식품부에 세부추진계획 보고서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에 맞게 소요 사업비 배정요청

기금관리주체(농협 촉발기금사무국)

-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은 사업주체의 자금 지급요청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신청조직(시·도, 시·군, 농협)

- 사업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2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2년차에는 2년간의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시·군은 시·도 경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의 브랜드육 타운 추진상황에 대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완공)된 이후에도 10년간 브랜드육 타운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행주체가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준공)된 이후에도 브랜드육 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기간 : 사업완료보고 후 10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 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시·도(또는 시·군,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시·도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시·도(또는 시·군, 농협), 입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주체는 브랜드육 타운이 완공된 후 농식품부 및 입점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평가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보

- 연말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시·도, 농협중앙회 및 브랜드 경영체 등에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2010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2011년 사업계획 및 신청시기 안내 : 농식품부에서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별도 통보

81 |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박홍식 사무관 이연섭	02-500-2076 02-500-2082 02-500-2077 02-500-2080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도축실적
▪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수송물량/연간 계란생산실적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3,900	2,400	22,800
용 자			1,950	1,200	11,400
자부담			1,950	1,200	11,400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 가축수송특장차량			3,250	2,000	19,000
- 용 자			1,625	1,000	9,500
- 자부담			1,625	1,000	9,500
○ 계란수송특장차량			650	400	3,800
- 용 자			325	200	1,900
- 자부담			325	200	1,9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 집하업 등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계란 집하업 등록자

< 우선지원 요건 >

-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 ③ 농가 등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 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용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용자
-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농가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관련자료 등
-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의견서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되, 브랜드 경영체를 우선으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가축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촉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에는 연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장차량구입으로 사업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현장점검은 불필요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용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안전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10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10.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별첨 1>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계획(완료보고)서

1. 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 명 :

- 소재지 : (사무실 전화 :)

- 대표자 성명 : (H·P :)

2. 사업개요

○ 축종 : 소, 돼지, 닭

○ 참여농가 현황

- 농가수 :

- 사육수 : (연간 출하두수 : 두, 수)

○ 최근 2년간 가축 수송 실적 : '○○년 ○○○두,수, '○○년 ○○○두,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시설명	물량(대)	규격(톤)	사업비(백만원)			비고 (제조회사명)
			용자	자담	계	
합 계						
○ 차량						
○ 특수장비						
○ 기타						

4. 기타 관련자료 (첨부)

○ "완료보고"시에는 차량사진(내·외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 번호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호(생년월일)		대 표 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합계	백만원	보조	융자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 ○○○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첨 2>

차량 운행 일지

차량번호 :

날 짜	운전자	출발지	도착지	수송물량(두,수)					비 고
				소	돼지	닭	기타	계	
'000000	000								
합 계									

<작성시 유의사항>

- 1) 축종별 수송물량은 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를 작성(월별 소계 및 연간 합계는 폐기시 별도 작성하여 확인자 서명후 보관)
- 2) 비고란에는 수송 일자별로 확인자 서명
- 3) 사업자별 차량운행일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경우 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합 가능

①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총괄)	02-500-2058
		사무관 박홍식(한우)	02-500-2059
		사무관 이연섭(돼지)	02-500-2062
		사무관 김영만(양계·오리)	02-500-2064
		사무관 이성주(낙농)	02-500-2066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한육우	▪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0.0	43.0	46.9	49.1	매년 1월중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5.5	13.4	14	14.8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39.8	39.3	39.5	39.5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 연간회전율	5.8	5.6	5.7	5.7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 두당 산유량(l/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합 계	-	-	124,424	135,900	1,888,251
보 조	-	-	37,327	40,790	566,456
용 자	-	-	62,212	67,928	944,147
자부담	-	-	24,885	27,182	377,648
○ 한(육)우	-	-	32,829	31,115	389,226
- 보 조	-	-	9,849	9,352	116,750
- 용 자	-	-	16,414	15,540	194,631
- 자부담	-	-	6,566	6,223	77,845
○ 양돈	-	-	49,000	58,500	668,500
- 보 조	-	-	14,700	17,550	200,550
- 용 자	-	-	24,500	29,250	334,250
- 자부담	-	-	9,800	11,700	133,700
○ 모돈번식전문농장	-	-	-	9,000	358,500
- 보 조	-	-	-	2,700	108,000
- 용 자	-	-	-	4,500	180,000
- 자부담	-	-	-	1,800	72,000
○ 양계	-	-	24,192	22,609	289,007
- 보 조	-	-	7,258	6,783	86,701
- 용 자	-	-	12,096	11,304	144,504
- 자부담	-	-	4,838	4,522	57,802
○ 오리	-	-	3,528	2,561	32,383
- 보 조	-	-	1,058	768	9,716
- 용 자	-	-	1,764	1,281	16,191
- 자부담	-	-	706	512	6,476
○ 낙농	-	-	14,875	12,125	158,125
- 보 조	-	-	4,463	3,637	47,438
- 용 자	-	-	7,437	6,063	79,063
- 자부담	-	-	2,975	2,425	31,625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② 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참여농가 및 전업농
-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경영체를 말함
 -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 *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 제외
 - *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 폐사축 처리시설

- 양 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모든 번식전문농장 :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자, 창고 등
 - ※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 ※ 제주도 돼지고기 수출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 양계·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 낙 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로봇 착유시설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2010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	자부담 (20%)
			계 (100%)	보 조 (30%)	융 자 (50%)		
계	395	135,900	108,728	40,790	67,928	-	27,182
1. 한(육)우	140	31,115	24,892	9,352	15,540	-	6,223
2. 양 돈	150	58,500	46,800	17,550	29,250	-	11,700
-모돈번식전문	3	9,000	7,200	2,700	4,500	-	1,800
3. 양 계	51	22,609	18,087	6,783	11,304	-	4,522
4. 오 리	5	2,561	2,049	768	1,281	-	512
5. 낙 농	46	12,125	9,700	3,637	6,063	-	2,425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m ²)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 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돈	500천 원/m ²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모돈번식전문농장	500천 원/m ²	20백만원	2,400백만원	3,000백만원
양 계	산란계	476천 원/m ²	20백만원	1,400백만원
	육 계	304천 원/m ²	20백만원	700백만원
오 리	304천 원/m ²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 농	185천 원/m ²	-	200백만원	250백만원

- 주1) 지원한도액은 보조+용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 주2)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물부(축산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한우 사업단에 사업신청('10.1.10까지) - <붙임 서식 1>
- 모돈전문번식농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및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시·군·구, 브랜드경영체, 농가조직체

- 시·군·구 :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0.1.20까지)
- 브랜드경영체·한우사업단 : 사업신청 농가를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에 각각 사업신청(10.1.2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규모, 브랜드경영체 규모, 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원예산 확정·통보(10.1.25일까지)
 - 모돈전문번식농장은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 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
 - 한(육)우, 양돈, 낙농에 대해서는 시·도별 자조금 납입율에 따라 시·도별 지원예산을 차등하여 지원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한우사업단 및 시·군·구 신청 농가를 별도 구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통보(10.1.30일까지)
 - 양돈은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하지않는 농가 우선선정(분뇨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농가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우선 선정)
 - ※ 가축분뇨 해양투기 농가의 경우 '11년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0"화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 농가(당해년도 분뇨처리시설 지원대상 농가 등)
 - 축종별 평가기준 <붙임 1-1 ~ 1-6>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자조금 납입률이 80% 미만인 축종의 경우 자조금 납입농가에 대해서는 가점(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선정 가능
 - ※ 한우사육농가는 한우사업단 참여시 신청 가능하고, 돼지의 경우 수출 인증농가, 브랜드경영체 및 계열사업 참여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젓소의 경우 육종농가 및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농가에 우선 지원하되, 최소한 전체 지원액의 50%이상 지원(신청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전업농가에 50%이상 지원 가능)

3.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사업대상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호)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재선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에는 검토 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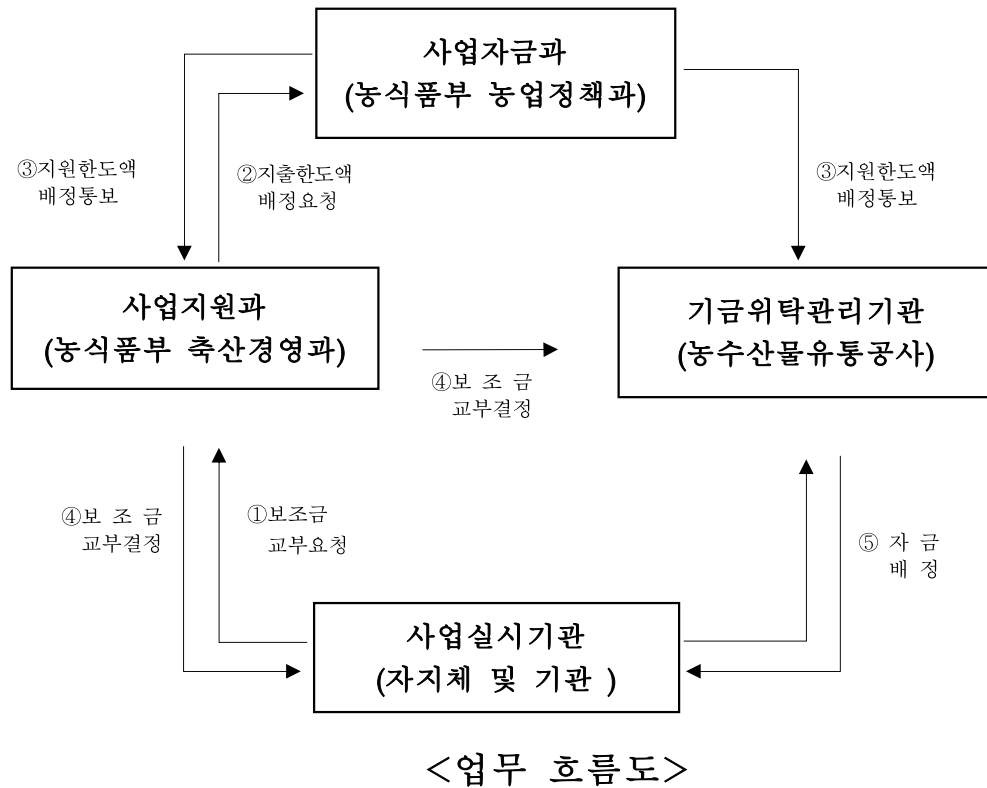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용자 및 보조비율을 지켜 배정하고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0. 6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6평시 사육두수 (40)	○100두 이상 ○80두이상~100두 미만 ○60두이상~80두미만 ○30두이상~60두미만 ○30두미만	40 30 20 10 5		*'09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② 추진 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3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 정책추진 (40)	○조사료생산(자가, 경영체 참여포함) - 50ha 이상 - 30ha~50ha 미만 - 10ha~30ha 미만 - 1ha~10ha 미만 *'09년 재배면적 적용	40 30 20 10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④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4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최근3년간실적적용	30 20 18 16 14 12 10 5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⑤ HACCP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또는 소모성질환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기준원의 자청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⑥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10 시 도 10 시군구 5 0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 육우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 높은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평시 사육두수 (40)	○5,000두이상 사육 ○4,000두이상~5,000두미만 ○3,000두이상~4,000두미만 ○2,000두이상~3,000두미만 ○1,000두이상~2,000두미만		40 35 30 20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주체 직영 신청인 경우 직영농장 사육두수 만 해당
⑥ 추진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3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⑤ 생산성향상 (40)	○A등급출현률 (40)	○'09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40 30 20 10		*'09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② 교육실적 (30)	사양관련 교육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 50일이상 ○ 40일이상~50일미만 ○ 30일이상~40일미만 ○ 20일이상~30일미만 ○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2일~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30 35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단체교육은 1인만 해당
⑤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 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⑦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중양부서 10 시도 5 시군구 3 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등은 제외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40)	○70,000수이상 사육 ○60,000수이상~70,000수미만 ○50,000수이상~60,000수미만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40 30 20 15 1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추진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3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생산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대형닭 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40 20		*계열주체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④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30일이상~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 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⑤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70)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09.10월 도계분에 한함	70 60 50 40 30 20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1-3-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 총 득점 : _____ 점

〈별표 1-3-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재래닭	계	육계 (A×5)	삼계 (A×2.5)	재래닭 (A×7.5)	계	육계	삼계	재래닭	계
'09.6													
'09.7													
'09.8													
'09.9													
'09.10													
계													

주1) 납입(거출)금 : 육계 5원/수, 삼계 2.5원/수, 재래닭 7.5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_____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09.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09.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업신청자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40)	○70,000수이상 사육	4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60,000수이상~70,000수미만	30		
	○50,000수이상~60,000수미만	20		
	○40,000수이상~50,000수미만	15		
	○30,000수이상~40,000수미만	10		
② 추진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4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20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0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5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 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 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30일이상~	45		
	○20일이상~30일미만	40		
	○10일이상~20일미만	35		
	○5일이상~10일미만	30		
○1일이상~5일미만	20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2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HACCP 지정 신청	10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5		
⑤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시도 25 시군구 20 협회·농협 18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70)	○납입율 100%	7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4-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 기간중 총 납부할 금 액)×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60		
	○납입율 60%이상 80%미만	50		
	○납입율 40%이상 60%미만	40		
	○납입율 20%이상 40%미만	30		
	○납입율 10%이상 20%미만	20		
	○납입율 10%미만	0		
	※ 납입기준은 '09.6~'09.10월 도계분에 한함			

□ 총 득점 : _____ 점

〈별표 1-4-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09.6				
	소 계			
'09.7				
	소 계			
'09.8				
	소 계			
'09.9				
	소 계			
'09.10				
	소 계			
계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_____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09.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09.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을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 점	점 수	비 고
1. 평시 사육두수 (40)	○200두 이상 ○150두 이상 ~ 200두 미만 ○100두 이상 ~ 150두 미만 ○ 50두 이상 ~ 100두 미만	10 20 30 4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전업농 중 규모가 작은 농가를 우선 순위 부여
2. 추진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3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3. 계약생산량 준수 (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09년 12월 기준
4.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 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 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 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5.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위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6.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7.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① 평시 사육수수 (50)	○30,000수이상 ○20,000수이상~30,000수미만 ○10,000수이상~20,000수미만 ○5,000수이상~10,000수미만	50 40 30 20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
② 추진가능성 (4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40 3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1일이상~5일미만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도 15 시군구 10 협회·농협 8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20)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09.1~'09.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 총 득점 : _____ 점

〈별표 2〉

낙농 시설별 지원 기준액

(단위: 백만원)

지원 대상 시설	지원액 한 도	비 고
축사시설	144	축사시설은 m ² 당 185천원
착유시설(헤링본 또는 오토텐덤) 및 전자 유량계	48	착유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시설을 신축하 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경우 축사시설 비 지원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전체 지원기준액은 192백만원을 초 과할 수 없음)
냉각기	8	원유 저장량 3톤 수준
소 계	200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종 : 한(육)우, 양돈, 양계(중계, 산란, 육계), (종)오리, 낙농(젖소)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6	'07	'08	'09.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m ²)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신청인 : (인) </div> <p style="margin-top: 20px;">○ ○ ○ 광역시장(지사) 귀하</p>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09				'10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내부시 설 및 기자재													
		소계											
합 계													

주)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m ²	_____ m ²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m²)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A)	보 조	융 자	지 방	자 담	계 (B)	보 조	융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자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서식 3>

모든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서(실적보고 겸용)

(조합, 법인 작성용)

1. 현 황

- 조합(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법인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수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7년		2008년		2009년

- 3개년 사업운영실적('07~'09년) :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포함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계획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0년 계획			'10년 실적			진척도 (%)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축사												
내부시설 및 기자재												
창고												
관리사												

3. 모돈번식전문농장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0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참여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생 산	연간 자돈 생산·보급두수						
	연간 출하두수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허태웅	02-500-2058
		사무관 박홍식	02-500-2059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단, 육우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포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P)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0.0	43.0	46.9	49.1 ('09.10월 누계)	'11년 1월 중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5,000	10,000	65,000
보 조	-	-	1,000	2,000	13,000
용 자	-	-	2,000	4,000	26,000
지방비 ^{주)}	-	-	1,000	2,000	13,000
자부담	-	-	1,000	2,000	13,000

주)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 한우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 퇴비시설 및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0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0.1.10일까지 시·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0.1.2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군·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0.1.3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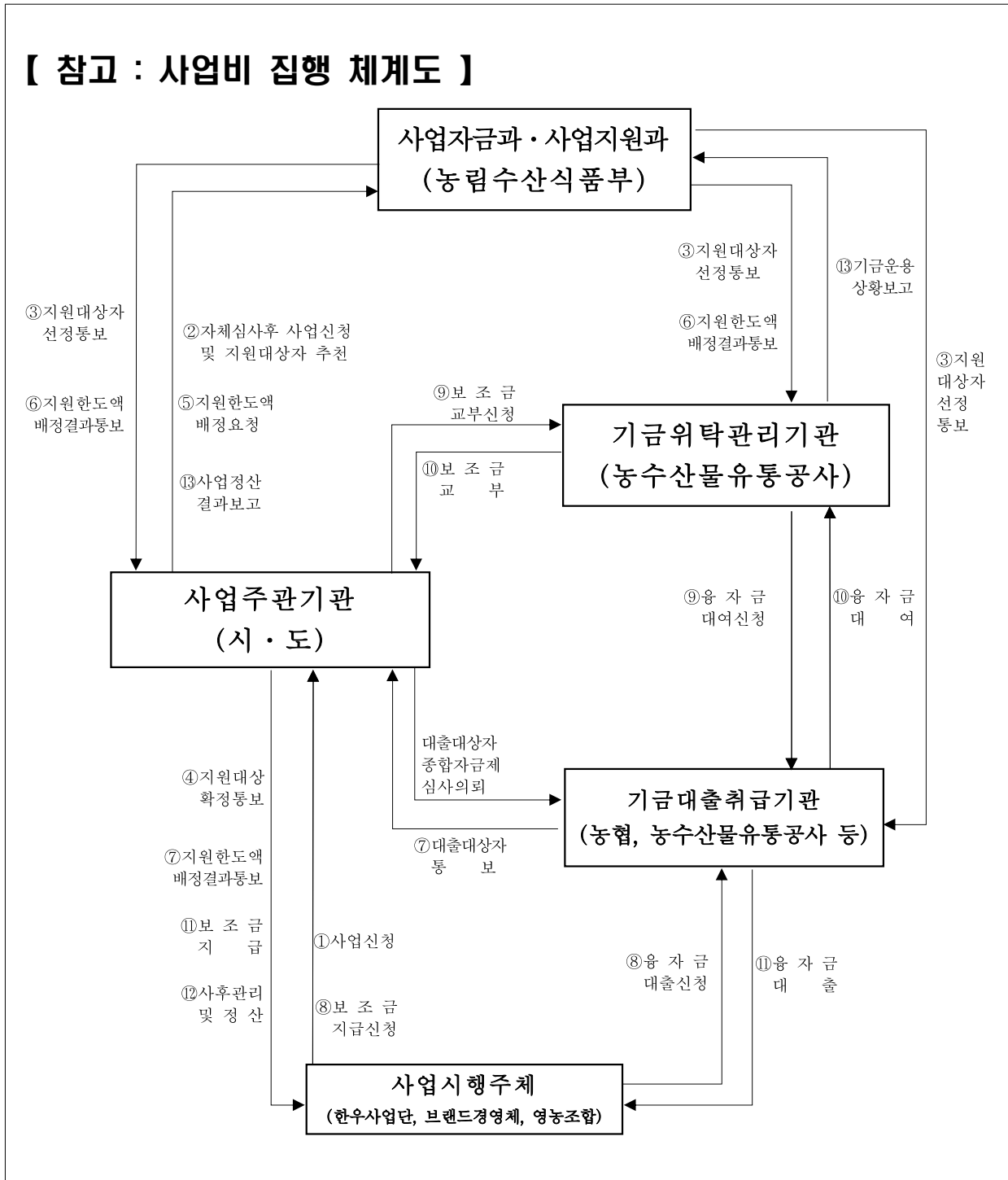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사업비 집행체계도 참고)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용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10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등급판정소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1.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0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0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1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1.1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10.1.20)	추천 → ← 지도/ 조정	· 현지실사(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0.1.30)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06	'07	'08	'09.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0					'11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내용	'10년도(1년차)												'11(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신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참여 경영체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60		*‘09.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1,500두이상~2,000두미만	50		
	○1000두이상~1,500두미만	40		
	○500두이상~1,000두미만	30		
	○500두미만	20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50		*‘09.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40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30		
	○5,000두이상~10,000두미만	20		
	○5,000두미만	10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u>사육두수</u> ×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u>사육두수</u>			*‘09.9.30일 이전 기준 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p>○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p> <p>○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p> <p>○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p> <p>○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p>	<p>30</p> <p>20</p> <p>10</p> <p>0</p>		<p>*'09.11.15시점</p> <p>*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p>
수상경력 (30)	<p>○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물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p>	<p>농림수산물식품부(또는 중앙관서) 30</p> <p>시 도 10</p>		<p>*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p> <p>*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p>
브랜드 출하두수 (20)	<p>○5,000두 이상</p> <p>○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p> <p>○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p> <p>○3,000두 미만</p>	<p>20</p> <p>15</p> <p>10</p> <p>5</p>		<p>*'09.9.30일 기준 현재</p> <p>*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p> <p>*연간공급능력 고려</p> <p>*축산물등급관정소 확인서류</p>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우선순위표

연 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두수 (20)	계 (2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용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면적당(m²)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A)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계 (B)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자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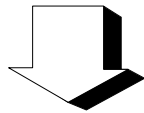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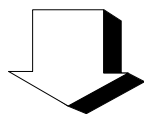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농림수산식품부

① 가축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4 02-500-2062

I.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 '08년 현재 양돈 20%, 양계 74%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05~'08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양돈 36%, 양계83%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가축계열화율					'11.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 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18	20			
- 양계	80	73	7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79,688	26,000	20,000	20,000	340,000
용 자	279,688	26,000	20,000	20,000	340,000
○양 돈	129,644	13,000	10,000	10,000	170,000
○가금(양계 및 오리)	150,044	13,000	10,000	10,000	170,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189, '09.8.24)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제한사항

-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육계는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업체
- 육계 계열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업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 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추어 줄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 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농업

종합자금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목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 기관은 '08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 (별표 2), 반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 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고일	서식
○ 2010 사업추진 계획	2010사업대상자→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 2010 사업추진 실적	2010사업대상자→시·도→농림수산식품부	매반기 익월5일까지	“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림수산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의 년2회 이상 사업점검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가축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계열화 업체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업체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업체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축산물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도계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 경영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계열화율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 추진은 부적절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0.1월말까지)→시·도('10.2월말까지)→예산신청('10.3월말까지)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 시설	○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 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09년 계획			'09년 실적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09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협의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사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 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 야 함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09년	호	두/년	%	%	%	%	
	2010년							
	2011년							

-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②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	과장 허태웅	02-500-2058
		사무관 송광현	02-500-2068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장 이기수	02-2080-6521
		팀장 장인영	02-2080-6524

I. 사업개요

1.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43.5	32.6	39.3	41.4	2011.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63.7	51.7	59.5	61.6	2011.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0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077,205	189,000	145,000	142,143	142,143
용자	880,900 (80,500)	154,200 (20,000)	114,000 (15,000)	112,000 (15,000)	112,000 (15,000)
자부담	196,305	34,800	31,000	30,143	30,143
○ 브랜드 운영지원	1,077,205	179,000	125,000	125,000	125,000
- 용자	880,900 (80,500)	147,200 (20,000)	100,000 (15,000)	100,000 (15,000)	100,000 (15,000)
- 자부담	196,305	31,800	25,000	25,000	25,000
○ 브랜드 판매시설		10,000	20,000	17,143	17,143
- 용자		7,000	14,000	12,000	12,000
- 자부담		3,000	6,000	5,143	5,143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외 금액에 포함됨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 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회원농가의 정의

- 경영체와 경영체의 사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간에 약정을 체결한 농가
- 다만, 번식기반 구축, 정회원 후보농가 육성 차원에서 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명확한 가입 및 관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준회원에게는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에 한하여 정회원에게 준하는 지원 가능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브랜드육 타운 입점브랜드는 판매장(음식점) 내부장비(냉장·냉동고, 조리 시설, 식탁 등) 구입자금('09년부터 지원)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 (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m²(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m²(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3) 지원금액 조정

- 전년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비율 조정 지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 지실사 요청 ·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 지실사 요청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12일)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신청시 판매시설 사업계획 추가 제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서식 2) 후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0월 19일, 농·축협조합은 농협지역본부 의견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중순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전년 12월초)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9월)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10월)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촉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지 위약금 징수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촉발기금 반납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위약금 =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 × (사용일수/365) × (연체금리-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 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지 확인하여, 확정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촉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

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
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例)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 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초)
 -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0.17일까지)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전년 11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전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금년 10.10일까지)
 -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0.17일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11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12월초)

【서식1】 : 2011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신청서(실적보고서)

< 조합용 >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2010년 추진실적 보고서
(2011년 사업신청서 겸용)

경영체명						
평가기준일	2010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9년 10월 1일 ~ 2010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직위	직명			사무실	핸드폰
	대표	-		-		
	전무	-		-		
	책임자					
	담당자					

I. 일반현황

1. 현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2. 사육현황

(단위 : 호/두)

구 분	한우		돼 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조 합 원				
브랜드참여농가				

3.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경제사업실적							조합당기 순손익	
	구매	판매	가공	생축	마트	기타	계	08년	09년
매출액									
비율									
물량									

나. 보유경제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유사업장	규모(㎡)		설치연도	총투자액	1일처리능력	년간 생산, 판매실적 (두/톤, 백만원)		비고
	부지	건물				물량	금액	

※ 생축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은 상시사육두수를 말함

4.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액	

※ 주) 1. 촉발기금인 가축계열화자금, 브랜드가맹점판매시설지원, 축산물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은 반드시 기재
2. 재원(촉발기금, 중앙회, 지자체 등), 용도(운영, 시설), 지원조건(예: 기간-3년거치 일시상환, 금리-3%)

II. 브랜드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브랜드 현황

가. 브랜드명 : (축종 :)

나. 상표등록일 : (권리자 :)

다. 참여농가 및 상시사육두수 : 농가, 총 두

○ 회원농가 명부 (한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 등록두수	축산업 등록여부
				암	수	거세	계		
계									

○ 회원농가 명부 (돼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수			축산업 등록여부
				종돈	모돈	비육돈	계	종돈	모돈	계	
계											

○ 회원농가 명부 (육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사육규모			축산업 등록여부
				거세	수	계	
계							

2. 사업추진실적

가. 물량공급능력

○ 사육규모 및 출하물량

구분	사육규모 (한우-총두수, 육우-거세우, 돼지-모돈수)	출하물량 (두수)
		'10.9월말 기준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입력시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단, 한우·육우는 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서만 인정함,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불가)

○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거래처명	브랜드 판매		비 브랜드 판매		합계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금액	두수
계		(A)				(B)
비율(A/B)	-		-			

※ 증빙자료 : 거래처별 유통거래 증명서 등('09.10월~10.9월 1년간)

※ 부분육 판매시 금액 또는 중량 기준으로 두수 환산 적용

나. 고품질

- 한우, 육우

구분	출하물량 (두수)	한우 육질 1등급 이상(육량 B등급 이상) 육우 육질 2등급 이상(육량 B등급 이상)	
	'09.10월 ~ '10.9월까지(A)	'09.10월 ~ '10.9월까지(B)	비율 (B/A)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불가)

- 돼지

구분	출하물량 (두수)	규격 AB등급 이상 출현율		품질 1등급 이상 출현율	
	'09.10월 ~ '10.9월까지(A)	'09.10월 ~ '10.9월까지(B)	비율 (B/A)	'09.10월 ~ '10.9월까지(B)	비율 (B/A)
두수					

※ 증빙자료 : 축산물자가진단프로그램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입력시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다. 품질균일성

○ 혈통등록

- 한우

회원농가수	총두수(A)	혈통등록두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중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 돼지 (동일계통 종돈 비율)

회원농가수	총두수(A)	동일 계통 종돈수(B)	비율(B/A)	비고

※ 증빙자료 : 한국중축개량협회의 확인문서(개체별이 아닌 총 두수에 일괄확인서)

○ 사료통일 (단계별 총이용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료 회사량의 비율)

사료회사	이용 농가수	이용내역 (톤)				HACCP 인증여부
		육성기 (자돈)	비육전기 (육성돈)	비육후기 (비육돈)	계	
계						-
비율	-					-

※ 기준 : 사료량(톤)을 기준으로 비율 산출

※ 증빙자료 : 사료회사별 사료구매원장 사본, 자체 TMR의 경우 생산 또는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장, 증명서 등)

○ 사양관리 통일

- 한우

사양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재)		출하체중 도체중 390kg이상		거세시기 7개월 이내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거세두수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두수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불가)

※ 거세시기 : 브랜드 밀소 출생일 및 거세시기가 기재된 개체기록부 또는, 송아지안정제, 거세장려금 지급관련자료로 거세시기 및 월령이 기재된 자료

- 돼지

사양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재)		출하체중 도체중 80-93kg		사료 후기 사료량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물량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물량	
-	-	비율(%)		비율(%)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출하체중 : 축산물자가진단프로그램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입력시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 비육후기 사료량 : 사료통일 증빙자료와 동일

- 육우

사양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재)		출하체중 도체중 400kg이상		거세시기 4개월 이내	
이용 농가수		총 출하두수		총 거세두수	
이용 두수		해당 출하두수		해당 두수	
-	-	비율(%)		비율(%)	

- ※ 사양프로그램 : 규약, 문서, 조합원 배포용 자료 등의 사본
- ※ 출하체중 : 축산물자가진단프로그램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불가)
- ※ 거세시기 : 브랜드 밀소 출생일 및 거세시기가 기재된 개체기록부
또는, 거세장려금 지급관련자료로 거세시기 및 월령이 기재된 자료

라.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이용 가공장

이용도축장			이용가공장			비고
도축장명	소비자연맹 운용평가등급	소재지	가공장명	HACCP 인증여부	소재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증빙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자료(축산물등급판정소, '09.10월~10.9월 1년간),
자가진단프로그램 입력시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단, 한우·육우는 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서만 인정함, 자가진단프로그램 출력본 제출 불가),
이용 도축장의 출하증명서, 이용 도축장·가공장의 작업증명서('09.10월~10.9월 1년간)

○ 도축-가공 과정 지육 반출 여부

동일 장소 도축-가공			도축-가공 지육 반출			비율 {A/(A+B)}
도축장명	가공장명	두수(A)	도축장명	가공장명 (없을 경우 미기재)	두수(B)	
						-
						-
계						

- ※ 증빙자료 : 상등

○ HACCP 사료공장 물량 비율

구분	사료회사	이용내역 (톤)	HACCP 인증여부	비고
인증				
	계(A)			
비인증				
	계(B)			
인증사료 비율	-	A/(A+B)		-

※ 증빙자료 : 사료통일 증빙자료로 같음

○ 방역

구분	한우 - 부루세라 감염율(%) 돼지 - 돼지열병 항체형성율(%)	비고
비율		

※ 증빙자료 : 시도 가축위생 검사기관의 확인증(부루세라 해당 지자체의 확인증, 돼지열병 항체형성율 확인증)

마. 조직화

○ 출하계획 수립 여부

구분	실적
연간출하계획(한우,육우-거세우,돼지-전체)	수립, 미수립

※ 작성방법 : 2009년, 2010년 연간 출하계획을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사전 수립하여 공식화한 문서나 전산입력자료 유무를 참조하여 작성('09.10.1~10.9.30)

※ 증빙서류

- 내부 결재 문서, 이사회 의사록, 운영위원회 의결·보고자료, 사업계획서 등
-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출하계획 출력본 또는 프로그램 on-line 화면 출력본

○ 계획 출하율

구분	출하계획 물량(A)	출하물량(B)	비율(B/A)
거세우			

※ 작성방법 : 평가기간 중 출하계획 물량 대비 출하두수의 비율 기재('09.10.1~10.9.30)

※ 증빙서류

- 출하계획 평가항목 상의 출하계획 물량
- 브랜드 출하물량 평가항목 상의 출하물량

○ 사업단 운영 형태

구 분	사업단 별도구성 /인력전담 운영	사업단 별도 구성 /인력 겸직 운영	사업단 미구성
실 적			

※ 작성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항목에 표시

※ 증빙서류 : 사업단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 광고·홍보비 지출

구 분	지출금액(천원)	비 고
실 적		

※ 작성방법 : 평가기간 중 광고·홍보비 지출금액 기재('10.10.1~'10.9.30)

※ 증빙서류 : 총괄내역표, 내역별 지급회의서, 계산서 등(건당 1부만 첨부)

○ 출하장려금 제도 운영 여부

구 분	실적
출하장려금 제도(거세우)	운영, 미운영

※ 작성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브랜드경영체 자체 장려금 제도 시행 여부(지자체 지원 등 제외)

※ 증빙서류

- 출하장려금 제도 시행 문서, 규약, 지침서 등 사본

○ 번식개량시스템

- 한우

구 분	실적
회원의 번식우 개량 평가 DB	구축, 미구축

※ 작성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브랜드경영체 자체 번식우 개량 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

※ 증빙서류

- 번식개량시스템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규정, 규약, 운영지침 등

-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 출력본 또는 프로그램 on-line 화면 출력본

- 돼지

구 분	실적
회원의 번식성적 평가 DB	구축, 미구축

※ 작성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브랜드경영체 자체 번식돈 번식성적 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

※ 증빙서류

- 번식성적 평가시스템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규정, 규약, 운영지침 등

-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 출력본 또는 프로그램 on-line 화면 출력본

바. 직거래 활성화

○ 직거래행사 참여 횟수

구분	실적
직거래 행사 참여 횟수	회

※ 작성방법 : 평가기간 중 직거래행사 참여 횟수를 합산하여 작성('09.10.1~10.9.30),
2일 초과 행사의 경우 1일당 1회로 간주평가

※ 증빙서류 : 행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사본

○ 자체 판매기반 구축·운영

구분	실적
자체 판매기반 운영 개소수	개소

※ 작성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직영 판매장, 식당, 판매 겸용 식당 운영 개소수
(조합간 연합브랜드의 경우 참여조합이 직영하는 경우도 인정)

※ 증빙서류 : 판매기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홍보물,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개소당 1부 이내로 첨부)

3.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연차별 이행계획·실적)

○ 한우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사육두수(총두수)			
연간출하두수(거세우)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1B등급이상 출현율(%)			
종축통일비율(혈통등록비율, %)			
출하체중 비율(390kg이상)			
계약출하율(%)	-		
계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 신규평가항목
(계획출하율)의 '09년 실적은 미입력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2. 사업수준실적의 실적 입력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1B등급이상 출현율, 종축통일비율, 출하시기
통일성의 실적은 2. 사업실적평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돼지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사육두수(모돈수)			
연간출하두수(전체)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AB등급이상 출현율(%)			
1등급 이상 출현율(%)			
종축통일비율(동일계통 종돈비율, %)	-		
출하체중 비율(도체중 80~93kg이상)			
계약출하율(%)	-		
계			

-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 신규평가항목 (계획출하율 및 동일계통 종돈비율)의 '09년 실적은 미입력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년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2. 사업수준실적**의 실적 입력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1B등급이상 출현율, 종축통일비율, 출하시기 통일성의 실적은이 **2. 사업실적평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육우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사육두수(거세우)			
연간출하두수(거세우)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2B등급 이상 출현율(%)			
출하체중 비율(400kg이상)			
계약출하율(%)	-		
계			

-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 신규평가항목 (계획출하율)의 '09년 실적은 미입력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년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2. 사업수준실적**의 실적 입력
4. 달성율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율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1B등급이상 출현율, 종축통일비율, 출하시기 통일성의 실적은이 2. 사업실적평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III. 자금 운용실적

- 조합간 공동브랜드의 경우 사업단 총괄실적표와 자금지원 조합별 실적표를 전체 작성하여 첨부

□ 합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금액(A)	운용금액(B)	운용율(B/A)
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계			

※ 브랜드운영자금 계획금액은 자부담 20% 포함 기재(정부지원액의 125%)

□ 생산지원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련 과목	실적금액	인정비율	인정액
출하선급금	년간 집행실적 누계 (합계잔액시산표 차변누계)		100%	
경영비	지원일 이후 집행실적 누계 (합계잔액시산표 차변누계)		100%	
사료통일비	지원일 이후 집행실적 누계 (합계잔액시산표 차변누계)		100%	
위탁사육비	위탁가축 평가금액 년 평잔		100%	
계				

□ 브랜드운용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련 과목	실적금액	인정비율	인정액
판매 운영비	매취사업 년간 매취사업 총액 (합계잔액시산표 판매품, 가공재료 차변누계)		한우30% 돼지10%	
	외상 매출금 외상매출금 년 평균잔액 (평균잔액시산표 마트상품, 판매, 제품 평잔)		100%	
	재고자산 재고자산 년 평균잔액 (평균잔액시산표 판매품 평잔)		100%	
	단기결제 단기 선결제자금 년 평균잔액 (평균잔액시산표 선급금 평잔)		100%	
사료구매자금	사료구매 선급금 운용 평균 잔액 (평균잔액시산표 선급금 평잔)		100%	
브랜드비용	지원일 이후 브랜드비용 누계		100%	
시설개보수	지원일 이후 집행금액 누계		100%	
계				

VI. 브랜드사업 운영자금 신청서(2011년 자금신청 경영체만 작성)

□ 2011년 자금 신청내역

○ 신청액 : ()백만원

○ 신청내역 산출표 (단위 : 백만원)

내역 및 용도		2010년 추진실적 (Ⅱ.추진실적 기재)		산출근기(A)	현 지원총액 (‘11년상환액 제외, B)	2011년 신청액(C)
생산 지원 자금	출하선급금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경영비	번식두수		번식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통일비	미통일두수		사료미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위탁사업비	출하두수		출하두수×20%×단가 =총 산출금액		
	계	-				
브랜드 운영 자금	브랜드비용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판매운영비	출하두수		출하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사료자금	사료통일두수		사료통일두수×단가 =총 산출금액		
	시설개보수 자금	-		총사업금액의 10% 이내 (최소 1억원)		
	계	-	-			
브랜드 판매시설	판매시설 자금	-	-	총사업비×70%(지원율) ※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총계						

※ 2011년 신청액(C)은 산출금액(A)에서 현 지원총액(B)을 2007년 지원자금(2011년 상환예정액)은 제외하고 기재

○ 신청항목별 사용계획

- 2011년 자금지원은 단순 상환자금 대체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 확대나 개선(회원 증가, 판매량 증대)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사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 농가지원성 자금의 경우는 대체 지원을 일부 인정할 예정이므로, 대체 지원계획을 작성 (단위 : 백만원)

용도	2011년 상환액	2011년 신청액	사용계획
총계			

※ 브랜드판매시설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 첨부

□ 년도별 추진계획

○ 한우

(단위 : 두수/백만원)

항목		2010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생 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 사육두수	거세우				
		번식우				
		계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물량 (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계약출하율(%)					
고 품 질	육질1등급(육량 B등급)이상 비율(%)					
품 질 균 일 성	혈통등록비율(%)					
	사료통일비율(%)					
	사양 관리 통일 여부	7개월이내 거세비율(%)				
		출하체중비율(%) (도체중 390kg 이상)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년도별 추진계획 기재 : 추후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추진 가능계획을 기재

○ 돼지

(단위 : 두수/백만원)

항목		2010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생 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 사육두수	비육돈				
		번식돈				
		계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물량 (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계약출하율(%)					
고 품 질	AB등급 출현율(%)					
	1등급 이상 출현율(%)					
품 질 균 일 성	동일계통 종돈비율(%)					
	사료통일비율(%)					
	사양 관리 통일 여부	후기사료 급여비율(%)				
		출하체중비율(%) (도체중 80~93kg)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년도별 추진계획 기재 : 추후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추진 가능계획을 기재

○ 육우

(단위 : 두수/백만원)

항목		2010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생 산	브랜드 참여농가 (농가수)					
	상시 사육두수	거세우				
	축산업등록 농가비율(%)					
판매 유통	경영체 출하물량(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물량 (두수)					
	소매단계 브랜드 판매비율(%)					
	계약출하율(%)					
고 품 질 품 질	육질2등급(육량 B등급)이상 비율(%)					
	사료통일비율(%)					
균 일 성	사양 관리	4개월이내 거세비율(%)				
	통일 여부	출하체중비율(%) (도체중 400kg 이상)				
위 생 · 안 전	HACCP 적용 도축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 도축장 동일장소 이용여부					

※ 년도별 추진계획 기재 : 추후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추진 가능계획을 기재

위와 같이 2010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실적보고서 (2011년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 조합 : 조합장 인

붙임 :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1부

조합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견서

□ 신청 조합명 :

(단위 : 백만원)

◆ 브랜드명			참여농가수	
◆ 조합경영현황	종합경영평가결과	자기자본	경제사업규모	당기순손익
	등급			
◆ 의견내용	<p><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조직화, 3통 통일 등 브랜드요건에 비추어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참여구성원과 사업주체별 업무분담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 ○ 추진코자 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등 			

년 월 일

농협중앙회 00지역본부장

(인)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2009년 추진실적 보고서
 (2010년 사업신청서 겸용)

경영체명						
평가기준일	2010년 9월 30일					
평가기간	2009년 10월 1일 ~ 2010년 9월 30일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직위	직명			사무실	핸드폰
	대표	-		-		
	전무	-		-		
	책임자					
	담당자					

I. 일반현황

1. 법인(업체) 명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법인(업체) 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 수	
출자액		전담직원 수	
연간매출액	2008년 :	백만원,	2009년 : 백만원

2. 사업현황

가. 08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실적					전체 당기순 손익
	생축	판매	사료	기타(00)	계	
매출액						
비율						
물량						

나.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용도	지원조건		자금내역			상환 만료일
			기간	금리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액	

(기타 서식은 조합용 II. ~ VI. 서식 참조)

위와 같이 2010년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실적보고서 (2011년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법인 : 대표자 인

붙임 : 금융기관 여신 취급 가능 확인서 1부

금융기관 여신 취급가능 확인서

1. 담보제공가능액 : 경영체가 작성

(단위 : 백만원)

담보물종류	면적	기준시가	선순위액	권리자(연락처)	담보제공가능액

2. 여신가능여부 확인란

(조합, 시군지부, 은행지점에서 신청서류에 의거 판단 작성)

여신가능여부	가능 (인)	불가능 (인)
가능 추정액	00 백만원	
확 인 자	00 조합장	인
	00 시·군지부장	인
	00 은행 00 지점장	인

【서식2】

브랜드 경영체 지원 우선순위 추천표

(시·도용)

□ ○○(시)도

순위	축종	브랜드명	추천경영체		브랜드 사업추진년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서식 3】

평가기준표(한우)

□ 경영체명 :

1. 사업수준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실적	득점
물량공급 능력 (30)	사육규모(5)	4천두 미만(0), 4천두 이상(1), 8천두 이상(2) 12천두 이상(3), 16천두 이상(4), 20천두 이상(5)	
	회원의 출하물량(5)	5백두 미만(0), 5백두 이상(1), 10백두 이상(2) 15백두 이상(3), 20백두 이상(4), 25백두 이상(5)	
	브랜드소매 판매 비율(20)	50% 미만(0), 50% 이상(4), 60% 이상(8) 70% 이상(12), 80% 이상(16), 90% 이상(20)	
고품질 (15)	1B등급이상 출현율(15)	50% 미만(0), 50% 이상(3), 55% 이상(6) 60% 이상(9), 70% 이상(12), 80% 이상(15)	
품질균일성 (15)	혈통등록 비율(5)	40% 미만(0), 40% 이상(1), 50% 이상(2) 60% 이상(3), 70% 이상(4), 80% 이상(5)	
	사료통일 (4)	70% 미만(0), 70% 이상(1), 80% 이상(2) 90% 이상(3), 100%(4)	
	사양관리통일 (6)	7개월 이내 거세율 - 80% 미만(0) 80% 이상(1), 90% 이상(2), 100%(3) 출하 도체중 390kg 이상 비율 - 60% 미만(0) 60% 이상(1), 70% 이상(2), 80% 이상(3)	
위생안전성 (20)	도축(4)	이용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 - 하(0), 중(2), 상(4)	
	가공장(4)	HACCP 인증 가공장 미이용(0), 이용(4)	
	가공(4)	지육반출(0), 동일 장소 내 도축·가공(4)	
	사료공장(3)	HACCP 사료공장 물량 비율 - 50%미만(0) 50%이상(1), 80%이상(2), 100%(3)	
	방역(5)	부루세라 감염율 - 1.0%이상(0), 1.0미만(1) 0.75미만(2), 0.5미만(3), 0.25미만(4), 0(5)	
조직화 (15)	계획출하(2)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미수립(0)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수립(2)	
	계약출하율 (3)	출하두수/출하계획 두수 비율 - 50% 미만(0), 50% 이상(1), 70% 이상(2), 80% 이상(3)	
	사업단 운영형태(2)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전담 운영(2)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겸직 운영(1) 별도 사업단 미구성(0)	
	광고·홍보비 지출(3)	연간 3천만원 미만(0), 3천만원 이상(1) 7천만원 이상(2), 1억원 이상(3)	
	출하장려금(2)	자체 출하장려금 제도 미운영(0), 운영(2)	
	번식개량(3)	암소 개량평가 DB 미구축(0), 구축(3)	
직거래 활성화 (5)	직거래행사 참여(3)	연간 5회 미만(0), 5회 이상(1), 10회 이상(2), 20회 이상(3)	
	자체 판매기반 구축·운영(2)	3개소 미만(0), 3개소 이상(1), 5개소 이상(2)	
계(100)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연차별 이행계획 · 실적)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사육두수				16		4		
연간 출하두수				16		4		
브랜드 소매단계 판매비율				16		4		
1B등급 이상 출현율				8		2		
혈통등록비율				8		2		
출하체중 비율 (390kg 이상)				8		2		
계약출하율	-			8		2	2	
계				80		20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09.10월~'10.9월 실적)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 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

4. 달성률 : 달성율×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률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1B등급이상 출현율, 혈통등록비율, 출하체중비율, 계약출하율의 실적이 1.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현장실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평가기준표(돼지)

□ 경영체명 :

1. 사업수준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실적	특점
물량공급 능력 (30)	모든 사육규모(5)	3천두 미만(0), 3천두 이상(1), 4천두 이상(2) 6천두 이상(3), 8천두 이상(4), 10천두 이상(5)		
	회원의 출하물량(5)	5만두 미만(0), 5만두 이상(1), 6만두 이상(2) 9만두 이상(3), 12만두이상(4), 15만두이상(5)		
	브랜드 소매 판매 비율(20)	50% 미만(0), 50% 이상(4), 60% 이상(8) 70% 이상(12), 80% 이상(16), 90% 이상(20)		
고품질 (15)	AB등급 출현율(10)	60% 미만(0), 60% 이상(2), 65% 이상(4) 70% 이상(6), 75% 이상(8), 80% 이상(10)		
	1등급 이상 출현율(5)	40% 미만(0), 40% 이상(1), 50% 이상(2) 60% 이상(3), 70% 이상(4), 80% 이상(5)		
품질균일성 (15)	동일계통 종돈 비율(5)	20% 미만(0), 20% 이상(1), 40% 이상(2) 60% 이상(3), 80% 이상(4), 90%이상(5)		
	사료통일(4)	70% 미만(0), 70% 이상(1), 80% 이상(2) 90% 이상(3), 100%(4)		
	사양관리통일 (6)	후기사료 급여비율 - 10% 미만(0) 10% 이상(1), 15% 이상(2), 20% 이상(3) 출하 도체중 80~93kg 이상 비율 - 60% 미만(0) 60% 이상(1), 70% 이상(2), 80% 이상(3)		
위생 안전성 (20)	도축(4)	이용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 - 하(0), 중(2), 상(4)		
	가공장(4)	HACCP인증 가공장 미이용(0), 이용(4)		
	가공(4)	지육반출(0), 동일 장소내 도축·가공(4)		
	사료공장(3)	HACCP 사료공장 물량 비율 - 50%미만(0) 50% 이상(1), 80% 이상(2), 100%(3)		
	방역(5)	돼지열병 항체형성율-80% 이하(0),80~84%(1) 85~88%(2),89~92%(3),93~96%(4),97~100%(5)		
조직화 (15)	계획출하(2)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미수립(0)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수립(2)		
	계약출하율 (3)	출하두수/출하계획 두수 비율 - 50% 미만(0) 50% 이상(1), 70% 이상(2), 80% 이상(3)		
	사업단 운영형태(2)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전담 운영(2)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겸직 운영(1) 별도 사업단 미구성(0)		
	광고·홍보비 지출(3)	연간 3천만원 미만(0), 3천만원 이상(1) 7천만원 이상(2), 1억원 이상(3)		
	출하장려금(2)	자체 출하장려금 제도 미운영(0), 운영(2)		
	번식개량(3)	번식성적 평가 DB 미구축(0), 구축(3)		
직거래 활성화 (5)	직거래행사 참여(3)	연간 5회 미만(0), 5회 이상(1), 10회 이상(2), 20회 이상(3)		
	자체판매기반 구축·운영(2)	3개소 미만(0), 3개소 이상(1), 5개소 이상(2)		
		계(100)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연차별 이행계획 · 실적)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사육두수				16		4		
연간출하두수				16		4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16		4		
AB등급 출현율				4		1		
1등급 이상 출현율	-			4		1	1	
동일계통 종돈비율				8		2		
출하체중 비율 (80~93kg)				8		2		
계약출하율	-			8		2	2	
계				80		20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09.10월~'10.9월 실적)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영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 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

4. 달성률 : 달성률×배점 (예, 참여농가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률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AB등급 출현율, 1등급이상 출현율, 동일계통 종돈비율, 출하체중비율, 계약출하율의 실적이 1.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현장실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평가기준표(육우)

□ 경영체명 :

1. 사업수준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실적	득점
물량공급 능력 (30)	사육규모(거세) (5)	6천두미만(0), 6천두이상(1), 7천두이상(2) 8천두이상(3), 9천두이상(4), 10천두이상(5)	
	회원의 출하물량(5)	1천두미만(0), 1천두이상(1), 2천두이상(2) 3천두이상(3), 4천두이상(4), 5천두이상(5)	
	브랜드소매 판매 비율(20)	50%미만(0), 50%이상(4), 60%이상(8) 70%이상(12), 80%이상(16), 90%이상(20)	
고품질 (20)	2등급이상 출현율(20)	50%미만(0), 50%이상(4), 55%이상(8) 60%이상(12), 70%이상(16), 80%이상(20)	
품질 균일성 (10)	사료통일 (4)	70%미만(0), 70%이상(1), 80%이상(2) 90%이상(3), 100%(4)	
	사양관리 통일(6)	4개월 이내 거세율 - 70%미만(0) 70%이상(1), 80%이상(2), 90%이상(3) 출하 도체중 400kg이상 비율 - 60%미만(0) 60%이상(1), 70%이상(2), 80%이상(3)	
위생 안전성 (20)	도축(5)	이용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 - 하(0), 중(3), 상(5)	
	가공장(5)	HACCP인증 가공장 미이용(0), 이용(5)	
	가공(5)	지육반출(0), 동일 장소내 도축·가공(5)	
	사료공장(5)	HACCP 사료공장 물량 비율 - 50%미만(0) 50%이상(1), 80%이상(3), 100%(5)	
조직화 (15)	계획출하(3)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미수립(0) 년간 출하계획(월 또는 주단위) 수립(2)	
	계약출하율 (3)	출하두수/출하계획 두수 비율 - 50%미만(0), 50%이상(1), 70%이상(2), 80%이상(3)	
	사업단 운영형태(3)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전담 운영(2) 별도 사업단 구성 및 인력 겸직 운영(1) 별도 사업단 미구성(0)	
	광고·홍보비 지출(3)	연간 3천만원미만(0), 3천만원이상(1) 7천만원이상(2), 1억원이상(3)	
	출하장려금(3)	자체 출하장려금 제도 미운영(0), 운영(3)	
직거래 활성화 (5)	직거래행사 참여(3)	연간 5회미만(0), 5회이상(1), 10회이상(2), 20회이상(3)	
	자체판매기반 구축·운영 (2)	3개소미만(0), 3개소이상(1), 5개소이상(2)	
계(100)			

2.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평가(연차별 이행계획 · 실적)

평가항목	'09년 실적 (A)	'10년 계획 (B)	'10년 실적 (C)	달성율 (C/B)		성장율 (C/A)		합계 (득점)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사육두수				16		4		
연간출하두수				16		4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16		4		
2B등급 이상 출현율				16		4		
출하체중 비율 (400kg이상)				8		2		
계약출하율	-			8		2		
계				80		20		

주) 1. '09년 실적 입력방법 : '09년 평가시 평가시 입력한 '09년 실적('09.10월~'10.9월)

2. '10년 계획

- 각 경영체별 최종 자금 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추진계획 적용
- 계획 수치가 상이할 경우 농식품부 보유자료로 수정 적용

3. '10년 실적 : 1의 사업수준 평가기준표상 실적 입력

4. 달성률 : 달성률×배점 (예, 참여농가 수 달성율 70%×16점=11.2점)

5. 성장률 : 100점미만(0점), 110%미만(배점의 40%적용), 130%미만(배점의 60% 적용), 150%미만(배점의 80%적용), 150%이상(만점)

6. 브랜드소매단계 판매비율, 2B등급 이상 출현율, 출하체중 비율, 계약출하율 실적이 '1. 사업수준 평가기준표' 상 만점 수준 이상일 경우 성장률은 만점 처리

※ 현장실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③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	과장 허태웅 사무관 송광현	02-500-2058 02-500-2068

I. 사업개요

1.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두수 점유율 한우 50%, 돼지 70%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계획		
▪ 한우 브랜드 사육 비중(% , 주지표)	43.5	32.6	39.3	41.4	2011.1	한우브랜드 사육두수/전체 한우사육두수 × 100
▪ 돼지 브랜드 사육 비중(% , 부지표)	63.7	51.7	59.5	61.6	2011.1	돼지브랜드 사육두수/전체 돼지사육두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05~'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량	30개소	10개소	5개소	5개소	6개소	
사 업 비	계	3,000	1,000	500	500	600
	보조	1,500	500	200	200	180
	지방비	600	200	150	150	180
	자부담	900	300	150	150	240

※ '05년부터 시작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브랜드 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2. 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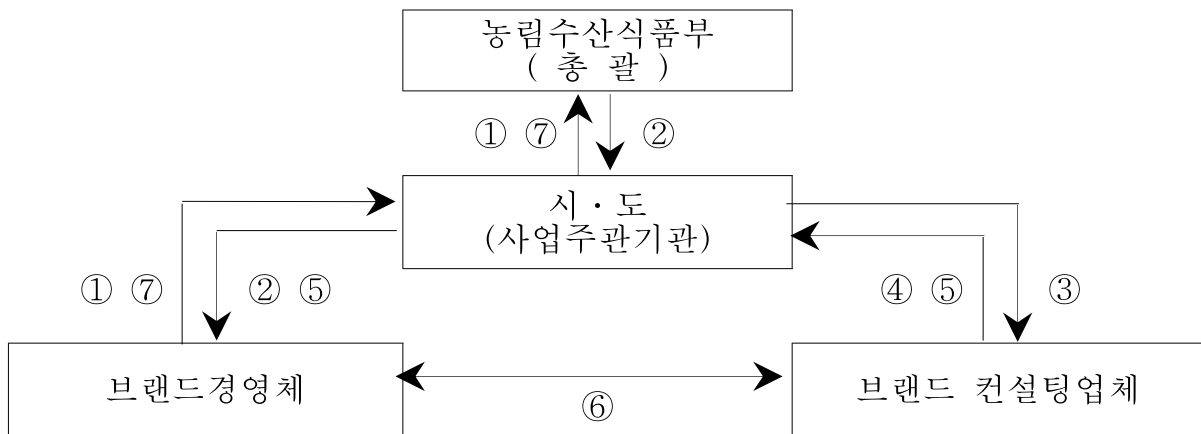
3. 지원형태

- 지원비율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량 : 6개소
- 개소당 사업비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선정 >

- ①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농식품부, 전년10.15일까지)
- ②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식품부→시·도→브랜드경영체, 전년12월초)
- ③ 컨설팅업체 공개 제안설명회 계획 통보(시·도→컨설팅업체, 전년12월)
- ④ 브랜드 컨설팅 신청(컨설팅업체→시·도 금년1월)
- ⑤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금년1월)
- ⑥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금년2월)
- ⑦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시·도→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신청조직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 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 사업신청 경영체는 브랜드사업 부문(3통, 고품질, 도축 및 가공·판매 등)에 대한 실적을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프로그램(www.hqbrand.net 참조)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시·도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의 신청내용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최종 선정, 통보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지원
 - 브랜드간 통합 등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우선지원

시·도

-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 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업체를 공모
 - 공개제안 설명회 계획 통보시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함께 알려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도는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별지 서식2 및 서식3을 참조하여 심사·평가)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경쟁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제안서 첨부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을 시·도에 보고

3.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단계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4. 자금배정 · 집행 · 정산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시·도

- 시·도는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가능한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설정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사업비 정산》

시·도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고사항》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컨설팅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서식4)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 서식5)을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말(지자체별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식품부(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중 1회, 사업완료후 1회이상 시·도 및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한 사업평가회(추진결과 보고 등)를 개최
 - 사업평가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요구 등 실시
 - 시·도는 최종 평가회를 거쳐 당초 사업계획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사업비 집행을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와 함께 농식품부에 컨설팅 결과 보고

IV.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 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2010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금년 10.15일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금년10.20일까지)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금년12월)

[별지서식 1]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09 판매금액		
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신청 핵심과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 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컨설팅 사업신청 (백만원)	합 계	보조금	지방비	자 담
컨설팅 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주요내용	

[별지서식 2]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신청서(컨설팅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설립일		'09컨설팅계약액				
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분야						
인력보유현황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기타인력	계
내부전문인력						
외부전문가풀						
주요컨설팅 추진실적						

이상과 같이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컨설팅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자율 서식)

※ 회사소개서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컨설팅 추진실적 반드시 포함

4.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제안서 1부(자율 서식)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컨설팅 업체 (15점)	조직안전성	5	4	3	2	○설립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사업자등록여부	
	브랜드컨설팅 전문성	10	8	6	4	○브랜드개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 수립능력 ○조직화, 계열화 전략 수립 능력 ○상품화, 시장조사분석, 경영분석 능력	
컨설팅 제안 (25점)	컨설팅이해	5	4	3	2	○축산물브랜드사업 이해도 ○컨설팅업체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컨설팅목적	5	4	3	2	○컨설팅 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목적이 명확한가?	
	컨설팅과제	5	4	3	2	○컨설팅 핵심과제 설정이 적정한가?	
	컨설팅준비	10	8	6	4	○컨설팅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정 능력 ○경영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방안 (회의등) ○생산, 가공, 브랜드, 시장 연계분석 능력	
컨설팅 실적 (30점)	매출실적	5	4	3	2	○'08 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가능 매출, 최근3년) -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이하	
	축산부문실적	10	8	6	4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경영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경영체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생산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계열화, 사양관리 분야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실적	5	4	3	2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컨설팅 인력 (30점)	컨설턴트총수	5	4	3	2	○10인이상, 7인이상, 5인이상, 5인이하	
	컨설턴트 전업비율	5	4	3	2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이하	
	컨설턴트경력	5	4	3	2	○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총계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하	
	컨설턴트 전문성	10	8	6	4	○생산 및 사양관리, 경영진단,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브랜드관리 등 컨설팅 각분야 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보유 여부	
	외부전문가	5	4	3	2	○전문성 보완 외부 전문가 및 기관확보정도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붙임 1]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합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등에 대한 내용

[붙임 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축산물 브랜드사업 실태 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업무협의회, 조사 및 분석 내용 검토회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해결방안 도출 및 내용 검토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조합에 제시한 실행 계획 ○ 조합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 분석(농가계열화 확대 정도, 브랜드 축산물 출하확대) ○ 보고회 및 업무협회의 참석(제시한 해결방안의 사업성 검토회의, 조합사업으로 실행여부 검토회의,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최종보고회)	

[별지서식 4]

컨설팅 일지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경영체	컨설턴트
		(총 인)				
		(총 인)				
			.			
			.			

[별지서식 5]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브랜드명		책임컨설턴트	
전 화		전 화	

구 분	컨설팅 주요내용	성과와 문제점
업무협의회		
컨설팅 내용 및 사업반영		
임직원, 조합원 교육·지도		
문 제 점 (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 작성기준 : 컨설팅기간 중 매분기별 작성. 다음달 5일 이내 보고

※ 보 고 처 : 시·도 컨설팅 담당부서 경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로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최대휴 사무관 강대진	02-500-2101 02-500-2105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참여농가(업체)수	400	80	175	320	2011.1	컨설팅 참여농가(업체)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250	1,400	2,560	3,200	3,200/년
보 조	625	700	960	960	960/년
용 자	-	-	-	-	-
지방비	-	280	640	960	960/년
자부담	625	420	960	1,280	1,280/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영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 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 접수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지원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안전위생과-2171호 ('09.10.7)로 기초치]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09.11월중)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3. 컨설팅 업체의 지정 · 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붙임3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 대상] 컨설팅 업체 선정('09.12월중)
 - 각 시·도지사는 공개경쟁입찰 참여 공고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발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팅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농장(업체)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선정(가급적 한 업체가 여러 업종(소·돼지·닭·관매업 등)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전문적 컨설팅이 되도록 유도할 것)
 -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각 1명 이상과 사업대상자(농업인·영업자) 등으로 구성
 -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10.1월중)
 - 선정된 농업인·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지정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농가 또는 영업장 당 3,200천원)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붙임2 서식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진행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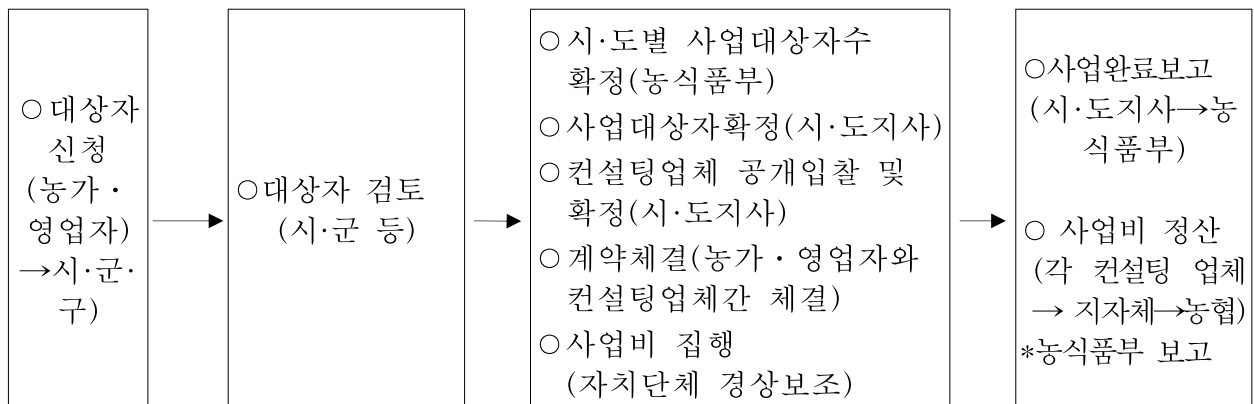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지사가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농협 촉발기금사무국

○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배정내역(지급계좌 포함)에 따라 시·도별 자금 지급



5. 이행 점검 단계

《사후 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0.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붙임2)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농림수산식품부

- 연 2회 이상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컨설팅업체 등에 대해 점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업체 신청 기준(붙임3)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농가(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을 분석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지정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환 류》

- 컨설팅 업체별 HACCP 지정 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10. 11~12월
- 수요조사 방법 등 :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함

<붙임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업소)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여부(가축사육농장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구분	농장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판매업소는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비고 (이월 등)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10.09.06완료
소(젓소)						'11년 이월
돼지						
닭(산란계)						
닭(육계)						
닭(중계)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						

<붙임 3>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 사육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 신청 기준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HACCP·수의·축산·식품기술 분야 중 컨설팅 대상의 해당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HACCP 분야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 * 2011년부터는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상근직원(최소 10개월 이상 정규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던 직원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외부계약에 의한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산입하지 않을 계획임

[개별사항]

- 사육농가 : 전문인력중 수의사(최소 1명) 포함
- 축산물작업장 :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중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HACCP 지정 완료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컨설팅(총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 법인 설립전 축산물 HACCP 컨설팅 실적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시 인정 가능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HACCP 분야 : HACCP교육기관에서 HACCP 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장컨설팅 혹은 기타 HACC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

가. 사육농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의사, 축산계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컨설팅지원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수의·축산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축산물작업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축산, 수의, 식품관련 전공자(학사 이상)자 또는 축산, 수의, 식품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정완료 실적 10건 이상 보유자 또는 식육판매업 HACCP 지정완료 실적 보유자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장 정복철 사무관 조성남	02-500-2380 02-500-2387

I.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를 2010년까지 810개소 참여를 유도하고 2012년에는 1,200개소까지 확대 유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개소)	810	579	659	732	12월	각 지자체에서 참여공동체를 선정하여 보고한 공동체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61,100	14,300	23,000	23,690	76,410
보 조	30,550	7,150	11,500	11,845	38,205
용 자	-	-	-	-	-
지방비	19,510	5,720	9,200	9,476	30,564
자부담	11,040	1,430	2,300	2,369	7,641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로서, 매년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체
 - 총 지원횟수 4회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6억 이상 공동체
 - 사업비 지원이 취소(반납)되거나, 포기 또는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동체 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체
 - 공동체별 전년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 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년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230개 공동체
 - 최우수공동체 2개소, 우수공동체 208개소, 신규우수공동체 20개소

3.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간이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폐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립 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및 홍보(동영상 포함) 등 기타 자원보호와 자율관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동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
 - 어선어업 공동체는 다음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구입
 -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구입(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에 사용
-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공동체 주 활동어장, 항구 또는 마을앞 등에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면허·허가번호, 어장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알림판(예시:길이 180×150cm, 철판으로 제작하여 120cm 이상 높게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최우수 공동체 : 3억원
 - 풍요 공동체 : 2억원
 - 모범 이하 : 1억원
 - 신규 우수공동체 : 5천만원
- 지원금액 가감(최우수공동체는 제외)
 - 구성원수가 2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50% 지원
 - 구성원수가 4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80% 지원
 - 예산배정액이 남을 경우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공동체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2010년 등급화 확정

시·도, 시·군·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의거 공동체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시도별 우수공동체 선정 기준

시·도,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절한가를 검토(필요시 지방수산사무소의 의견 수렴)
 - 설계서 작성은 2010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작성. 이 경우 2010년도 정부채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 가운데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사업추진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사업의 준용지침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상황을 감안,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 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금배정 요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당해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하며, 분기별 추진실적보고(별지3호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준공계(별지4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차량·장비, 기구, 어장관리선	5년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물과구축물	10년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5월, 10월)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함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올해 사업비 회수, 자격취소 및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3년 사업비 지원 배제

6.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시·도(지자체)에서 당해연도말까지 공동체 추가선정 및 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시·도(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한 공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환 류》

- 평가결과, 차년도 육성사업비 배정시 시·도 참여공동체 기여에 따라 배정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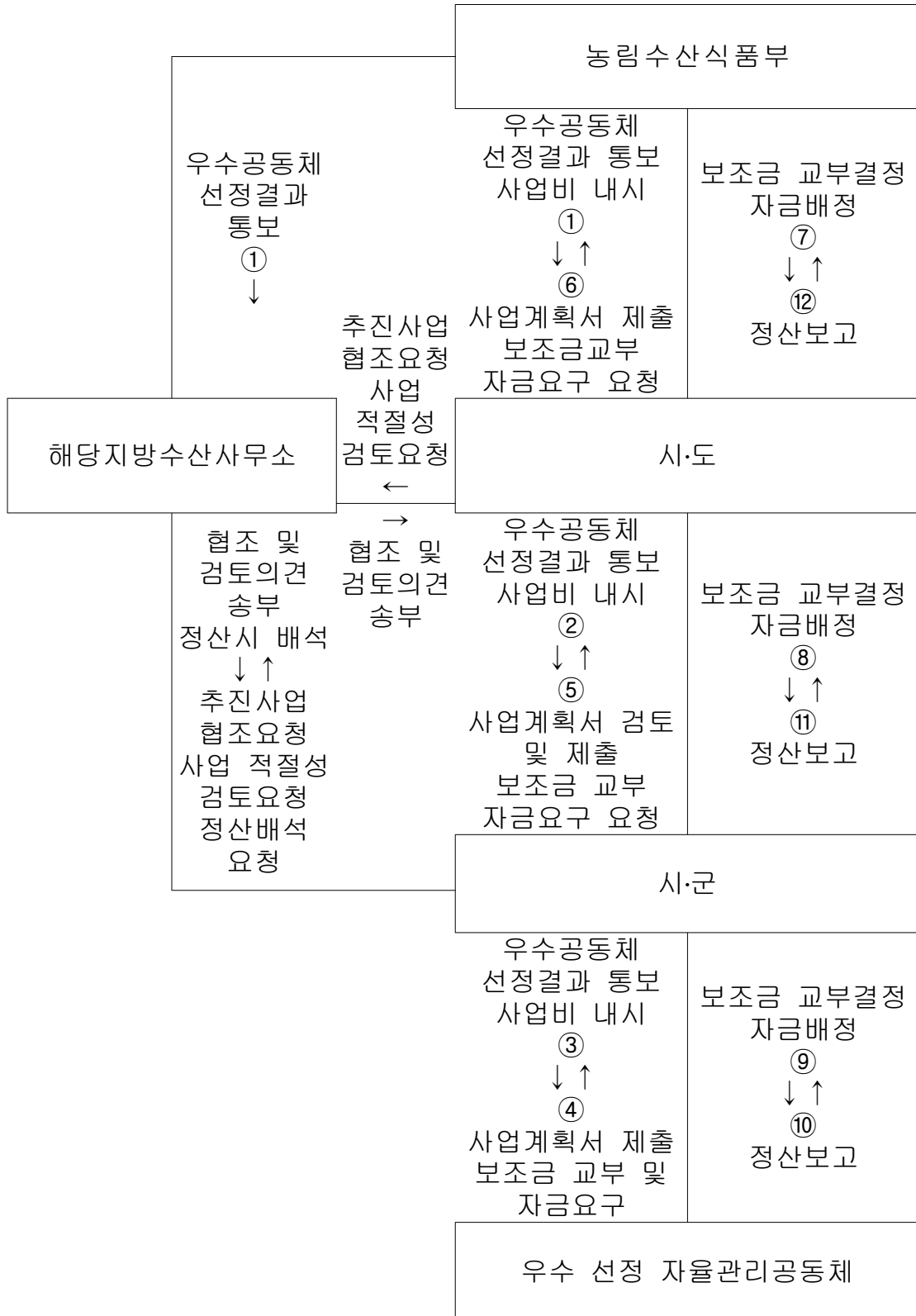
- 2009년 자율관리어업활동 실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11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10.10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11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10.11예정)

【 별첨 】

< 사업 추진 체계 >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 청 자	공동체명				참여 어촌계 (또는 지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용 자 (%)			
자 기 자 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p>상기와 같이 2010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업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장 정복철 사무관 장귀표	02-500-2380 02-500-2389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바다숲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국민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 지	'08	'09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개 소)	17	7	9	12	2011. 1	지원 실적/목표 (50개 소)×100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 재정투입(억원)	170	120	90	120	2011. 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2500억 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이후
합 계	12,000	9,000	12,000	17,000	200,000
보 조	6,000	4,500	6,000	8,500	100,000
지방비	6,000	4,500	6,000	8,500	100,0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분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안 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위해 직접조사에 의한 현존자원량 조사 및 향후 자원량조사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 생물상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지방비(50% 이상) 투입 계획 반영
 - 또한 관련 어업인, 수협 등 유관기관, 대학, 바다목장 사업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3. 지원대상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안 바다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요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상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 연안바다목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

6. 사업한도액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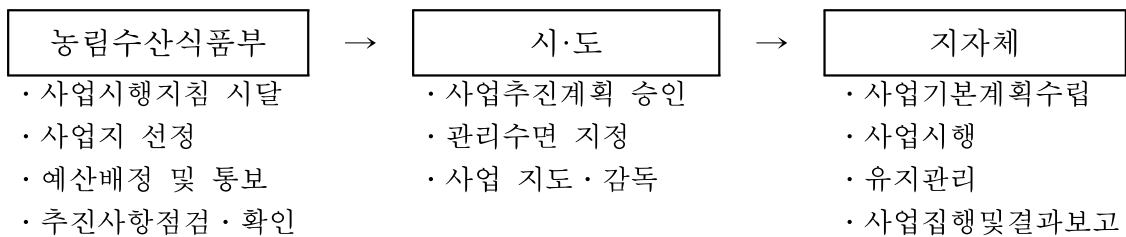
○ 5년간 1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7.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사업추진 체계

가. 기관별 역할분담

- 어업인 :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운영, 시설유지 위탁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예정지 선정 및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등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 관리수면 지정 고시 등
- 전문연구기관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자문, 어업인 교육 및 운영 지원 등
 - ※ 전문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대학 등 바다목장 조성 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지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세부사업 협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등

나. 사업추진체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연안 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에서는 자체비용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안 바다목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연안 바다목장 사업 추진 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1부.
 - 전문연구기관의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신청지에 대해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여 타당성 평가회의를 2회이상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요건에 최대한 적합한 해역을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시·도(지자체)

- 연안 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사전조사 및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후보해역 선정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수산종묘방류 및 관광사업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수산자원조성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사업지 예정지는 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국가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 승인
 - 사업대상 선정·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안 바다목장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행
 -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의 시설물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 지자체에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연도별 사업착수시나 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할시 등의 경우에 심사 후 사업내용 결정
- 지자체는 관내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예산(안) 요구이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실시계획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수립해야 하며, 계획수립은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반영해야 함.
- 사업실시계획수립 용역비는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세부사업계획에는 사업개요, 일반현황,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실시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실시계획에는 개발유형(관광형, 체험형, 어로형 등)의 목적에 부합되고, 1개 이

- 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수립
 -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전문연구기관

- 바다목장 시행경험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연안 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에 대해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
 -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보고서 등 심사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지방비(사업비 50% 이상)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연안 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 사후관리대책 수립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전까지 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 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 요청
 - 사후관리규정에는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 확정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반기 1회) 하고 지자체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여 지도·점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 평가(연 1회)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본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점검 및 자문
 - 대상해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해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 사업이 종료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는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 사업추진이 부진한 해역 및 지자체에게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1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서식 1]

0 0 0 연안 바다목장 사업 추진 계획서

개 요

- 위 치 :
- 목장유형 및 면적 : 갯벌형(관광형), 000km²(00,000ha)
-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주대상 품종 :
- 사업추진 경위
 -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바다목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00~'00 : 바다목장 선정 및 기반조성
 -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 어업 특성
 -
 -

사업추진 방향

-
-
-

주요 사업내용

- 인공어초
- 바다숲
- 종묘방류
- 관광시설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	총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고
합계	합계							
	국비							
	지방비							
인공어초	합계							
	국비							
	지방비							
해중림	합계							
	국비							
	지방비							
종묘방류	합계							
	국비							
	지방비							
관광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해역도 및 기본계획

- 해역도

- 기본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 바다목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수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서장우 해양수산사무관 조성대	02-500-2365 02-500-2369

I. 사업개요

1. 목 적

-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량을 매년 10% 확대 추진
 - 배합사료 품질 개선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최근 3년간 평균사용량보다 10%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배합사료 사용 증 가율(%)	10%	34	8	10(추 정)	'10.12	[(금년도 배합사료 사용량 - 과거3년간 평균사용량)/ 과거3년간 평균사용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34,300	7,150	7,450	6,800	39,400
○ 환경친화형 배합 사료지원	34,300	7,150	7,450	6,800	39,400
- 보조	34,300	7,150	7,450	6,800	39,400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 ('07)500백만원, ('08)450백만원, ('09)450백만원, ('10)500백만원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3. 지원대상

- 대상양식장
 -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돛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단, 종묘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4조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을 초과하여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된 배합사료이며,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리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배합사료 급이대장(별지 제5호 서식)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조식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 가두리(축제식) 양식장 : 면허면적 1ha(최대시설은 20%)당 60,000천원
 - 단, 송어는 면허면적 1ha(최대시설 : 면허면적의 20%)당 8,500천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양식어가당 60,000천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관리주체는 III.6. 성과측정단계의 배합사료급이실태 조사 시 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 「시·도」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울산시(항만수산과) 및 그외 시·도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관리소, 수산기술사업소를 포함한다.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별표 1)를 작성하여 시·도에게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사업홍보
 - 시·도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터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① 전년도 배합사료를 연간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②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연간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③ 당해연도 2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 ④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양식장
- ⑤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 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 ⑦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 ⑧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 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경우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받아야 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시·도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0.1월

- 시·도에 지침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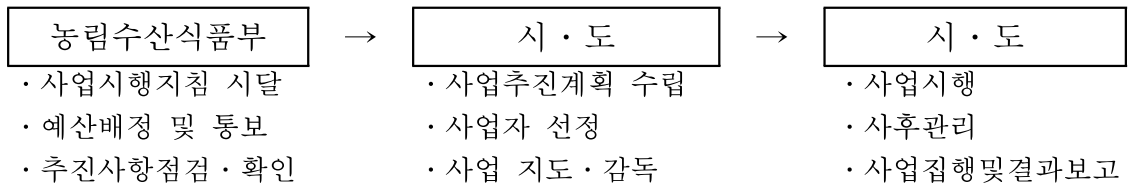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0.2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10일 이상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도) : '10.1~2월

-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시·도

- 사업자 선정 : 연간 1회, 3월말까지
 - 예비사업자 소진시 상기“2.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가능
-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0.12월말일까지
 - 계속등록업자 : 2010.1.1~2010.12월말까지
 -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당해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기간(예: 12월20일까지 적용기간을 두었을 경우 12.21부터 12.31까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매 분기말(3, 6, 9, 12월)
 - ※ 매 분기말 적용시 1월이 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정산 완료를 위해 12월로 정함
 - 정산방법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 (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에게 제출
 - 시·도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실시시기 : 7월,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

- 시·도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
 - 시·도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시·도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도는 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자(Ⅲ.5.《제재》 지급보조금 환수 등)가 당초 지원키로 된 지급예정액을 사업기간내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시·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이 발생될 경우 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자금을 전량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즉시 반납하여 다른 시·도에 재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시·도에 등록(별표 2의 “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지역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중 1개소 이상인 곳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면, 타 시·도에서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함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

- 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별표2)

《제재》

시·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된 사업자는 제외
 -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 중에 확인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자 선정월(3월)의 말일까지 *새로운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후 15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구 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
예산집행실적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총괄부서에서 취합 보고

※ 예) 총괄부서 :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제주도 수산정책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시·도에 시정 조치 및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별표 1)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에 달라지는 특이사항 없음

배합사료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조식육상 <input type="checkbox"/> 가두리			
품종명				
면허(신고)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어촌계 <input type="checkbox"/> 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어장소재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ha)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m ²)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 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사료투여 배합사료 투여	종류별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허가· 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ha)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액 금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액 금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액 금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합사료급이대장

면허(신고)번호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식현황			사료구입량급이등(kg)						
					마리수	평균 체중 (g)	평균 전장 (cm)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지 제6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결과 보고('00년 ○월)

배합사료 급이실태

(○○시·도)

어장 및 사업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월)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가구, ha, 톤, 백만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어가구	면적	사료량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상
계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10년 배정된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집행예상 : 11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 집행부진 사유

-

○ 향후 전망

-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1년간 동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0 년 월 일	
○○시장·도지사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 년 월 일	
○○시장·도지사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과 장 박규호 사무관 이세오	02-500-2351 02-500-2359
	자원환경과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과 장 정복철 사무관 이병웅	02-500-2380 02-500-2386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 효과 검증 및 문제점을 최소화
-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폐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제13호
- 고밀도부표사업
 - 어장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부칙 제2조,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어장관리법 제13조,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7	'08	'09		
▪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300척	112척	150척	250척	'09.12	
▪ 고밀도 부표 보급율	5%	-	-	7	'08.12	[총교체대상부표 23,000천개 ÷ 2010년교체목표 1,150천개]×100
▪ 굴폐각 자원화 지원율	14만톤	-	-	14만톤	'09.12	연간 총발생 굴 폐각 폐기물 중 14만톤 처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2,000	4,286	14,707	15,134
보 조 용 자	1,400	3,000	4,870	5,034
지방비	600	1,286	4,447	4,548
자부담			5,390	5,552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통발, 자망 어업인에 한함
- 어업권 처분관청인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어업권(면허, 허가)을 취득하여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 단체, 굴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 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양식 굴을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굴 패각을 자원화(굴패각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3. 지원대상

-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 통발이나 자망어업인
 - 연근해 통발이나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상기 5개 시도이외 필요시 참여 가능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 과정에 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의 규격을 어장관리법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설하는 자에 한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친환경 개량부표를 구입하는 자를 포함
-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폐각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굴 폐각을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 폐각을 자원화하고자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분해성 통발(붕장어, 꽃게, 대게), 자망(꽃게, 참조기, 대게) 어구 구매 보급
- 해면 양식장, 어장에 고밀도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 발생한 굴 폐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폐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의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투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70%), 지자체 보조(30%)
- 사업물량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어구를 지원(척당)
 - 경상북도
 - 어업인당 최대 1,200폭을 지원(가로 2,530코×세로17코)
 - 전라북도
 - 어업인당 최대 2,000폭을 지원(가로 1,000코×세로13코)
 - 전라남도 및 제주도
 - 어업인당 최대 3,000폭을 지원(가로1,000코×세로250코)
 - 강원도
 - 어업인당 자망은 최대 1,200폭(가로2,530코×세로17코)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20%, 자담 60%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20%를 추가 지원
 - * 어구의 표준단가 및 자부담 단가의 기준 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
-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에서 총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 고밀도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물량(개당)의 단가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하는 굴 폐각에 한함

7.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성능 검사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별표 1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생분해성으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1. 사업자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중앙회에 시달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수립
- 신청기간은 매년 2월(8월)중에 15일간 신청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사업신청서류는 어업허가증 등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지자체(시·도, 시·군·구)

- 어업자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TAC 참여 어업인 우선공급)
-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
- *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자 선정 결과서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수요조사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정결과 통보
 - 시·군·구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 명단을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에 통보
-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 별지 제4호 서식 : (대상자·주소변경) 통보서
- 사업 입찰공고 및 공급업체 선정 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시·도)
- 생분해성어구 공급시 어구량 검수입회(시·군·구)
 -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

- 기관장(시·도)은 시범사업 이행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현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어구공급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및 결과를 지자체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어구공급업체로부터 **어구납품** 및 일선조합에 배부
- 어구 신청물량 **확인 및 검수**
 -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 (2부 작성, 지자체 1부 보관)**
- 어구 보관, 어업인에게 보급 및 주요내용 **설명(교육)·제품사후관리**
- 시범사업 대금정산 및 지자체(시·도)에 보고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통발, 자망어망·어구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망지를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방사업체
- 완성된 어구 납품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인증서 첨부
 -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인증서**

사업대상자(어업인)

- 시범사업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시범사업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별지 제4호 서식 : (대상자·주소변경) 통보서**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시범사업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

* 지자체의 승인하에 공급된 어구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 할 수 있음

국립수산과학원

-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
-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서** 발급
 -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인증서 / * 검사규정 : [별첨1]
- 어업인 자부담 결정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표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산정, 통보
 - * 물가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증명서류 제출
- 보조금 결정 통보(시도, 시군구)
 - 단가계약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어업인 자부담 중 8할을 제외한 금액
 - * 보조금 = 단가계약에서 결정 금액 - (어업인 자부담 X 0.8)
- 어선에 납품 적재된 생분해성어구의 무작위 성능 조사 실시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평가서 작성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지자체(시·도,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의 지자체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실사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현지 실사 : 년 1회 이상

지자체(시·도)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 기록부**
 - * **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 결과서**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 1회 지자체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명령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율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에서 배제

자자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류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매년 12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0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간 : 2010년 3월 말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와 동일함

[별표 1]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 생분해성 수지는 한국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시험법(EL 724)에 의해 환경인증을 받은 PBS(Polybutylene succinate) 100%로 하여야 하며,
- KS M ISO 14851 또는 KS M ISO 14852 또는 JIS K 6950 시험법에 의해 60일 기준으로 표준물질 대비 20%이상 생분해되는 시험 성적서 및 환경마크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물실 방사 및 통발 사출에 관한 규정

-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계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의뢰규칙(해양수산부령 제 277호)에 준한다.
- 대게자망용 그물실은 국내산 수지 PBS 100%로 방사하여야 하며, 그물실 1가닥의 굵기는 0.405mm 또는 0.435mm이며, 편차는 각각 $\pm 0.01\text{mm}$ 이고, 강도는 $4,500\text{kgf}/\text{cm}^2$ 이상, 신장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 꽃게 및 참조기자망용 그물실은 국내산 수지 PBS 100%로 방사하여야 하며, 그물실 1가닥의 굵기는 0.284mm이며, 편차는 각각 $\pm 0.01\text{mm}$ 이고, 강도는 $4,700\text{kgf}/\text{cm}^2$ 이상, 신장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 통발용 그물실은 PBS 100%로 방사하여야 하며, 그물실 1가닥의 굵기는 0.22mm이며, 편차는 각각 $\pm 0.01\text{mm}$ 이고, 강도는 $3,200\text{kgf}/\text{cm}^2$ 이상, 신장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
- 사출용 통발은 국내산 수지 PBS 95% 내외, 탈크 5% 내외를 혼합하고, 여기에 카본블랙 0.5~1.0%를 첨가하여 검정색으로 사출하여야 하며, 통발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55cm, 12cm, 깔대기의 길이와 직경은 각각 21cm, 13cm 이며, 편차는 $\pm 1\text{cm}$ 이어야 한다.

- 자망 및 통발용 그물실의 성능 인 증은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지는 100% 적합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한다.
- 사출통발의 성능인 증은 1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지는 100% 적합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한다.

□ 완성된 어구에 관한 규정

- 완성된 자망의 성능 인 증은 편망업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계에서 직접 무작위로 2쪽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4호)에 준한다.
- 대게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240mm 이상, 가로 2,530코 또는 1,250코, 세로 16코, 상·하 보호망 각각 1/2코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참조기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51mm이상, 가로 1,000코, 세로 250코(상·하 보호망은 각각 2.5코, 1.5코 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꽃게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152mm이상, 가로 1000코, 세로 13코(상·하 보호망은 각각 1/2코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완성된 대게자망의 절단하중은 2,250kgf/cm² 이상, 신장율은 15%이상, 참조기 및 꽃게자망의 절단하중은 2,000kgf/cm² 이상, 신장율은 20%이상이어야 하며 1쪽의 무게는 다음 표와 같으며, 편차는 ±10%이하이어야 한다.

어구명	규격 (가로×세로×굽기×망목)	중량(g)	어구명	규격 (가로×세로×굽기×망목)	중량(g)
대게자망	1,265×14×0.435×240	1,950	대게자망	1,000×11×0.435×303	1,800
"	1,265×17×0.435×240	2,350	"	1,000×11×0.50×303	2,100
"	1,265×20×0.435×240	2,750	"	1,000×15×0.50×303	2,800
"	1,265×22×0.435×240	3,000	"	1,000×22×0.50×303	3,700
"	1,265×25×0.435×240	3,450	참조기자망	1,000×250×0.284×51	3,200
"	2,530×14×0.435×240	3,850	참조기자망	1,000×260×0.284×51	3,350
"	2,530×17×0.435×240	4,800	꽃게자망	1,000×13×0.284×152	500

- 그물코의 뻘힌 길이, 매듭의 정확도는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완성된 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계에서 직접 무작위로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4호)에 준한다.
- 통발용 그물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물실을 이용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며, 그물코의 길이는 35mm이상, 가로 1,000코, 세로 100코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망목의 크기, 합사수, 1필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완성된 그물의 절단하중은 2,000kgf/cm² 이상, 신장율은 15%이상이어야 하며, 편차는 ±10%이하이어야 한다.
- 그물코의 뻘힌 길이의 정확도는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 완제품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고, 중량, 생산자, 생산년 월일, 제품규격을 명기하여 포장 전 열풍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생분해도 및 해상성능 시험에 관한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상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지로 만든 그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의거 해상에서의 생분해도와 어획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고, 18~24개월 기간내에 생분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10회 이상의 해상시험을 거쳐 고분자 합성수지 어구의 95%이상 어획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 생분해 그물실 및 그물의 성능인증에 대한 경과 조치

- 그물실의 직경 0.405mm 에 대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은 취득한 경우, 직경 0.405mm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그물실 및 그물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어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연안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연안통발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명	어구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귀하						
○○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신청 수량	어업인부담 금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계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 자망(통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 주소변경) 통보서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 (개)수	연락처	기타

첨부 : 신청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 귀하

○○○ 시장(군수 ·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2010. ○○.○○

지자체장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인증서

<p>제 ○○-○호</p> <p><input type="checkbox"/> 상 호 :</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p> <p><input type="checkbox"/> 소 재 지 :</p> <p><input type="checkbox"/> 어구종류 : 생분해성(통발, 자망)</p> <p><input type="checkbox"/> 인증기간 :</p> <p><input type="checkbox"/> 인증사유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상기 어구는 생분해성어구 사업지침의 검사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생분해성어구임을 인증합니다. 2010. .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국립수산과학원장</p>

[별지 제7호 서식]

검수조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별지 제8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 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시·도)

- 소속 :

- 직 급 :

- 서 명 : ㉠

○ 수검자(시·군·구, 수협)

- 소속 :

- 직 급 :

- 서 명 : ㉠

2010. ○○.○○

지자채장

②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선정신청서 1부
 - 면허·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부표생산(공급)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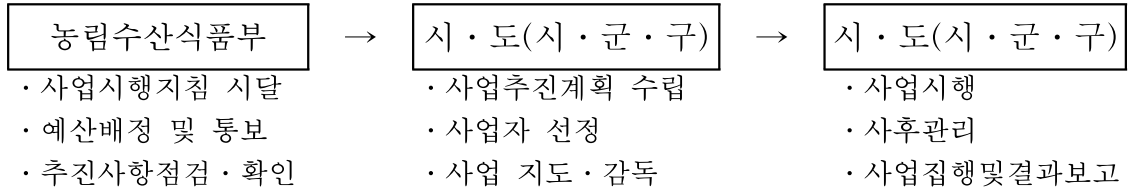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고밀도 부표보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9.12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0.1월
 - 관할 어업인, 부표 제조(공급)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0.1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부표공급 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시기 : 5,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고밀도부표 보급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어장 등에 대하여 규격부표 사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 실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말까지 확인한다.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농식품부	분기말 익월 15일	별지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익월 5일한	별지 서식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회계연도 종료시	별지 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1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선정신청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 번호	제 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 기간		
어업자 성명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 계				
고밀도부표 (스티로폼)				
개량부표				
PVC				

3. 사업비

- 총 사업비 : 원
- 국고 보조 : 원
- 지방비보조 : 원
- 자 담 :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위와 같이 사업 집행코자 신청하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2010년 월 일

신청인 000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착 (준) 공 계

1. 사업명 :

2. 시설(설치)장소 :

3.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0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0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0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0 0 0 (인)

귀하

③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경상남도(시·군·구)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선정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굴 박신(가공)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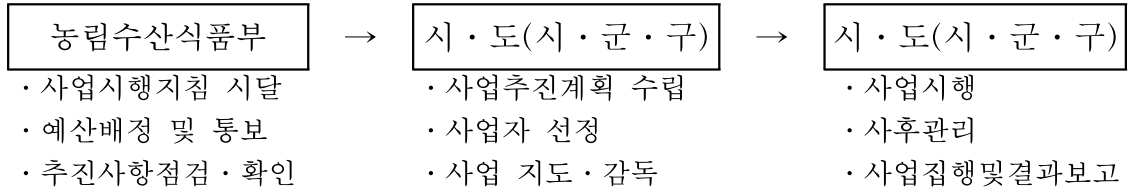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굴 패각 자원화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09.12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0.1월
 - 사업대상자, 어업인, 굴수하식수협 등에 대하여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0.1월

- 사업신청자, 어업인, 굴수하식수협 등에 대하여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처리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시기 : 5,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굴 패각 자원화 실적,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는 굴 패각 발생 및 자원화 실태를 수시로 조사 실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말까지 확인한다.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농식품부	분기말 익월 15일	별지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익월 5일한	별지 서식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회계연도 종료시	별지 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본 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2011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선정신청서

1. 굴 패각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국 비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자 부 담 :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위와 같이 사업 집행코자 신청하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착 (준) 공 계

- 1. 사업명 :
- 2. 사업장 소재지 :
- 3. 굴 패각 처리량 :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0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0년 월 일
-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0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귀하

굴 패각 발생 처리량 현황

굴패각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사업대상 굴패각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패각발생량	굴패각 처리 (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굴패각 자원화 실적			처리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 굴패각 처리(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89	수산물시장시설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수산물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수산물정책과	과장 강인구 사무관 이상영	02-500-2301 02-500-231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물과 등)		
수협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물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위생처리, 수산물 판로 기반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의 안정적인 반입물량 확보를 통한 수산물시장 활성화 도모
 - '12년까지 수산물시장 203개소(수산물부류 도매시장 16개소, 공판장 2개소 및 위판장 185개소)중 100여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추진
 - 수산물시장 거래비율 38% 및 산지위판율 51.5% 달성을 통하여 어업인 및 산지중도매인등 출하자들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보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산물시장거래비율(%)	38.0	35.8	41.0	37.4	'10.12	(도매시장 및 위판장 등 수산물시장 거래량 / 국내수산물 소비량)×100
▪ 수산물계통출하율(%)	51.1	50.2	51.8	51.4	'11. 4	(위판량 /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사업량		105	30	30	16	16	13
사업비	합 계	56,909	10,318	9,970	10,086	13,399	13,136
	보 조	29,369	4,947	4,200	5,600	7,311	7,311
	지방비	15,507	2,275	2,784	2,906	3,601	3,941
	자 담	12,033	3,096	2,986	1,580	2,487	1,884
○ 도매시장 시설개선		23,422	2,733	2,626	5,086	6,121	6,856
- 보 조(70%)		16,395	1,913	1,838	3,560	4,285	4,799
- 지방비(30%)		6,005	-	659	1,526	1,763	2,057
- 자 담		1,022	820	129	-	73	-
○ 위판장 시설개선		28,248	7,585	3,655	4,600	6,128	6,280
- 보 조(40%)		11,299	3,034	1,462	1,840	2,451	2,512
- 지방비(30%)		8,473	2,275	1,096	1,380	1,838	1,884
- 자 담(30%)		8,476	2,276	1,097	1,380	1,839	1,884
○ 공판장 시설개선		1,550	-	-	400	1,150	-
- 보 조(50%)		775	-	-	200	575	-
- 자 담(50%)		775	-	-	200	575	-
○ 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	1,800	-	-	-
- 보 조(50%)		900	-	900	-	-	-
- 지방비(50%)		900	-	900	-	-	-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제5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수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 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보조 70%, 지방비 또는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

- “산지위판장(이하 ‘공판장’ 포함)”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과 붙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시·군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천
- “수산부류 지방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3월말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추천(신청)한 사업과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부류 중앙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량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증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 비	5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건축물	10년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부류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수협이 있는 경우와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지도 및 작성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업명	00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위치	o		
현시설 규모	o 부지 m ² , 연면적 m ²		
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 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현재시설 전경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시장 시설개선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액			집행액			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2. 사업 개요

사업명	00시장(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업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바닥	m ²	
비가림		

사진			
공사전	바닥공사	공사후	바닥공사

수산분야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장 박규호 사무관 권용철	02-500-2351 02-500-2363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료 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의 지원으로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
-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어선 유류절감장비 4,000척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실적(척수)	400	-	-	600	2월	계획대비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18,340	13,040	100,200
보 조	-	-	5,502	3,912	30,060
지방비	-	-	5,502	3,912	30,060
자부담	-	-	7,336	5,216	40,08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설치 및 유류절감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어선기관을 설치하거나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설치
- 자기 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유류절감장비 및 어선기관, 장비개량 지원사업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물량
 - 집어등 설치 : 217척, 유류절감장치 : 200척,
 - 어선기관 : 10,000마력, 장비개량 : 10척
-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집어등 설치, 유류절감장치 또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중 어느 특정 사업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세사업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 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를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유류절감장비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유류절감장치 및 LED 집어등, 집어등 반사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집어등 : 국립수산물과학원, 유류절감장치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 ※ 인증기준은 2009년 기준을 적용하되, 성능 여건 변화에 다른 기준 변경 등은 인증기관에서 기준을 변경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조식기자재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 2009년도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및 선박검사기관에 시달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1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집어등, 유류절감장치와 어선기관 및 장비·설비 등에 대하여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집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 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수협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을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집어등 설치의 경우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 우선
- 기관 및 장비·설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 순위는 소형어선 사업자(수협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을 우선으로 함),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장비 사용자 순으로 함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 무동력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 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금 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상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자 선정 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매분기말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계·장비계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 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 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0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2010년 3월 20일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설치어선(집어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 명: 기 중(규 격) 수 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년 월) :

- 기타 :

2. 사 업 계 획

○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 정 공 기		사 업 내 용	신 청 내 용
	착 공 일	준 공 일		

* 사업내용은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 (사업지원효과 등)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사업자선정, 착공(공사중), 준공물량 등 상세히 기재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척, 마력, 대)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척, 마력, 대)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 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 추진실적(연도 분기)

1.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비 내역서			사업자 선정			사업자 미선정			보조금교부결정			자금집행내역		
물량 (척, 마력, 대)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척, 마력, 대)	예산	물량 (척, 마력, 대)	예산		물량 (척, 마력, 대)	집행액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보조	지방비	

2. 세부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단위 :천원)

사업자 선정물량(척, 마력, 대)		향후 조치계획				잔여예상물량 조치계획
공사중	미착공	추진가능물량	잔여예상물량			
			물량	보조	지방비	

3. 추가소요물량

(단위 : 천원)

시도별	물량	예산	사유

91	수산장비임대사업
----	----------

① 양식장비 임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병욱	02-500-2321 02-500-2333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장비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경영수지 개선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장비 임대 활성화로 장비 이용율 제고 및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 '13년까지 임대사업소 15개소 운영 서비스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2	-	-	2	익년 2월	임대사업소 운영실적 평가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	3,000	3,000	33,000
- 보조	-	-	1,500	1,500	16,500
- 지방비	-	-	1,500	1,500	16,50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별 임대사업소가 개별어가, 지역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 어촌 공동이용조직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수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양식업에 필요한 장비 임대
 - 기계화가 필요하고 다수의 어업인에게 공동 이용될 수 있는 장비
 - 개별어가 등에서 필요하나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사업소의 임대 양식장비 구입
 - 시장·군수는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사업소의 임대 양식장비 관리 지원
 -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또는 설치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등)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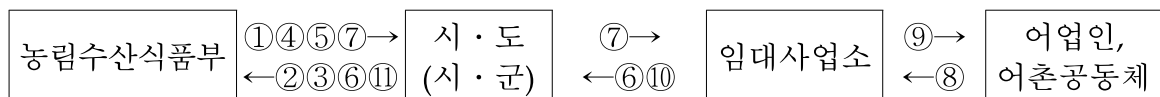
- 총 사업량 : '13년까지 15개소(총 사업비 : 225억원)
- 사업 단가 : 15억원/개소(국고 7.5억원, 지방비 7.5억원)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가 및 물량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대사업 당 15억원 한도 지원
- 임대 대상장비는 지역별로 수요를 분석하여 선정
- 개별장비 단가는 수협이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업 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단가 설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시행절차 >>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③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④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⑦ 보조금 교부 ⑧ 양식장비 임대 신청 및 임대료 납부 ⑨ 양식장비 임대 임대료 징수 ⑩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⑪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요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당년도 1월)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요청함(당년도 2월)
- 시장·군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유형, 임대장비 수요, 적정 임대료 등을 조사한 후 사업대상 지역의 양식현황, 양식장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신청(당년도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함(당년도 3월)
 -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관창고를 보유·활용 가능한 기관을 우선 지원

시·도(시·군)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지도 및 감독을 실시함(당년도 3월)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임대사업소를 선정

- 해당 지역 내의 수협, 수산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할 것
- 임대장비 보관창고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한 후 세부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3월 이후)
-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 시장·군수는 임대장비를 적기에 어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임대사업소

- 사업 수요조사, 임대장비 구입, 양식장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장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 함
- 임대장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장비 구입이 가능하도록 산정
 - 임대료 산정 시 어업인, 어촌계, 지역수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장비 구입은 수협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급사업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사업소가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함
- 양식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어업인, 어촌계 등과 양식장비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맞게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영
 -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장비를 임대
 - 장비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장비, 임대방법, 임대료 납입 및 관리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어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함
- 임대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함

임 대 장 비
이 장비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200 년 월 일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시장·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당년도 3월)
- 시장·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분기별)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소에서 요청한 자금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자금 배정 요청(분기별)
-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소에 자금을 배정(분기별)

임대사업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사업 추진현황(임대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7월, 익년 1월)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반기별)
- 시·도지사는 임대사업소의 보조사업비 검정·정산 시 임대장비 구입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징구·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사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익년도 2월)

자금관리주체(임대사업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
-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용양식장비 (어선형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비(일체) : 8년 ○ 어장관리선, 활어차운반선 활어운반선 : 25년 ○ 해상크레인(어선형) :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사후관리기관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비는 계속 사용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임대장비보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장비 보관창고 : 10년 		

※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3항 [별표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임대사업소 운영 개소
 - 산정방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10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군·구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10. 2. 1 ~ 2. 28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시·군
- 구비서류 :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와 동일함

[별표 1]

양식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시·군)

양식어업 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09.12월말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양식면허 건수	양식면적(ha)	생산량(톤)

3. 임대사업 개요

임대사업 추진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소요금액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종 대	천원	평	천원	명	천원	천원
		(100%)	(%)		(%)		(%)	(%)

6. 세부 추진계획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 조사자 :
- 조사 기간 :
- 조사 지역 :
- 조사대상 어가수 :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 임대 양식장비 구입
 - 기 타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임대유형
		대	천원	천원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양식장비	임대 대상자	비고
장기			
단기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리모델링 여부

○ 기 확보

면적	구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고
m ²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 리모델링 필요 여부

- 리모델링 내용 및 비용

임대 양식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 임대사업 전담인력 확보내역, 임대 양식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 임대 양식장비 관리방법 등을 표기

7. 행정 사항

조례 또는 지침제정 추진계획

※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일정을 표기

임대사업 홍보계획

구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타			

사업 추진일정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별표 2]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계 획				추진 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개소	천원		
○○ 시								
○○ 군								

※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여부

시 군 명	제정 여부	비 고
○○ 시		
○○ 군		

※ 제정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첨부로 제출

3. 임대 양식장비 구입

시군명	장비명	구입 계획	구입 실적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대	대	천원
○○ 시				
○○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m ²		m ²		
○○ 시					
○○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별표 3]

양식장비임대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100%)	()	()		
임대 양식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세부명세

○ 임대 양식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 원	천 원		조달구입, 수의 계약 등 구입 방법을 표기
합 계		총 대				

○ 임대 양식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등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m ²		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업무구분	인원	단가	소요금액	비 고
	명	천원	천원	
합 계				

○ 관리비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운영비 등을 포함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장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 양식장비			임대 기간	임대료		반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				

[별지 제3호 서식]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장비명 - 일련 번호 (예시 : 활어운반차 - 1)
------	---------------------------------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성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양식장비	관리번호 명판

②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김병욱	02-500-2321 02-500-2333

I. 사업개요

1. 목 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국의 취약어촌지역으로 어업용기자재 점검 및 수리 서비스 확대
 - '12년까지 이동수리소 60개소 운영하여 취약어촌계 310개소 서비스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서비스 어촌계 수	196	-	-	196	익년 1월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분석 (시·도(수산사무소) -> 농림수 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432	810	900	2,750
보 조 지방비 자부담	-	432	810	900	2,750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	432	810	900	2,750
- 보 조	-	432	810	900	2,750
- 지방비					
- 자부담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서, 벽지의 취약지역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3. 지원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어선용기관 : 디젤 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등
 - 어업용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항해등, 레이더, GPS플로터 등
 - 양식용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배어링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최고 5만원 이내) 부품 무상교체비용(2009년 3만원⇒2010년 5만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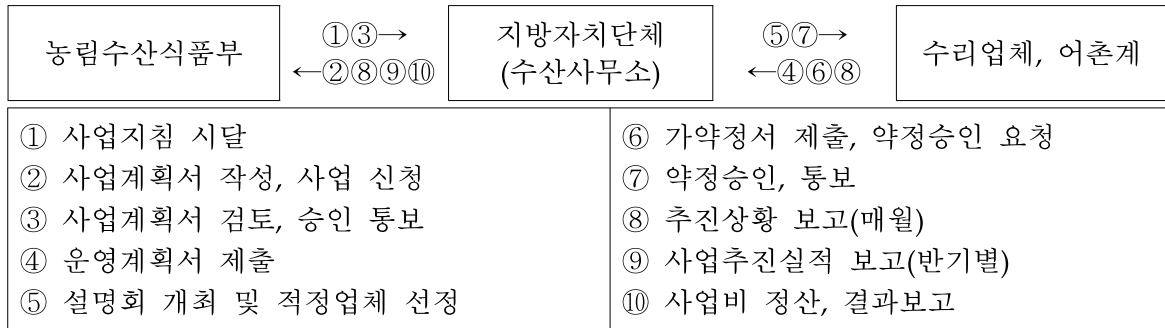
- 사업량 : 30개소(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9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정기점검·수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1인 1일(8시간 작업기준) 인건비는 10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소규모 부품(5만원 이하) **무상 교체비**
 - 어업인 1인당 당해 서비스기간 중 2개 부품 이내에서 무상교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부품을 초과할 수 있다.
 - ※ 5만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 *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非 부품)
- 동일인의 동일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 서비스는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유류절감장치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 또는 수산사무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대상, 자금용도 및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
- 수산사무소별 취약어촌 현황(어촌계수, 어업인 등)을 감안하여 수산사무소 등에 사업물량 배정

수산사무소

-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점검·수리가 필요한 어업용기자재를 조사한 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당년도 1월)
 -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를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 예산, 운영능력, 어촌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동수리소당 2개 이상 10개미만의 어촌계를 선정
- 단,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개 어촌계를 초과할 수 있다.
- 수산사무소당 1개 이상의 이동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사무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당년도 2월)
 - 서비스 대상 어촌계 선정의 적정성(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대상 규모 등)
 - 점검·수리 대상 어업용 기자재 현황
 - 소요예산(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활용 및 점검·수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일정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

- 대상 기자재의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 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하고 약정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을 2010.2.15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0.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추가 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 사업추진 시 이동 점검·수리단위(1개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업 체

-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
-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 등의 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0년도 사업예산을 시·도에 배정(당년도 1월)

시·도

-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무소에 자금 배정(분기별)

수산사무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당년도 2월)
- 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및 확정을 하고 보조금 지급

업체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현황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1월) 실시
- 점검항목 : 서비스 어촌계수, 대상 기자재 현황,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업체의 점검·수리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참여하거나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현장을 확인, 점검
 -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점검보고(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관리
-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점검 결과와 사업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상반기 : '10. 7. 15일까지, 하반기 : '11. 1. 15일까지)
-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또는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업체 및 어촌계가 신청 또는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점검·수리 미 이행, 운영내용 허위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서비스 어촌계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약정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10년 9~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업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10. 3. 1 ~ 3. 31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 1부.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반항로기잡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
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 일자/장소 :

○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병욱	02-500-2321 02-500-2333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 도모
 - 잠재어업인력의 선도어업경영인 사업장 실무연수를 지원
 - 수산업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창업어가 후견 확대
 - 매년 인턴 30명 이상을 지원하고 창업어가 20명 이상 후견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창업어가수	20	22	25	20	익년도 1월	실적보고서 분석 (시·도(수산사무소) -> 농림수산 식품부)
▪ 수산업인턴수	30	24	40	30	익년도 1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50	300	300	300	3,060
보 조	250	300	300	300	3,060
○ 창업어가후견인제	-	300	300	300	
- 보 조	100	120	120	120	1,080
○ 수산업인턴제					
- 보 조	150	180	180	180	1,980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수산업경영인, 창업어가 및 수산분야 전문가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인턴》

- 수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실업자로 수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및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경영체”라 함)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 ※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수산사무소장의 판단 하에 자격요건 변경 가능

《창업어가후견》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경영인,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3. 지원대상

-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턴의 노동력 제공 대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자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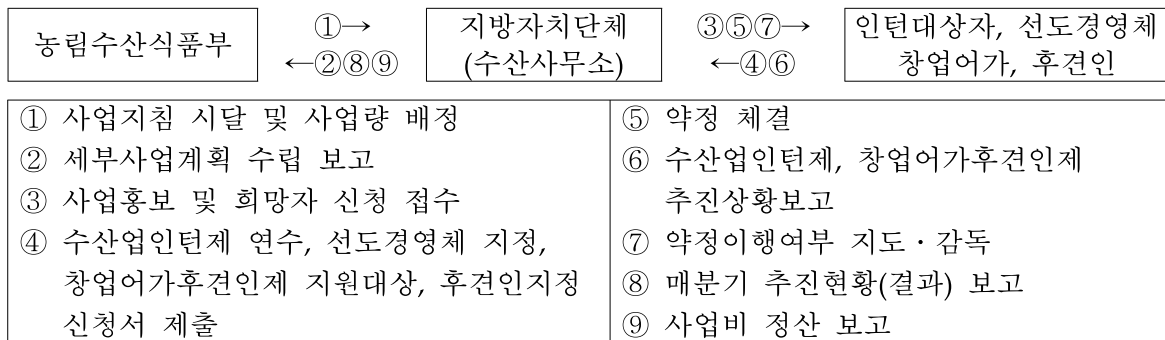
- 사업량
 - 수산업인턴제 : 인턴 30명 이상(예산 : 180백만원)
 - 창업어가후견인제 : 창업어가 20명 이상(예산 : 1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로 연간 6백만원까지(예산이 가능하면 7.2백만원까지 가능) 지원
 - 인턴채용은 선정된 인턴이 선도경영체에 전일근무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단, 야간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
 - ※ 선도경영체는 정부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인턴에게 월 보수로 지급
 - ※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 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
- 창업어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 시달(전년도 12월)하고 수산사무소에 사업량 배정

수산사무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을 수산사무소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요청(당년도 1월)

- 수산사무소 :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경영체,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해당지역 수산사무소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1.15 ~ 2.15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수산사무소에 비치
 - 인턴 : 수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
 - 선도경영체 : 수산업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 후견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수산사무소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수산사무소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산사무소별 예산, 사업물량 배정 및 조정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신청접수 및 배정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 희망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 수산사무소장은 인턴, 선도경영체, 창업어가 등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중매체, 어촌계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선정 우선순위
 - 수산업인턴제
 - ① 수산계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수산대 등) 졸업자
 - ② 어업인후계자의 자녀
 - ③ 연령이 낮은 지원자(수산계 고교 휴학 중인 자 제외)
 - ※ 수산사무소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 또는 수산계교 출신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산업 창업 희망자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창업어가 후견인제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 인턴과 선도경영체,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수산사무소장은 표준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 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경영체당 2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

《수산업인턴》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의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의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인턴과 선도경영체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창업어가후견》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의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의 창업어가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어가의 후견 유도

- 창업어가와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선도경영체, 후견인

- 선도경영체와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 수산사무소에 자금 배정

수산사무소

- 시·도 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수산사무소별 지원계획에 따라 각 지소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로부터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인턴 월보수의 1/2 이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선도경영체에 지급
 -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되, 선도경영체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 수산사무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경영체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 ※ 수산사무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선도경영체, 후견인

- 선도경영체와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 수산사무소장은 선도경영체, 인턴대상자, 후견인 및 창업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도경영체, 후견인 목록을 작성, 활용하여야 함
- 선도경영체 및 후견인 지정결과를 2010.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인턴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현황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도 1월) 실시
- 점검항목
 - 대상자 선정(자격요건, 선정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 운영현황 점검실적 등

신청자

-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수산사무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와 약정체결을 추진
- 창업어가는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일지 작성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고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을 부여함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수산사무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체결 가능
- 선도경영체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선도경영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 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경영체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경영체 지정에서 배제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후견실적이 있는 창업어가수, 인턴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10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후견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기간 : 2010. 2. 1 ~ 2. 28
 -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수산업인턴제
 - 인턴대상자 : 수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1호 서식)
 - 선도경영체 : 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별지2-1호 서식), 운영계획서(별지2-2호 서식)
 - 창업어가후견인제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신청서(별지1호 서식)
 - 후견인 : 후견인 지정 신청서(별지2-1호 서식), 운영계획서(별지2-2호 서식)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와 동일함

《수산업인턴제》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수산업계 학교	
③어업인후계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수당액	(총액)	()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후견자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별지 제2-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경영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경영체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수산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
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기간			
④경영규모 및 기 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3-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수산사무소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별지 제3-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목록

업체명 (소재지)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경영규모 등			
				주업종명	주업종 경영규모	전체 경영규모	영어 경력

* 작성요령

- 소재지 : 해당 시·군·구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경영규모 등 단위 : 경영규모(ha, m² 등), 영어경력(년)

수산업인턴제(표준) 약정서

수산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수산업인턴인 ()를 “을”이라 하며, 수산업인턴을 채용하는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수산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수산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산업인턴과 수산업인턴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 후견인제》

[별지 제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별지 제2-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 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00수산 사무소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00수산 사무소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후견인 별 약정체결 내역)

(단위 : 천원, 명)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선도 경영인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신지식 어업인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퇴직 공무원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대학교수, 연구원	금액				
	창업어가수				
	후견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업종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주업종명 : 후견인이 후견 가능한 주업종
- 후견부문 : 후견인이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후견인의 소속을 기입(선도경영인, 신지식인, 퇴직공무원, 교수, 연구원, 기타)
- 경력 : 영어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창업어가후견인제(표준) 약정서

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일지]

(일시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수산분야

IV. 소득보전

93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과 장 신현석 사무관 최창석	02-500-2419 02-500-2428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대한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품목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으로 품목별 생산어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의 97%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주지표: 소득지지율(%)	97	-	-	-	품목별 정산후 2개월이내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주어기 평균가격+직불금)을 백분율화
▪ 부지표: 만족도(점)	4	-	-	-	상동	지원단가, 지급요건 등 전체항목 평균만족도로 측정

*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지원한도 및 범위 참조), 품목별 주어기(참고자료2)

만족도 조사는 항목별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소득보전직불		5,100	1,500	1,500	21,600
- 보 조		5,100	1,500	1,500	21,600
- 용 자					
- 지방비					
- 자부담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품종의 고시일(추후 확정) 이전부터 당해 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으로서 해당 어업인의 어업 면허 및 허가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자를 말함
 - 다만,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인 중에서 어업종사자는 제외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로서 어업권 행정처분대장(면허,허가,신고)에 등재된 자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이상 증가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추후 고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 어업인의 피해액 일정부분 직접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정부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품목별 평균생산량×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보전비율(0.85)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어업생산통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어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톤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 지급단가 : 기준가격에 당년 평균가격의 차액을 적용한 금액
 - 기준가격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심의비율(80%)를 곱한 가격
 - 평균가격 : 지원대상 품목별 주어진 기간 동안의 어업생산통계에 의한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통보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전달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시·도(시·군·구)

- 사업내용 공고 및 홍보
 - 시·도(시·군·구)에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 자체 게시판, 홍보지 및 지방지 등에 게재,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자단체

- 품목별로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품목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어업교섭과)에 직불금 지원심사 요청
 - 생산자단체는 어업인이 심사요청한 품목에 대해 관련 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업인을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수산통산과)에 심사를 요청
 - ※ 생산자 단체 : 연근해(수협중앙회), 원양(원양산업협회), 내수면(품목별 생산자 협회)

어업인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심사 건의
 - 어업인은 유형별(연근해, 원양, 내수면)로 해당 생산자단체에 직불금 지원 심사를 건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신청인의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수협 위판 증명서
 - 판매매의 경우(판매매를 증빙하는 자료) 입출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자단체와 협동으로 어업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어업인인지 여부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조사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에는 시·군·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단,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생략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및 교부결정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예산배정 내역 통보(시·도, 수협) 및 자금 송금요청(수협)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구에 재배정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 통장입금시 어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신청인이 당초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이 않될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증빙한 후 동 계좌로 입금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시·도에서 신청한 교부신청 사업비를 시·도로 교부결정하여 사업비를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최종 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직불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직불금의 교부 및 신청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농수부에 정산보고와 동시에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수협중앙회)에 사업비 정산내역 통보

자금위탁관리(수협중앙회)

- 수산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은 시도별 사업비 정산내역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내역 정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요건 발생으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각 시·도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 방지 및 사업효율화 추진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시·군·구
 - 점검일정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 점검반 :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 당해년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지표 : 소득지지율(%)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실적 / 당해연도 기준가격) × 100%
 - 성과지표 측정(익년 2월) : 당해연도 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격을 토대로 소득지지율 측정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 어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
 - 조사대상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평가내용 :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사업실적(품목별 주어진 평균생산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어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 평가
 - 평가지표 : 소득지지율이 당해연도 기준가격 대비 97%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품목별 지원정산 후 2개월 이내

- 평가절차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품목의 주어기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개월이내 소득지 지율을 산출하여 평가

※ 단, 품목별 주어기가 지원사업 정산이후 2개월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품목의 어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 이전에 평가를 할 수도 있음

- 측정산식 : (사업연도 지급실적 / 당해연도 목표가격)

○ 사업만족도 조사직불금 소득지지율 평가

- 조사내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의 소득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가 일정수준(5점중 4점이상)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조사시기 : 지원대상 품목별로 자금배정시부터 품목별 사업정산후 2개월 이내
- 조사항목 : 지급단가의 적정성, 지원대상품목의 적정성, 직불금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등
- 조사절차 : 항목별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전체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여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 시달

[별지제1호서식] (앞 쪽)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어업등 분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 번호			
신청 내용	⑤ 신청 품목	⑥소재지			⑦면허 번호	⑧ 허가 번호	⑨ 면허 면적 (㎡)	⑩ 생산 기간	⑪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 ~ .	
생산 현황	⑫생산 품목								
	⑬ 생산면적 (㎡) 또는 생산량(kg)								
⑭소득보전직접지불금 입금계좌(예금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p>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① ~ ③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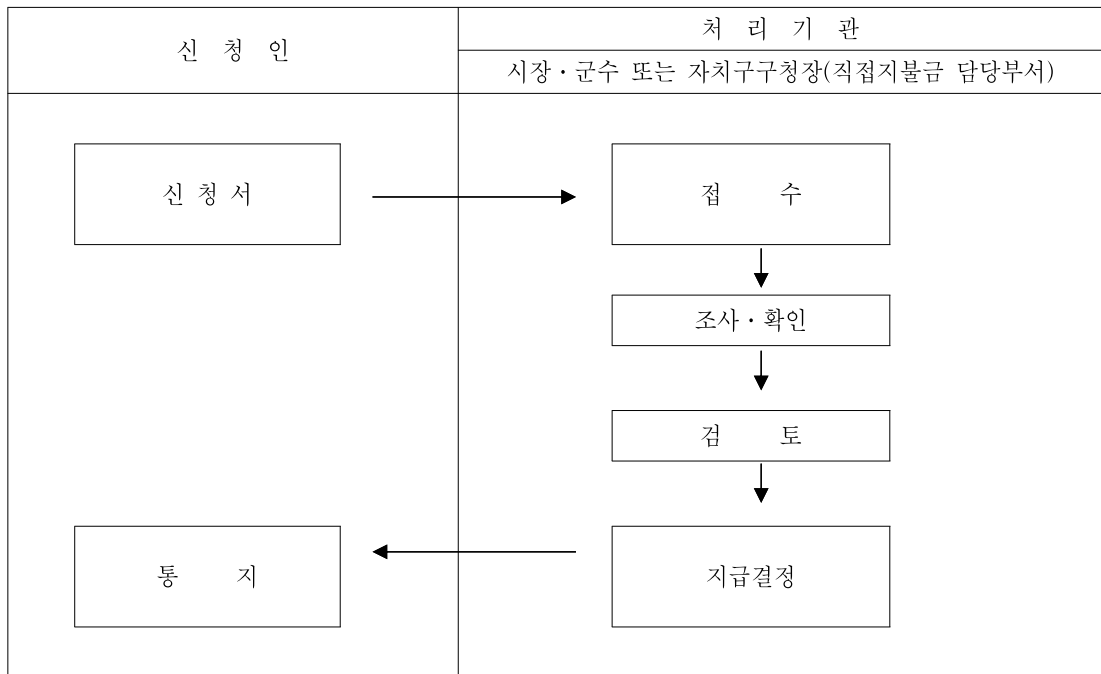
⑤ ~ ⑨란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양식면허 등의 행정처분대상상 소재지와 면허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종류 및 어선의 톤수)을 기재합니다.

⑫·⑬란은 어업등 분야의 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어종 등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

○ 신청자

품목별	주소	성명	생년월일	확인내용			겸업 여부	비고
				생산 금액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명태								
	소 계	○○명 신청						
넙치								
	소 계	○○명 신청						
	소 계	○○명 신청						
총 합 계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제외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종류	주요생산품목/면 적(양식)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어업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 시·군·구 직 성명 (인)

○ ○ 시·군·구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Kg, 천원)

시군	어종별	사업량(Kg)	사업비(기금)	어가수
합계	계			
	명태			
	오징어			
○ ○시	소계			
○ ○군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예산(자금) 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계					
명태	소계				
	○ ○시				
	○ ○군				
	· · ·				
오징어	소계				
	○ ○시				
	○ ○군				
	· · ·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 (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생산면적 또는 어선톤수	어선척당 또는 양식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 단가 (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별지 제6-1호 서식]

<시·군·자치구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 ○시·도지사

발신 : ○ ○시·군·자치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종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어가수 (호)	생산량(kg)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2호 서식]

<시·도용>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년도)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

발신 : ○ ○시·도지사

<직불금 지급내역>

읍·면·동	품목별	자 금 배정액	지급실적			불용 또는 집행잔액
			어가수 (호)	지급생산량 (kg)	지급액 (천원)	
합 계	합 계					
	명태					
	오징어					
00시·군	소 계					
	명태					
	오징어					

<불용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시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소득보전직불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B+C)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 원기금						
○이익금 -						

나.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B+C)		
계						
○사업비 - 명태 - 오징어						
○손실금 -						

2. 어종별

가. 명태

시군별	사 업 량(kg)			사 업 비(원)			비 고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나.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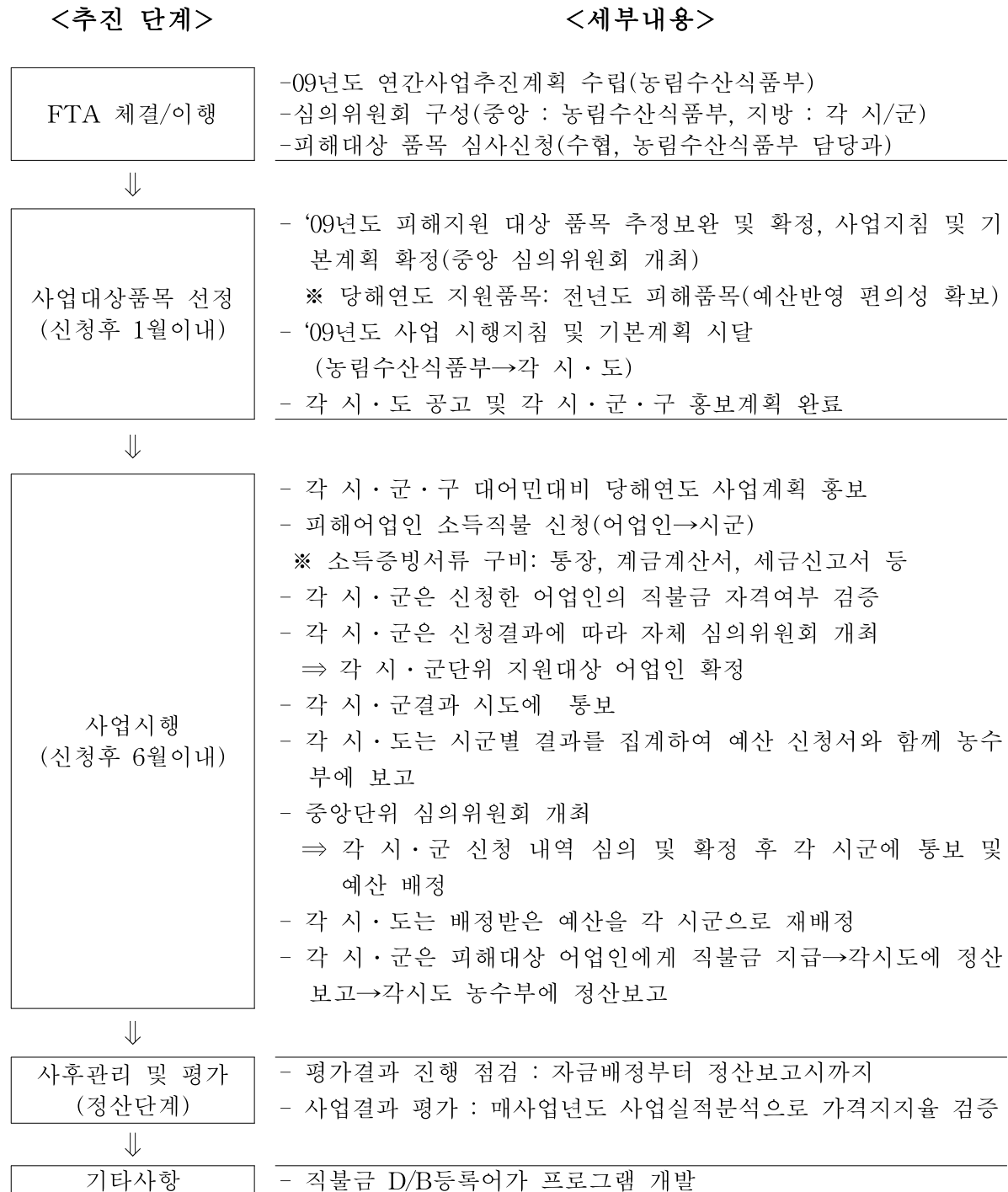
시군별	사 업 량(kg)			사 업 비(원)			비 고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				

3. 기타 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시·군)							관리 번호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연도별	품목별	소 재 지			면허/허 가	영여 기간	생산면적(m ²) /척수
			시·군	읍·면	리·동			
지 급 내 역								
지급 년월일	품목		척당/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수협(은행) ○○○-○○-	

<참고1>

사업추진 절차



<참고2>

주요 관심품목별 주요 월별 생산비중 비교(2003-2007년간 평균)

(단위: %)

구분	주어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태 (원양)	하반기 (22,856)	-	1.6	6.1	-	0.2	1.8	5.9	16.2	25.2	20.3	14.4	13.8
민어 (원양)	연중 (18,756)	8.5	7.4	7.0	7.4	8.1	8.3	8.2	9.4	8.4	8.8	9.3	9.2
민어 (연근해)	하반기 (1,721)	15.3	7.2	7.0	5.0	3.3	1.2	2.0	5.4	3.7	4.9	21.6	23.4
넙치 (연근해)	중반기 (2,204)	7.7	5.3	6.9	10.2	18.4	11.9	5.8	4.7	5.0	7.8	8.5	7.8
넙치 (양식)	연중 (38,354)	9.2	8.6	9.6	9.2	8.7	6.0	6.0	6.8	7.5	7.3	8.3	12.7
오징어 (연근해)	하반기 (210,341)	9.6	2.2	1.0	0.6	1.1	2.1	3.7	7.0	14.0	28.6	12.5	17.7
오징어 (원양)	상반기 (133,098)	11.2	10.98	23.3	19.6	14.2	7.5	2.9	1.8	1.7	2.0	1.0	4.1
대구 (연근해)	하반기 (4,616)	8.2	0.2	3.5	3.9	4.8	3.3	6.0	9.3	13.4	11.6	14.2	19.8
대구 (원양)	중반기 (7,276)	2.2	1.5	0.6	3.0	14.36	23.9	19.4	10.8	14.5	5.3	1.5	3.1
가오리 (연근해)	중반기 (6,012)	7.5	6.0	5.2	5.4	9.9	10.6	8.6	15.3	12.1	7.7	5.1	6.6
가오리 (원양)	상반기 (2,891)	9.7	9.8	15.6	14.6	13.6	6.8	3.9	3.0	3.3	5.4	6.3	8.1
불락 (연근해)	연중 (5,344)	8.8	5.69	7.8	8.0	9.6	9.3	6.8	6.1	5.9	10.3	11.7	10.1
불락 (양식)	연중 (25,855)	7.4	6.6	6.9	8.8	10.8	9.7	9.8	7.2	6.6	7.4	8.5	10.3
홍어 (연근해)	연중 (301)	7.9	4.8	6.5	11.2	10.9	6.3	3.0	2.8	9.2	11.2	8.4	18.0
홍어 (원양)	중반기 (1,184)	4.7	1.9	3.0	2.7	3.0	3.1	10.4	30.0	21.5	8.8	6.3	4.6
뱀장어 (내수면)	연중 (6,791)	6.2	8.4	8.1	8.1	8.4	7.8	8.6	8.8	7.4	9.3	9.3	9.7
고등어 (연근해)	하반기 (137,423)	6.8	2.5	3.1	2.3	1.6	3.9	3.8	6.4	10.6	16.2	28.1	14.8
꽃게 (연근해)	중반기 (7,275)	0.8	0.3	0.9	9.4	13.2	10.7	1.5	2.9	30.2	20.0	8.1	2.0
게류 (연근해)	연중 (34,818)	8.8	8.3	9.8	10.2	10.2	9.5	4.2	2.3	7.3	9.9	9.2	10.3
임연수어 (연근해)	중반기 (1,493)	4.7	8.9	13.0	17.2	16.7	7.5	5.4	4.5	6.8	7.2	5.5	2.6
떡장어 (연근해)	중반기 (35)	-	2.3	8.0	5.1	7.4	33.5	6.8	2.3	2.3	13.6	18.8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양진문	02-500-2321 02-500-2336
수협중앙회	업무지원팀	팀장 김재완 과장 김승철	02-2240-2950 02-2240-2953

I. 사업개요

1. 목적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인안전공제가입률을 2012년까지 50%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30	-	-	20	연말	(가입어업인 수 / 가입 대상어업인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9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수산인안전공제사업	-	-	814	1,221	3,663
- 보 조	-	-	814	1,221	3,663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84세 어업인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자 및 임의 가입한 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로서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가입 절차 : 가입 안내 (지역수협 등) → 가입 신청 (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3. 지원대상

- 수산인안전공제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공제료 : 공제사고발생시 지급하는 재원
- 부가 공제료 : 공제사업자의 공제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순 공제료 : 보험가입자의 순 공제료(총 공제료의 85%)중 50%지원
- 부가 공제료 : 보험가입자의 순 공제료(총 공제료의 15%)중 50%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 범위 : 가입자당 1구좌 공제료의 50% 지원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 공제료

- 수산인안전공제 입원비확장특약은 국고지원 없음
- 상시 직장보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국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4분기 이후 지원 가능

7. 기타 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제요율 및 약관 변경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익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공제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2. 공제의 가입 단계

- 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어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 공제 판매자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 등 약관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을 발행

공제가입자(어업인)

- 공제판매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납부

수협중앙회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작업의 범위, 공제금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한 후 국고지원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수납 한 후 공제증권 발행

3. 공제금의 지급

- 가입자는 공제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수협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협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제금 지급

공제가입자(어업인)

- 재해 발생시 공제를 가입한 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수협중앙회

- 공제금 청구 서류가 수협에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
-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수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비 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배정계획에 따라 수협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공제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수협중앙회

- 공제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조합에 대하여 공제 가입 및 지급절차, 보장내용, 국고지원 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제 판매 실태를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역수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수협중앙회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제재》

- 수협중앙회는 공제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보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공제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공제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공제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공제급여 집행에 있어서 공제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공제계약, 보조금 및 공제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공제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수산인안전공제사업 계획상에 설정된 공제가입률, 보조금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1. 1월말 까지
- 평가대상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공제가입률,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공제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공제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제사업자가 제출한 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공제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는 2011년도 수산인안전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수산인안전공제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mm × 297mm)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최완현 사무관 양진문	02-500-2321 02-500-2335
수협중앙회	정책보험팀	팀 장 문진호 과 장 유정호	02-2240-2980 02-2240-2981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2012년까지 84%(당연가입대상자 기준)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82	76	78	80	연말	(당연가입 어선 척수 / 당연가입 대상어선 척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어선원및어선보험사업	122,127	26,540	36,355	62,921	144,710
- 보조	122,127	26,540	36,355	62,921	144,71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의한 보험가입자
- 다만,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 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원
- 부가 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순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 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일정 비율 지원

구 분	10톤미만	10~20톤미만	10~30톤미만	30~50톤미만	50~100톤미만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어선 보험	70%	60%	-	-	-

- 부가 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 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의 작성 및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험요율 증감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그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접수 및 보험료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지구별 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요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 작성과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대상 : 보험가입대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신고서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임의가입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수협중앙회(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신청서 부분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결과에 따라 보험가입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3. 보험급여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제43조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영업점)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사고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말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 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후 보험료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재정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절차, 보험급여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가입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징수실태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계약, 보조금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만족도조사는 보험가입자 중 표본을 선출하여 어업인 간담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 조사방법 : 어업인간담회, 설문조사 등
 - 주 최 : 수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1. 3월말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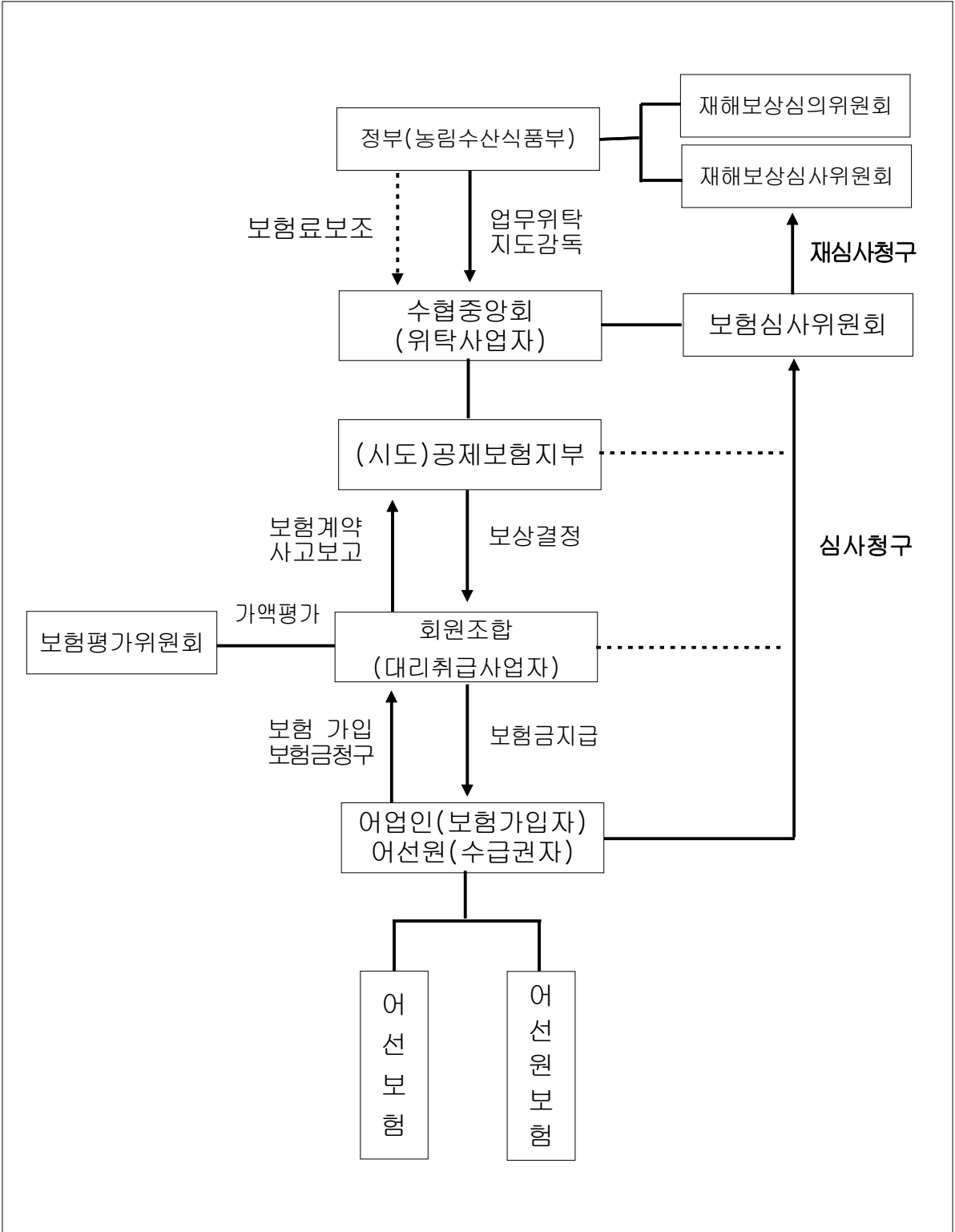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1년도 어업인정책보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광특회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영준 사무관 이수열	02-500-1796 02-500-1802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사업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
 -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바탕으로 투자대상을 선정
- 산업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S/W투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농어촌지역의 기업가정신 고양, 지역주도의 농어촌산업 발전체계와 추진력 강화 및 공공/민간부문의 지원 기능 확충
- 농어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사업고도화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지역별로 체계화

- 농어촌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단위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종합적으로 정비
- 지역 R&D 및 식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R&D 시스템, 국가식품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시·군 범위를 넘어선 복수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시행)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0조, 제82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4.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 과 지 표	'10년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7	'08	'09		
○ 기업 매출액		-	-	-	'10.1월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참여농가 소득		-	-	-		
○ 일자리 창출(명)		-	-	-		
○ 기업유치(개소)		-	-	-		

5.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합 계	564,332	644,188	609,883	628,179	647,024
국고보조	232,364	244,509	235,580	242,647	249,926
지방비	188,516	181,856	204,658	210,798	217,122
자부담	143,452	217,823	169,645	174,734	179,976

* '11년도 이후 수치는 '10년도 기준으로 연도별 3% 증액하여 산출한 금액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지역 R&D 및 정보화 기반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산업 관련 각종 DB 등 정보화 기반 강화 지원 등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 연계된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복합산업화 연계된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설비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별첨」 참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2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 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가 조직화하여 지원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
 - ※ 2011년부터 사업종료 후 개별 농가단위로 소유하게 되는 시설의 지원금지
 - 손실보전 지원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총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예산신청 제한
 - ※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의 경우 동 절차 미이행시 '11년부터 예산신청 제한예정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 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10년 현재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과 이월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대표자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

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 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3.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군·구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포괄보조사업 내역사업의 변경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의견을 통보(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 분기별 자금배정 요구서(서식) : [별지1호서식]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 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 교육이수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가능)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시·군별 포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0.3.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11년부터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11년부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 지역산업역량 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역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등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케팅조직 구축 프로그램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등

- 지원부문 :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창업·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 R&D 및 정보화 기반강화

○ 사업내용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산업 관련 각종 DB 등 정보화 기반 강화 지원 등

- 지원부문 : R&D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현 비용, 컨설팅 비용 등

□ 1·2·3차 산업 복합화를 위한 생산·마케팅 기반구축

○ 사업내용

-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작목반) 생산·유통·시설비, 농수산물 가공시설비, 홍보·마케팅비용 등

□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 사업내용
 -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특화 품목(시·군별 특화품목 지정)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유통·가공분야 등 시설 지원
-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의 생산·유통·가공 시설비, 농수산물 가공시설비 등
- 지원조건 : 단위사업별 연간 20백만원 이상
 - * 시·군에서는 예산신청 연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 지정계획서(별지2 서식)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서(별지3 서식)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한 후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예산지원(시·군별 5개 범위내에서 특화품목을 지정하되, 해당 시·군의 당해 작목의 면적·농가수 등을 감안,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품목 범위내에서 추가 지정 가능)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부문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단지내 수도관로, 하수시설, 공동이용 위락시설, 구조물, 조경, 진

입로 확장, 전력인입, 통신관로, 가로등, 용수개발 등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15~70천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

○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부문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20% 범위내)
- 폐교 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 시설로 활용할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의 비용 지원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단위사업별 10억원 이하

○ 사업대상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농촌지역의 단일 (20호 이상) 또는 둘이상(30호 이상)의 마을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촌 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지원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향토산업 마을 조성

○ 사업내용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판로확충 프로그램 운영
- 향토자원 활용 제조가공, 식품가공, 판매 지원
- 마을의 체험·휴양·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 전통문화의 소득화 및 특화품목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원부문

- 체험·휴양·관광 기반조성 시설비, 향토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제조가공 시설비, 체험·휴양·관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향토자원 상품 개발·권리화 비용 등 (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50% 범위내)
- 사업전담 인력의 활동비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무장 활동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급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

○ 지원조건 : 단위사업별 10억원 이하

- 사업대상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협정을 체결한 농촌지역의 단일 (20호 이상) 또는 둘이상(30호 이상)의 농촌지역의 마을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촌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유사한 경우는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 사업으로 추진

□ 농어촌 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관찰로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부문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 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무료 휴양·체험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부지매입비(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 가능),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유료야영장 등 숙박 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조건 : 단위사업별 50~100억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어촌·어항 관광개발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어촌체험기반시설(체험마을 사업)
 - 지방어항중심의 해안공원, 산책로, 생태·문화체험시설, 관광종합 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어촌관광개발사업)
- 지원부문 : 시설비
 - *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어촌체험마을 5억원 내외, 어촌·어항관광조성 50~60억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어촌계)
 -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 동·리를 말함
- 사후관리 : 국비·지방비 투입부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시·군 명의로 지분등기(공동등기)를 하여야 함(시설준공 후 30일 이내)

□ 복합 낚시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어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체험) 조성
- 지원부문 :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 사업내용
 - 우량종묘 개발·보급을 위한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지원
(김의 국내소비 확대 및 수출증진 등을 위해 우량종자 생산 및 품질 향상 제고)
 - ※ '11년부터 지원중단 예정(필요시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전환)
- 지원부문 :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비
- 지원조건 : 단위사업당 20억원이하
- 지원대상 : 양식어업권을 취득하고 어류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단체), 영어법인

□ 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 사업내용
 -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조사료 물류기지, 전문판매장 등 지원
 - 핵군우(한우등록 브랜드 암소) 사육을 위한 축사 및 설비 지원
 - TMR 원료인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창고, 기계·장비 지원

- 기타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판매 시설지원
- ※ '11년부터 지원중단 예정(필요시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전환)

○ 지원부문 : 시설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

* 전문판매장 : 해당 시·군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소형어선 장비보급

○ 사업내용

- 소형어선의 안전조업 기반조성을 위한 자동운항 장치 보급
- 어선어업자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양망기 보급

※ '11년부터 지원중단 예정

○ 지원부문 : 자동운항 장치 및 양망기

○ 지원대상 : 소형어선(20톤 미만) 어업인

□ 벼 공동육묘장

○ 사업내용

-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과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11년부터 지원 중단 예정)

○ 지원부문 : 공동육묘장 시설 및 부대시설

○ 지원대상 : RPC운영자,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별지 제1호 서식]

‘10년도 (/4)분기 자금배정요구서(국비)

□ 시·도명 :

(단위 : 천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A)	기배정액 (B)	배정잔액 (A-B)	금회요구 (C)	누계 (D=B+C)	잔액 (A-D)
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어항관광개발						
⑤복합남시공원조성						
⑥한우명품화사업						
⑦FTA대비축산경쟁력제고						
⑧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⑨향토산업육성 사업('08)	자본					
	경상					
	계					
⑩특화품목육성						
⑪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						
⑫복합사업						
⑬수산업규모화기업화						
⑭웰빙양곡및가공시설지원						
⑮벼공동육묘장지원						
⑯소형어선장비보급지원						
합계	자본					
	경상					
	계					

※ 해당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만 표시, 다만, 번호는 고유번호를 기록
(고유번호 : ①, ②, . . . , ⑯)

[별지 제2호 서식]

○○년 특화품목 지정계획

농산물

시도	시군	품목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참여농가	특화품목지정사유
			ha	M/T	호	

축산물

시도	시군	축종	사육두수	참여농가	특화품목지정사유
			천마리	호	

농산물 가공 등

시도	시군	가공품목	연간 생산량		가공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 사용량		특화품목지정사유
			생산량	단위	품목	소비량	

[별지 제3호 서식]

특화품목육성계획(품목명)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작성 및 검토자(시·도)					
작성자(시·군)					
작성자(시·군)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시행기관 :
 - 사업주관기관
- 사업지역(위치) :
- 참여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현황
- 특화품목 지정 :
- 다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등	비고
사업비					
부담율(%)	100%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백만원)

지원 시기	세부단위사업	사업량	총 사업비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2. 특화품목 육성여건

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여건

- 생산 및 판매현황
- 유통 및 소비여건
- 육성코자 하는 특화품목과 관련된 생산·가공시설, 연구기관 및 특허보유 등 현황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
 - 재배경력
 - 영농기술
 - 기타(특허보유, 신지식농업인 여부 등)
- 자부담 가능성 :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

3.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 공사추진
- 공사완료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

4. 사업효과

○

5. 기 타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참여자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사업추진조직 등 네트워크 구축 상황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36 별표2)에 지원 제외 대상사업

- ①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 ②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 장애아교육 지원 등
- ③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논농업직접지불
 - 친환경직접지불
 -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 ⑤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 보조사업
 -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
 -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등
- ⑥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지역에너지개발
 -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등
- ⑦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1.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41. 공주미술제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 사이버가정학습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46. 농가도우미 지원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8.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48. 농촌PC보내기 사업
9. 주요교육정책홍보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11.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3.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15.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56. 공공보건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18. 지역정보화 지원	58. 지역봉사사업
19. 자전거도로 정비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21. 공공도서관 운영	6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6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23. 문화의 집 조성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25.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26. 관리책임자대회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29. 조각공원 조성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0. 통영국제음악제	70.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31. 문화학교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72. 편의시설설치시민추진단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35. 노량해전 재현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6. 문화의 거리 조성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38.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7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81. 경로당 운영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82. 경로당활성화 지원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83. 경로식당무료급식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8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26.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85. 노인건강진단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8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29.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8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31. 환승주차장 건설
90. 노인시설 운영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133. 벽지노선 손실보상
92. 아동시설 운영	134.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93. 결연기관 운영	135.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94. 입양기관 운영	136. 불가사리 구제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37. 자영수산물과급식비 지원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38. 장보고축제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139. 담수어침단양식장 시설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9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41.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100. 결식아동급식	142. 연어 치어 방류
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43. 토산어종 치어 방류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45. 수산물 위생안전
104.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05. 사회복지관 운영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48. 국제수산물산업전(부산광역시)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49. 양식기반시설
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50. 마을어장 개발
109.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51. 현충시설
110.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11. 노숙자보호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2. 쪽방생활자 지원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57. 친환경 화장실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61. 보호수 정비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62. 임산물유통·가공
121.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 업 내 용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 시설(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등), 마을 경관조성(꽃길, 산책로, 빈집정비 등), 생활편익시설(안길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주차장 등), 기타 S/W 등 지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테마공원을 조성. 생태공원·경관시설·진입로 등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위락·판매·숙박시설 등은 민자유치) 등 지원
농공단지조성	○ 농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공단지조성비 및 개보수비 지원
어촌어항관광개발	○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도시/어촌간 교류확대를 위한 어촌지역 관광기반 확충<시설비 및 마을사무장 인건비>
복합낚시공원조성	○ 어촌에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해상 낚시터, 낚시연선 집안시설, 수산물직거래장, 어촌생태 체험장 등 지원
한우명품화사업	○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료 물류기지 조성, 전문판매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질 사료시설 현대화, 수출계란 생산농가육성(친환경 양계장·계란집하장), 한우안전성인증사업, 축산 홍보관 등을 지원
전통발효식품전용 공장건립	○ 전통·발효 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역량 강화, 제품개발, 가공시설, 마케팅 등 지원> (‘07· ’08년 신규사업 마무리, ‘10년 종료사업)
특화품목육성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시설 지원(시· 군 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선행)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	○ 자연채묘에 의한 불확실한 종묘 확보에서 벗어나 육성채묘에 의한 우량종묘 확보와 고품질 김 생산체계구축을 위해 김 육상채묘시설 및 냉동망시설 지원
복합사업(신규)	○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지원 ○ 지역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 ○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 ○ 가공산업(친환경식품, 전통식품) 육성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 등을 위해 농산물가공시설 및 개발비 지원 ○ 체험·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한방약초 재배공원 및 짓갈타운
수산업규모화 기업화(신규)	○ 영세하고 전통경영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규모화된 수산전문기업 초기 가공시설 및 물류센터 지원
웰빙 양곡 및 가공 시설지원(신규)	○ 친환경쌀의 소비확대 및 판로확보를 위해 전문 제분공장 설립 ○ 기능성쌀 및 보리가공시설 현대화지원, 부산물 자원화시설
벼 공동육묘장 지원(신규)	○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육묘장 지원
소형어선장비 보급지원(신규)	○ 안전조업 기반조성 및 어선어업자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자동운항장치 및 양망기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유재중	02-500-1827 02-500-1831
	경영조직과 수산개발과 자원환경과 " " 종자원 종자유통과	사무관 박영근 사무관 전충남 서기관 김동욱 사무관 이병웅 사무관 차태황 주무관 황현철	02-500-1733 02-500-2327 02-500-2391 02-500-2386 02-500-2381 031-467-0412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사업 추진방향

- 농어업 생산기반정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개선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추진
 - 지자체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농어업 발전비전 및 목표에 따라 농어업 기반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 농어업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추진
 - 단위사업으로 추진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
 - 종자저장시설 신축 및 현대화하여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및 저장관리 효율성을 증대
 - 어항기반시설 정비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 농어업 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사업 효율화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4조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종자산업법 제121조
- 어촌어항법 제19조
- 어장관리법 제4조
- 수산업법 제4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9조

4.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49,536	350,155	368,007	375,730	377,410
보 조	279,629	280,124	294,406	300,584	301,928
지방비 등	69,907	70,031	73,601	75,146	75,482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 * 대구획경지정리 : 시·군·구 관리구역(시장·군수·구청장), 공사 관리구역(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과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필지규모화, 농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정비

(2) 농업교육 지원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양성 교육 및 농업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교육 시설 건립

(3) 종자관리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종자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4) 어항기반시설 정비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5)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을 보전·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정비 및 적조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과 장비 공급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해중립조성,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 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 1]“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 : 국고 80%, 지방비 20%
-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지구별 2년이상 추진하던 기존 계속사업은 기존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다만 사업주관부처가 조정된 사업은 새로운 주관부처에서 담당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아래 사업단계별 농정심의회, 외부전문가협의회 등 사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시·도에 시달 : '09.10월('11년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 계획수립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11.20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시·도 직접시행사업은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 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예산총액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자금 소요를 파악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 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2월) 농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을 농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붙임 2])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 관리토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0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10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 * 평가항목 예시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우선순위에 의한 지구선정 적정성, 지역발전협의회(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여부 등
 - 사업목표 및 지표설정(달성)의 적정성
 - 사업추진의 적정성
 - 년차별 적정 국비·지방비 확보 및 투입 여부, 사업추진 계획대 실적 적정성, 계획변경(금액, 시기, 횟수) 적정성, 추진상황보고 여부 등
 - 기관장의 사업추진 의지·관심도, 대외홍보 및 주민호응도, 기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구)는 201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붙임 3]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밭기반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사결과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위한 소요액으로 집행
-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 제외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 ※ 국비지원 효율성이 낮은 10ha미만지구는 지방비로 추진토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 환지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되, 사업의 종류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환지소요품을 반영하여 산정

(2) 농업교육 지원

□ 전북농업사관학교 건립

- 목 적 : 전북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최고의 농업전문리더 양성을 위해 실습형 농업교육기관 건립
- 지원내용
 - 농업교육기관 건립 지원 (총 건평 3,300m²)
 - 세부사업내용 : 강의시설, 숙박시설, 도서관, 부속시설 등
- 지원요건
 - 사업비 6,000백만 원 (균특 국비 50%, 도비 50%)
 - * 산출근거 : 설계비(280), 도시관리계획용역(100), 감리비(160), 시설비(5,406), 시설부대비(54)

□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 목 적 : 전북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설립 운영
- 지원내용
 - 품목 실습을 위한 시설원예시설(4,608m²) 구축 및 전문교육트레이너 20명 육성
 - 세부사업내용 : 시설원예시설(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등 실습기자재 등), 전문교육트레이너 육성
- 지원요건 : 총사업비 6,000백만 원(균특회계 국비 50%, 도비 50%)
 - * 산출근거 : 설계비(190), 감리비(100), 시설비(4,550), 시설부대비(30), 교육트레이너 양성(300), 기자재(600)

(3) 종자관리

- 목 적 : 저장 감모율 저하 및 종서품위 향상으로 보급종 수요농가 만족도 제고,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씨감자 보급종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수확 후 씨감자 품질위해요소를 차단하여 고품위 종자 공급 추진
- 사업내용 : 씨감자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저장고 신축
- 지원내용 : 저장고 신축 9억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를 이양 받은 지자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현대화사업에 한함

(4) 어항기반시설 정비

□ 지방어항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 완료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신규투자항은 개발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항
- 사업내용 : 지방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강원도 : 항당 국고 12억원(총 15억원)이상
 - 기타 시·도 : 항당 국고 10억원(총 12.5억원)이상
- ※ 예외) 신규 투자항 없이 계속 공사 중인 항에 투자하는 경우
 - 신규투자 억제 : 항당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예산투자 가능한 경우 신규 투자 가능(신규투자항 1개항은 최소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가능)
 - * 어촌정주어항건설 : 항당 국고 4억원(총사업비 5억원)이상
 - 예외) 당해연도 완공항 또는 계속 투자항에 한정하여 투자하는 경우
- ※ 지방어항건설, 어촌정주어항건설의 경우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어항과 어촌·어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된 신규투자 어항은 지원 제외
 - 단, 개발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 추정어선수 대비 어선척수 증·감 규모가 10%이하인 경우 제외[개발계획 수립시 추정어선수 및 현재 어선척수 비교 검토서 첨부]
 - 개발계획 수립 후 5개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변화된 어선척수 등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변경(접안 및 외곽시설 축소) 등 조치 후 사업신청 가능
- ※ 어촌정주어항건설의 경우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어선척수가 어항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어항은 지원 제외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 형식 및 사양 : 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 이상의 고정식 및 이동식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40백만 원(총사업비 50백만 원) 내외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사업내용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및 유지운영·정비
- 지원한도(항당 최소투자금액)기준 및 범위 : 대당 국고 80백만 원(총사업비 100백만 원) 내외

(5) 수산자원 회복사업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장정화·정비(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적조방제(황토구입 살포, 방제장비 구입 등)
 -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 및 해중립 구성에 의한 갯녹음 회복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였거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립조성사업
 -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2년 이상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인위적으로 수산종묘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자원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지자체
 -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 건립으로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내수면생태관 건립을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생태관, 종묘 배양장, 체험관, 육상수조 및 전시실,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등
 -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붙임 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수요

00 도

(금액: 백만원)

세부내역사업명		사업량	예산			추진진도(%)		자금수요	
			국비	지방비	계	전회	금회	기배정	금회요구
총괄 합계(A+B)									
①발기반정비	계속지구								
	신규지구								
②대구획경지 정리	계속지구								
	신규지구								
③농업사관 학교건설	계속지구								
	신규지구								
④	계속지구								
	신규지구								

* 사업량은 지구수, km, 개소 등으로 표기

[붙임 3]

00시도00시군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예산신청 세부내역 사업 설명자료

① 농어업기반정비사업(00시군 00지구)

○○시,도○○과 ○○담당 <성명>(전화번호)
○○시,군○○과 ○○담당<성명>(전화번호)

1. 요구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10요구	'10이후
○ 계	600	200	400	
- 국비	300	100	320	
- 지방비	300	100	80	
- 자부담				

2. 요구사업 개요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80)
 - '10년도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80)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국비 %, 지방비 %)
- 지원대상자 :
- 사업기간 : 2009~2011년
- 주요사업내용
 - * 핵심사업 위주로 기입
- 사업 추진상황(09.5월현재) :

* 예산집행 현황

'09예산(국고:백만원)				'10예산(국고: 백만원)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도이월(C)	집행률(%) (B/A)	당초예산(D)	예산현액(C+D)	1/4분기집행액

- 사업비 산출내역
 - 포장 $600\text{m} \times 5\text{m} \times 100\text{천원}/\text{m}^2 \times 50\%$ (국고) = 150백만원
 - 양수장, 관정 $600\text{m} \times 5\text{m} \times 100\text{천원}/\text{m}^2 \times 50\%$ (국고) = 150백만원
- 사업효과
 - * 신규지구인 경우 타당성 검토서등 설명자료 첨부

3. 도 담당자 검토의견(요약)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김영준 서기관 김동권	02-500-1796 02-500-1804

※ 이 지침은 별첨1에 제시된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에 적용됨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농산어촌의 장래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마을, 거점 읍·면소재지등 선도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
- 농산어촌의 다양한 경제활동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정비

2. 사업 추진방향

- 마을 - 소생활권 - 읍·면소재지 - 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 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 마을 : 지역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재개발, 이주희망 도시민등이 추진하는 신규마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기반유지
 - 소생활권역 : 지역특성을 감안,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읍·면소재지 :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보육·운동·휴식·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접근이 쉽게 읍·거점면소재지를 선도 거점지역으로 육성
 - 도시 : 주거 밀집지역의 낙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경관개선 등 추진

※ 특히, 도농통합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서비스 연계성 확보에 유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세천정비,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 농어촌여건에 따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방파제, 물양장 등
-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개발 경험자,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 마을 소득확충을 위한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강화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지정을 받은 사업
 - 유사사업의 통합추진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법률의 적용배제)등
- 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내지 제10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 제56조(생활환경정비계획사업시행자)내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특례), 제68조(농어촌주택등의분양)내지 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등), 제101조(마을정비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내지 제111조(마을정비구역등에서의 행위등의 제한)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5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개선)
-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0년도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7	'08	'09		
○ 신규인구유입(명)		-	-	-	'10.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 체험 등 방문객수(백명)		-	-	-		
○ 소득증가(백만원)		-	-	-		
○ 일자리 창출(백명)		-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합 계	1,366,194	1,460,588	1,390,927	1,432,654	1,475,632
보 조	956,336	1,022,412	973,649	1,002,858	1,032,943
지방비 등	409,858	438,176	417,278	429,796	442,689

* 11년도 이후 수치는 '10년도 기준으로 연도별 3% 증액하여 산출한 금액임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마을 권역 종합개발

- 인근 마을등 수개의 마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마을(권역) 종합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 생활편의,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시설
-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

(3)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마을정비 및 재개발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 등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 분산된 마을의 정비
- 기반정비가 열악한 저소득층 도심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등)

(4) 일반농산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

- 기반정비 :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공동 주차장, 전기, 통신시설 설치, 농업농촌생활용수, 공동 이용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공급 등
- 농어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 빈집 철거(슬레이트처리 포함) 및 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개척지구, 살기좋은 지역·도시만들기 등

(5) 주민역량 강화, 지역주민, 마을의 소득향상 등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강화 등
- * 단,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지원제외
- 지역혁신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 활력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제외대상 사업 >

- 공통사항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 2)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부지 확보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이외의 비용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주민소득을 위한 이용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의 임차비 등

5.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포함)
- * 계속사업은 09년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온 계속사업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지구별 2년이상 추진하는 기존 계속사업은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
- 신활력 지원사업은 09년 신활력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도(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 개별법령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포괄보조금예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 지방자치단체(시·군,시·도)내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후보지를 선정하여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하되,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내역사업 금액이 20%이상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군은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계획수립(승인, 인가)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은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시·도에 통보(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 사업시행시 유의사항 >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거나 사업추진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령, 지침 등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포괄보조사업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향후 반영할 계획으로 여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 획일적인 사업추진 지양
- 사업추진시 태양광, 태양열,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등 적극 활용 등
- 사업시행시(계획수립, 시행인가 등) 관련규정 위반할 경우 제제 조치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
- 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소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요구
 - ※ 분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금배정요구서(붙임 1)

시·도(시장·군수)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지자체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사항, 사업특성을 감안한 보조금교부 결정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 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시·도(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시·도지사는 반기별(6월,12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월10일까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 집행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도지사는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1개월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시·도(시장·군수)

- 시·도(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제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 자금회수등 조치
- 농어촌정비법제116조(허가취소등), 제117조(지정해제)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재
- 내역사업별 법령, 지침,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10년도 성과측정 등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가능)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방식에 의해 성과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항목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협력체계(심의회등)
- 목표 달성도 및 성과 : 성과지표 수립(신규유입인구, 체험등 방문객수, 소득증가, 일자리 창출 등) 및 달성 정도, 주민만족도 등
- 사업계획수립 타당성, 대상 사업선정 적정성, 사업집중도, 사업선정 절차
- 집행과정의 효율성, 사업 홍보 등

시·도(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환 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군에 포괄보조금이 배분되면 즉시 예산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농산어촌 마을권역 종합개발,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마을정비 조성 및 재개발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성격의 신규사업은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이행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성격의 신규사업은 2010년 3월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성 검토신청(사업성검토 신청서식은 별도 통보예정)
 - *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그룹등을 활용하여 사업성 검토 예정(4.1~4.30)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예산신청전)
- ※ 사업성 검토 신청서류는 사업성 검토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사업성 검토 항목예시 : 현황(위치, 인구, 가구, 지역자원, 지역역량 등), 사업여건(입지, 사업부지 확보, 관련법 저촉여부, 소득 등), 사업추진방향 및 내용, 지원조

- 건, 사업효과, 사후 관리방안, 기존 유사사업의 운영상황, 기존유사사업 추진내용 등
 * 마을정비조합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
 하며 이것을 사업성 검토 신청서류로 같음. 사업성 검토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에 따름 * 마을정비(전원마을)사업 제안서(붙임3)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장·군수)는 수요조사, 사업안내 등을 미리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신규사업은 기존의 세부내역사업도 가능하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업간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 기존 계속사업도 패키지가 가능한 사업은 관련사업을 그룹핑하여 신청
- 신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포괄보조사업비(일반농산어촌개발)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성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예산신청(5.31까지)
- 시군별로 포괄보조사업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 예산신청서 및 예산신청 세부내역사업 설명자료 첨부(붙임 4)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간 통합 형태의 사업에 신규마을조성(기존의 전원마을), 어촌종합개발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
 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신청 할 수 있음
- ※ 09년 사업시행지침서에 전원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
 한 후 예산신청 하도록 이미 안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 * 2011년도 신규사업은 기존의 세부내역사업도 가능하나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
 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업간 통합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1) 일반농산어촌지역 마을권역 종합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

-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사업내용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시설,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지원부문 : 기반시설 설치, 공공이용시설 부지확보, 지역 역량강화 등
- 지원조건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지원
 - ※ 면당 1개소 정도의 중심마을 육성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 시설(공공이용시설) : 전액 보조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 결성한 법인 및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부지 참여자가 제공, 시설은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 관광기반시설 :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 ※ 소득기반관련 투자는 보조금(국고+지방비)의 20%이하로 함

□ 산촌생태마을조성

-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생산,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마을경관개선, 마을주민 역량강화 등
- 지원부문 : 설계,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용역, 소득기반 마을조성 등
- 지원조건 : 마을규모에 따라 마을조성비 차등지원(14~16억원)
 - 마을조성(2년)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마을, 마을당 100호미만 14억, 100호이상 16억

□ 어촌 종합개발

- 목 적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생산,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복지시설, 수산물 판매시설, 어업용창고 등
- 지원부문 : 시설비 지원
- 지원조건 : 권역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3년간, 30억~50억원)
- 지원대상 : 어촌지역 평균 4~6개 어촌계 단위
 - 권역의 중심마을에 사업비의 20%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에 개발여건 등 규모에 따라 지원
 - 지역주민 공동소득을 위한 시설비 : 일부자부담 5%
- 사후관리 : 준공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공동등기)
 - ※ 소득기반관련 투자는 보조금(국고+지방비)의 20%이하로 함

(2) 읍·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 목 적 : 읍지역 및 거점면소재지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읍지역 및 거점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시장활성화, 기반시설 정비, 복합커뮤니티 센터, S/W 등
- 지원대상
 - 소도읍개발 : 전국 194개읍 지정고시 소도읍 중 종합육성계획 수립·고시된 읍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미추진 소도읍
 - 거점면개발 : 전국의 면소재지로 거점면 소재지개발 미 추진 면소재지
- 지원부문 : 공공시설 편입토지 용지매수, 공공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 지원조건
 - 소도읍개발 : 4년간 100억원(국고: 1년차 5억, 2년차 10억, 3년차 15억, 4년차 20억)
 - 거점면개발 : 3년간 70억원

(3)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마을정비 및 재개발(전원마을조성)

-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녹지포함), 마을회관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마을기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기본계획수립비는 국고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20~29호 10억원이내, 30~49호 15억원이내, 50~74호 20억원이내, 75~99호 25억원이내, 100호이상 30억원이내

※ 별첨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16쪽)

□ 살기좋은 지역·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 기존 사업방식에 따라 추진

- * 2011년 신규부터는 Ⅱ.3.(5) 주민역량 강화, 지역주민, 마을의 소득향상 등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영역에 포함하여 추진

□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 개량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4) 일반농산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준용하되 도시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이 주민등록이전, 거주 등 실제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함)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사업내용 : 물 공급시설 지원(암반관정, 물탱크, 전기시설등)
- 지원부문 : 암반관정 부지 용지매수비, 시설설치비, 정수조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38조)
- 지원조건 : 지구당 평균 220백만원(여건에 따라 실소요액 집행), 20호 이상 지구 대상으로 지원

□ 개발촉진지구

- 사업내용 :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지원대상 : 충남 보령, 경북 안동 해당(계속사업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촌공사
- 지원규모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 지원
- ※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은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지역개발과-1982(09.10.1)] 에 따라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수립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 수혜면적 50ha 미만
(지표수보강개발)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은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지역개발과-1982(09.10.1)] 에 따라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수립

※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후보지 선정요건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함. 기본계획에는 마을기반설치 및 단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07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자격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등 농어촌정비법제56조 해당자
- 토지 : 2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 100%확보, 농림지역이 50%이내,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후 신청가능,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인이 없는 지역
- 입주예정자 : 마을정비조합구성(20가구이상, 입주예정자의 80% 이상확보, 도시민 50%이상 확보)
- 입주수요자 : 시·군등이 시행하는 경우 입주수요자를 2/3이상 확보하여 협약 등을 체결 (11년 신규지구 부터 적용)
- ※ 마을정비조합설립등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참조(서식 붙임2)
- ※ 사업부지 확보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마을정비조합원 자격 :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 도시민 :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기간동안 지원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설계비부터 지원 가능. 지원자격요건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취소 등 조치
- 사업신청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수구의 60%미만 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지양(11년 신규선정지구부터 적용)

주의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지원대상자에게 사전고지),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 제제조치 등을 고지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부지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시장군수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마을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마을기반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사업시행승인지구부터 적용)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시장군수 자체 추진사업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별첨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20개 시군) 지역현황

구 분	해당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별첨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①농촌마을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및 잠재자원 특성화를 통한 농촌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 등 ■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②산촌생태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지역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산촌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키 위해생활환경개선, 생산소득기반시설, 특화품목개발, 산촌체험시설 조성 등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 등
③어촌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어촌의 생산,소득,정주여건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정비, 복지시설, 수산물 판매시설, 어업용창고 등
④ 소도읍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지역의 경제,문화,사회등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추진
⑤전원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읍·면지역의 신규마을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⑥주거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등 지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 지원

구 분	사 업 내 용
⑦농촌생활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기반정비,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확충
⑧농촌농업생활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에 필요한 다목적 용수를 공급키 위한 암반관정, 이용시설설치 지원
⑨기계화경작로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영농촉진, 농산물 손상방지와 영농편리 도모르 위해 농로 확·포장
⑩지표수보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양수장등 시설 보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안정영농기반 구축
⑪소규모용수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ha미만 가뭄지역에 양수장, 저수지등 수리시설 설치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안정영농기반 구축
⑫신활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개발 중점지원, 농특산물, 향토자원,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교육등 소프트웨어 사업등
⑬개축지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촉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⑭살기좋은지역·도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등 지원

[붙임1]

10년도(/4)분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금배정요구서(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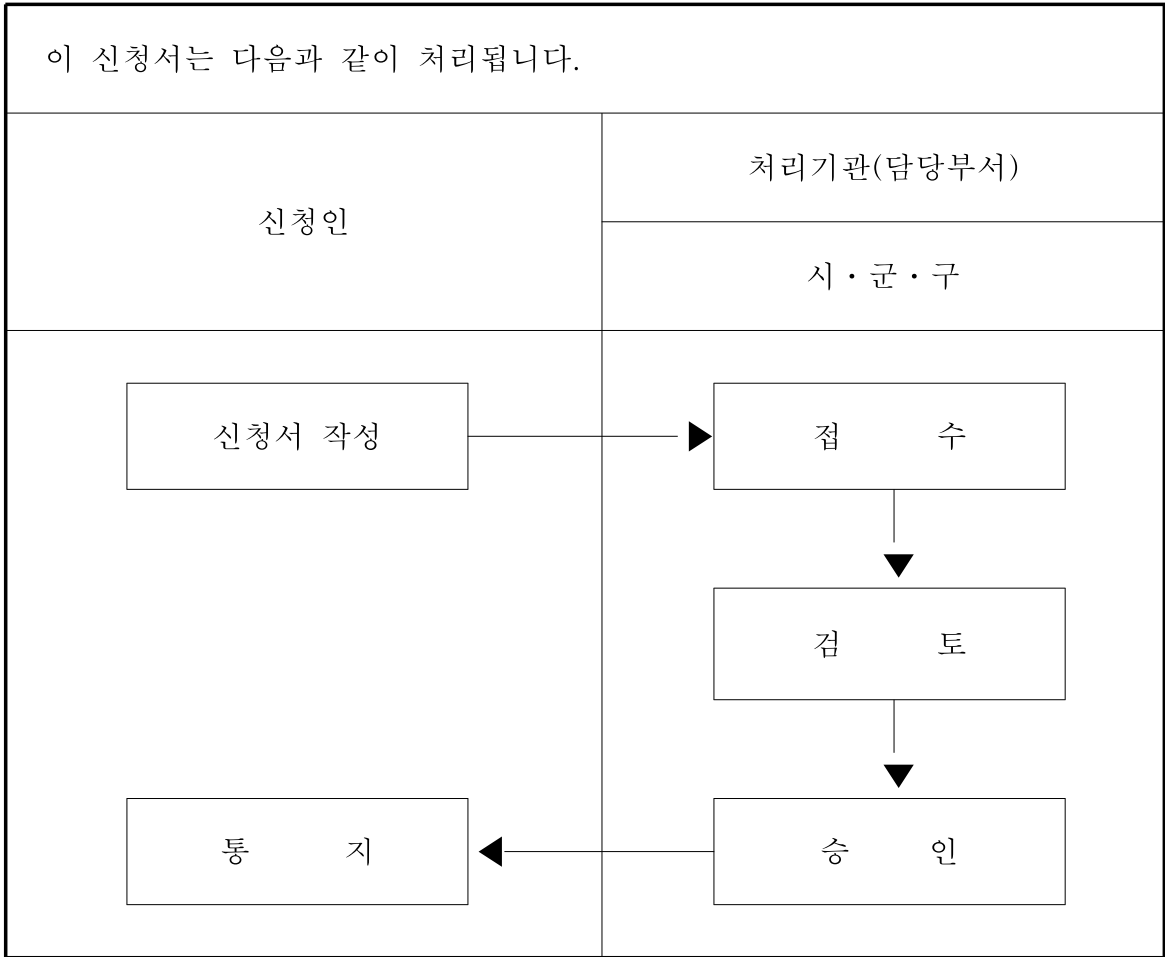
□ 도명 :

(금액: 천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A)	기 배 정 액 (B)	배 정 잔 액 (A-B)	금 회 요 구 (C)	누 계 (D=B+C)	잔 액 (A-D_
① 농촌마을종합개발						
② 신촌생태마을조성						
③ 어촌종합개발						
④ 소도읍육성						
⑤ 전원마을조성						
⑥ 주거환경개선						
⑦ 농촌생활환경정비						
⑧ 농촌농업생활용수						
⑨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⑩지표수보강개발						
⑪소규모용수개발						
⑫신활력지원	사업비					
	경 상					
	계					
⑬개축지구지원						
⑭살기좋은지역·도시만들기						
합계	사업비					
	경상비					
	계					

※ 해당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만 표시, 경상비는 신활력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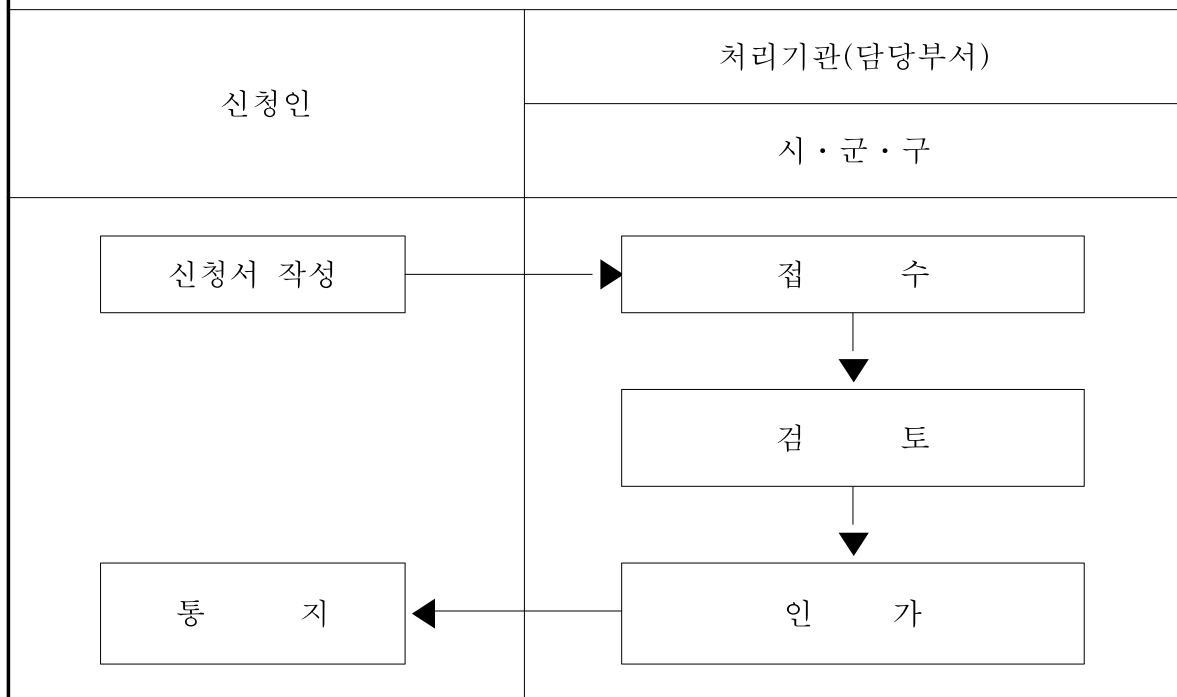
(뒤 쪽)



(뒷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설립인가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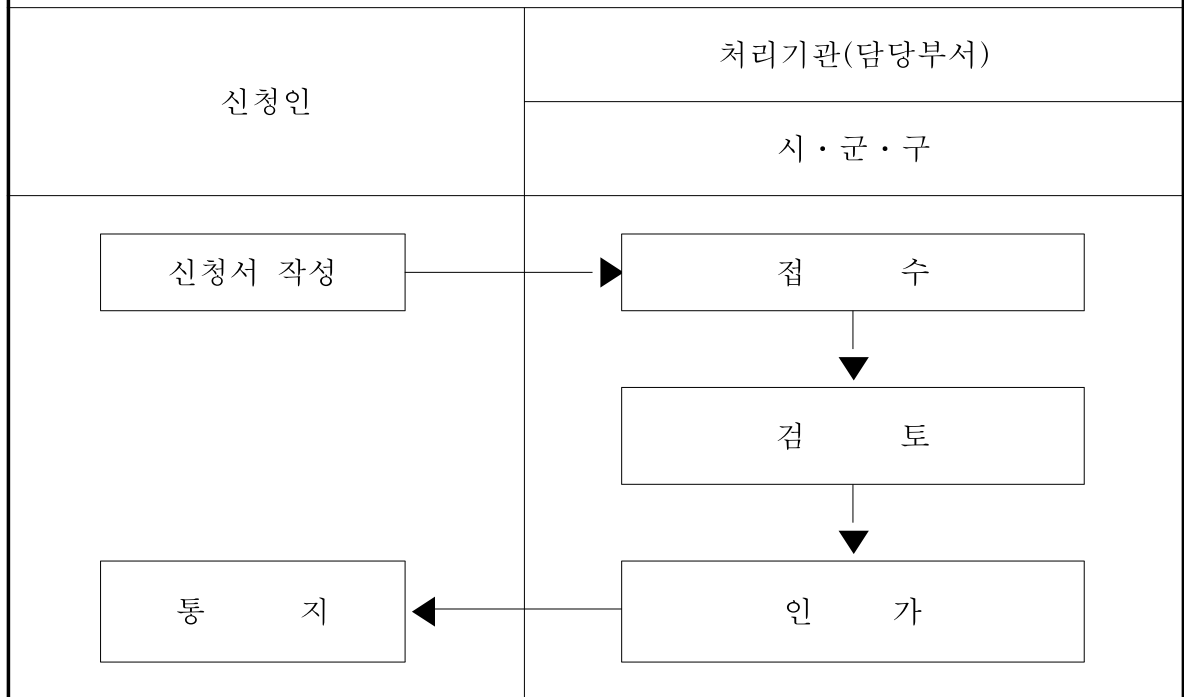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설립인가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3]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예시

마을정비사업(전원마을조성)제안서 예시									
사 업 명	○○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사업후보 지역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토지확보 ㎡, %)							
	토 지 이 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 도 지 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토 지 소 유 현황(㎡)	면 적	입주예정자	국유지	시·군유 지	기타				
사업개요	계획가구수	○○○가구(입주 예정자 확보 : 가구, %, 도시민: 가구, %)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시행자				사업예정기간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m³/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m³/일) - 기타(커뮤니티센터 등) :							
	주택 건축계획	- 마을정비조합에서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사업추진 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 . 제안자(대표) : (인) </div>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1.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 계획서 세부내용(예시) 2. 사전환경성 검토서 3. 문화재지표조사 등									

토지소유자 현황

합 계	관내거주 (해당면)	관외거주			국유지	시군 유지	비 고
		소 계	연 고	무연고			
명							
m ²							
()	()	()	()	()	()		

※ ()는 필지 수

3. 사업시행여건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 용도구역별 현황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도면과 대장을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 : m²

- 농업진흥지역밖 : m²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개발입지여건

○ 마을의 현황 및 특징 :

○ 입지여건 :

○ 접근성 :

토지확보 상황

○ 사업부지확보 상황

구 분	계 획 (A)	실 적						
		계 (B)	B/A	소유권 확보	매매계약 체결	토지신탁	국공유지	동의서 징구
필 지			%					
면적(m ²)			%					

※ 사업부지 확보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지구내 토지가격

구 분	토지가격(원/m ²)		비 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평 균			
전			
답			
임			
대			
.			

□ 입주예정자 모집 현황

○ 입주예정자 모집 상황

입주계획	총 계	입 주 예 정 자				입주희망자	
		소 계	토지소유	매매계약 체결(공증)	입주신청금 납부	심사에 의한 입주확정	단순 입주 신청서 제출

※ 입주예정자 리스트 및 입주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관 등 첨부

○ 입주예정자의 직업별, 연령별 특성

직업별	연령별	계	40세	40~49	50~59	60~69	70세
			미만				이상
합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공기업포함)							
의사							
변호사 등 법조계							
교수							
교사							
예술가							
농업							
기타							

* 퇴직하였더라도 주로 종사한 직업 기재

○ 입주예정자의 현 거주지

구 분	거 주 지 역				가구수
	도명	시군구	읍면	동	
합계					
도시					

* 동은 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4. 개발계획개요

사업시행자(사업주체)

○ 마을기반시설 :

○ 주택건축 :

사업시행주체 :

사업시행방법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계			
○ 주택용지			필지(평균 : m ² /필지)
○ 공공용지			
-			
○ 하수처리시설			
○			

사업내용(*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량은 시행주체별로 구분 표기)

○ 토지매입, 단지조성(택지, 농지, 시설별 세분), 도로·진입로 계획, 상수도, 하수처리, 주택건축, 분양·임대계획 등

농어촌경관관리,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내용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 명세서

6. 주택 건축 계획

- 주택건축 허가 및 건축공사 시기 등
- 주택건축 방법(일괄, 개별 등)

7. 마을공동체 형성, 교류 등

- 전원마을 입주민의 일거리 창출계획, 전원마을 입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계획,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8. 사업비 조달계획

9. 연계사업 추진계획

- *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사업비(국비, 지방비 등), 추진시기, 소관부처 등
-

10. 사업시행후 마을의 발전전망(파급기대효과 등)

11. 주민호응도

구 분	의 건	비 고
면장의견		
주민의견		
토지소유자 의견		
전문기관의견		
기타의견		

위치평면도 (1:25,000)

※ 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소유자		토지확보 상황
					주소	성명	
계							
1							
4							

※ 토지확보상황은 <1.입주자 본인소유, 2.입주자 매매계약체결, 3.토지신탁, 4.국유지, 시군유지로 구분

입주예정자 현황

번호	성명	현주소 (도,시군,읍면동)	연령	성별	직업	동반 예정 가족수	입주 준비 상황	입주동기

※ 입주준비상황은 <1.토지소유권 확보, 2.토지매매계약 체결, 3.입주신청금 납부자, 4.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 등이 심의를 하여 입주자로 확정된 자, 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편입용지 확보 및 입주자의 입주준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예정지 전경사진(5"x7")

<근거리>

<원거리>

※ 기타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첨부

[붙임4]

00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신청 세부내역 사업 설명자료

① 일반농산어촌지역 마을권역 종합개발(00시군 00지구)

○○시,도○○과 ○○담당 <성 명>(전화번호)
○○시,군○○과 ○○담당<성 명>(전화번호)

1. 요구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10요구	'10이후
○ 계	600	200	400	
- 국 비	300	100	320	
- 지 방 비	300	100	80	
- 자 부 담				

2. 요구사업 개요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지방비)
- '11년도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국비 %, 지방비 %)

- 지원대상자 :

- 사업기간 : 0000~0000년

- 주요사업내용
- * 핵심사업 위주로 기입

- 사업 추진상황(09년.5월 현재) :

* 예산집행 현황

'09예산(국고:백만원)				'10예산(국고: 백만원)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도이월(C)	집행률(%) (B/A)	당초예산(D)	예산현액(C+D)	1/4분기집행액

○ 사업비 산출내역

-

○ 사업효과

3. 도 담당자 검토의견(요약)

○

[붙임 5]

마을정비계획(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계획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범위: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개발여건	사업시행예정자	시장, 군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법인 등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전원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토지등기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기본구상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 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등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과약
부문별 계획/부분별 계획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로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수도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하수도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사업비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태양열, 태양광,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 지역융화 프로그램 계획,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예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운영관리계획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기타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관·권리명세서 등

[붙임 6]

마을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개발 여 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 문 별 계 획 및 세 부 설 계 도 서	경관계획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 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도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상 수 도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하 수 도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 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설계도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설계도
	주택 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 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 업 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 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 영 관 리 계 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 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수 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관·권리명세서 등	

①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 권재한 주무관 정병석	02-500-1911 02-500-1924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 ⇒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14.5%	13.0	13.5	14.0(P)	익년 2월	클러스터 참여 농기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09,800	45,850	51,250	64,600	133,900
보 조 용 자	54,900	23,000	25,700	32,350	66,800
지방비 자부담	54,900	22,850	25,550	32,250	66,8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클러스터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명칭,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반드시 사업단은 법인화 조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 역할 :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 클러스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시행주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원 배 제 >

- 부지대입비, 농어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농·축협 또는 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타 사업단 제품 포함)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비료, 종자, 농기계, 밭소 생산, 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종축등록 등
- 지역축제지원(단, 축제참여는 허용)
-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순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수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업 내용	세부 내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수산식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업 내용	세부 내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체험관, 공동연구개발센터, 전문판매장, 통합물류센터, 가공·유통시설 등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지원기간 : 기본 3년 지원,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1-2년)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 의무 자부담이외 추가 자부담을 할 경우 인센티브 평가시 가점 반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3년간 평균 25억원(국고)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단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선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격년으로 10개소 내외로 선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시·군·구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단

- 신청 사업단은 광역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20부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20부(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신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신청서 분량 : 200쪽 내외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시·도(지자체)

- 시·도는 자체 심사(지역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되 사업단별 우선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부서 심사,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클러스터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침 준수 실태 등을 심사
- 전문평가단 주관 평가(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 실시
-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전체 순위 및 품목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단 결정
- 사업단 선정결과 확정·통보
 - * 사업단 선정 및 사업내용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결과임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의 서면, 현장, 공개발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사업단

- 신청사업단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단은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및 지원 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및 시·도)에서 검토하여 승인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당해연도 사업비 가정산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가급적 당해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 계획을 수립추진(불용처리 지양)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자체, 기타 법인, 개인에 한하여 교부하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집행
 - 보조사업자(클러스터사업단)가 아닌 당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농·축협 등에서는 보조금집행 불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 여부를 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12.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소유로 하고 사용계약을 체결(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가능)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6. 성과측정단계

-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기업체의 장부상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1월까지 도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착수시 각 사업단의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사업단의 역량 및 추진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 1년차 말에 H/W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단은 H/W 예산지원 중단
- 지원종료 이후에도 사업단 지속관리를 통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속 시키고 신규사업단과 성과 공유
 - 컨설팅실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워크샵 참여 유도하여 사업단 지속 점검 및 관리
 - 신규사업단에게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정례화

《환 류》

- 사업 2·3년차 하반기 중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단에게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0년도에 선정계획
 - 신청시기, 방법 등은 사업신청과 동일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통보

3. 기타사항 : 보고 등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전월 15일
- 사업추진이 부실한 사업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광역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 청 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클러스터사업단	기관명	주소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명	전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學 研 官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대학 연구소 지자체				
신 청 내 역	사업명						
	사업유형	광역 클러스터 구축(안) 유형 참조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분		'09	'10	'11	계
		보조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p>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p>※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첨부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3개년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 추진 동기를 포함
- 사업내용
- 현재까지 활동 및 추진실적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표시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자체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클러스터 사업 이전과 사업시행후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되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I. 사업운영계획

- 분야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작성
- 연계지원 분야 및 추진 방안 : 타 농림사업 분야 등
- 사업추진일정

III. 재원조달계획

IV. 당해년도 사업계획

V. 중장기 발전계획

- 현재의 단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 단계별 구분(예) : 준비 → 도입 → 성장 → 도약(변화) → 안정

VI.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을 작성

[첨부2] 예시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광역클러스터 사업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들의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 1.
- 2.
- 3.

200 년 월 일

(지자체장)	_____	(인)	직인
(총괄책임자)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A)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B)	_____	(인)	직인

※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00월 국고보조금 자금 신청서

(○○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 추진 진도
			기배정	금회 배정	누계	
합 계						

※ 시·도지사는 사업진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광역클러스터 추진실적(년 현재)

00 시·도

(금액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합 계								

※ 단위사업까지 분리하여 작성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조치 결과)

[별지 제4호서식]

광역클러스터 이월 현황

○○시·도

(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김영준 사무관 이수열	02-500-1796 02-500-1802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춘천 닭갈비 명품화 사업, 고흥 유자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등)
-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 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기업 매출액	-	-	-	-	2010.1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일자리 창출	-	-	-	-	2010.1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향토산업육성사업	(8,616)	(17,920)	30,000 (27,152)	58,240 (10,668)	416,400
보 조	(4,308)	(8,960)	15,000 (13,576)	29,120 (5,334)	208,200
지방비	(4,308)	(8,960)	15,000 (13,576)	29,120 (5,334)	208,200

* () : 지역개발계정사업임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비법인)이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어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기술 개발 연구, 향토자원 권리화, 사업추진단 운영, 전담인력 비용, 전문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운영비용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APC·RPC 등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등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매년 평균 10억원(연차별 국고지원: 4(1년차), 5(2년차), 6(3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7월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전년도 9월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별도 통보)
- 평가지원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는 산·학·연 등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평가단을 구성, 서면·현장 평가 등을 추진
- 지원대상 확정 : 전전년도 12월

- 실무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확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검토·조정 및 확정
 - 향토산업육성 지원기구를 통한 전문가 검토 및 컨설팅 지원 실시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사업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 기본방침, 시설사업비 증액, 세부사업비의 30%이상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집행
- * '08년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0년도에 3년차 사업이 추진되는 계속사업은 '08년 지침 적용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 (서식 별도 통보)
 -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물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농촌활력사업본부 지원)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
- *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는 사업완료 시군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11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09.12월 기 마무리)
- '12년 사업대상 선정 관련 사항은 추후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안내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 향토산업육성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09년 신규지원 대상부터 「지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사업」 단위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됨
- '08년 선정된 3년차 계속사업은 완료시까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 가. 향토자원의 성격
 - 나. 산업화 가능성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II.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III.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IV. '11년도 사업추진계획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시·도, 시·군 :

사업명 :

○ ‘○○년도 지원대상 사업 ○차년도 추진상황

사업 추진상황 (계획대비 진행정도를 총괄 기재)	
계 획	진 행 정 도
○ 세부사항별 계획대비 추진상황 기재	○
○	○
○	○

세부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백만원)	
	계 획	집행실적
합 계		
○		
○		
○		

	사업전 (A)	현 재 (B)	증 감		비 고
			B-A	(%)	
○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 사항 기재
○ 매출액(백만원)					
○ 방문객수(명)					
○ 수출액(백만원)					
○ 가동률(%)					
○ 교육횟수(회)					
○ 교육인원(명)					

차기년도 계획

-
-

애로사항 및 건의

-
-

시·도 검토의견

-

※ 필요시 서식 변경 활용

[별지 제3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시·도, 시·군 :

사업명 :

사업의 성과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상과목표 및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사업전 (A)	현 재 (B)	증 감		비 고
			B-A	(%)	
○ 지원대상 종사자수(명)					증감사유, 특이사항
○ 지원대상 매출액(백만원)					기재
○ 방문객수(명)					
○ 지원대상 수출액(백만원)					
○ 지원대상 가동률(%)					
○ 지원대상 교육횟수(회)					
○ 지원대상 교육인원(명)					
○ 지역 향토산업체수(개)					
○ 지역 향토산업체 종사자수(명)					
○ 지역 총산업체수(명)					
○ 지역 총종사자수(명)					
○ 지역 제조업체수(명)					
○ 지역 제조업종사자수(명)					
○ 지역 서비스업체수(명)					
○ 지역 서비스업종사자수(명)					
○ 지적재산(특허, 지리적표시) 확보 건수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

시·도 검토의견
○

※ 필요시 서식 변경 활용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결과 평과 지표(예시)

□ 정성평가 지표

	배점	항목	배점	정성적 성과평가지표
사업수행	45	목표의 달성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목표는 달성되었나? ·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사용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는가?
		혁신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운영상의 혁신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체계가 확립되었는가? · 지역에 소재한 다른 기업체, 교육기관,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가 확립되었는가? ·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체계가 확립 되었는가?
사업성과	55	성과의 시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우수한가? · 5년후 시장에서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가? · 기술개발 또는 제품(상품)의 질에 대한 시장리드 효과는? ·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가?
		지역과급 효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체수가 증가하였는가? ·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증가하였는가? · 관련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는가? ·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였는가?

□ 정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적 성과 평가기준
향토산업활력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변화
	향토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수 변화
	향토산업체 종사자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의 종사자수 비중 변화
	향토산업체수 비중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제조업체수(서비스업체수)에서 차지하는 관련 향토산업체수 비중 변화
	지원대상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관련 향토산업체 매출액(방문객) 변화
지역산업활력	제조업체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제조업체 종사자수 변화
	서비스업 종사자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서비스업 종사자수 변화
	제조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제조업체수 변화
	서비스업체수	기준시점과 평가지점간의 서비스업체수 변화

100	수산물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	과장 강인구 사무관 박희수	02-500-2301 02-500-2313
소속기관/단체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물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물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이에 따라 '10년도 수산물식품거점단지 조성비율로 설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산물식품거점단지 조성 비율(%)	100	-	-	-	'11.2월	실적 / 계획*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3,044	19,868	17,518	79,414
보 조	-	1,522	9,734	8,759	39,707
지방비	-	1,522	9,737	8,359	37,604
자부담	-	-	397	400	2,103
○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센터 (부산)	-	-	1,000	2,300	-
- 보 조(50%)	-	-	500	1,150	-
- 지방비(50%)	-	-	500	1,150	-
○ 수산물종합유통 물류기반시설 (부안)	-	-	1,000	2,000	6,900
- 보 조(50%)	-	-	500	1,000	3,450
- 지방비(50%)	-	-	500	1,000	3,450
○ 고기능수산물식품 지원센터건립 (목포)	-	3,044	6,900	2,000	2,700
- 보 조(50%)	-	1,522	3,250	1,000	1,350
- 지방비(50%)	-	1,522	3,650	1,000	1,350
○ 수산물종합센터 조성(여수)	-	-	3,968	4,000	21,032
- 보 조(50%)	-	-	1,984	2,000	10,516
- 지방비(40%)	-	-	1,587	1,600	8,413
- 자부담(10%)	-	-	397	400	2,103
○ 염산항화도바다 매체타워시설 (영광)	-	-	1,000	2,000	7,000
- 보 조(50%)	-	-	500	1,000	3,500
- 지방비(50%)	-	-	500	1,000	3,500
○ 과메기산업화가공 단지조성(포항)	-	-	6,000	4,718	27,282
- 보 조(50%)	-	-	3,000	2,359	13,641
- 지방비(50%)	-	-	3,000	2,359	13,641
○ 풍천장어웰빙식품 센터 건립	-	-	-	500	14,500
- 보 조(50%)	-	-	-	250	7,250
- 지방비(50%)	-	-	-	250	7,25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어촌계, 어업인주식회사, 수협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증·개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수산물종합센터조성사업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 비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건축물	10년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가공시설,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과 산지 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 시설사업 수요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수산물가공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계획서

사업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사업위치	○			
시설 규모	○ 부지 m^2 , 연면적 m^2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m^2)			
사업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			
사업비 세부내용	○ 바다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 '10. 0월 : 실시설계 ○ '10. 0월 : 공사착공 ○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 '08. 0월 : 실시설계 ○ '09. 0월 : 공사착공 ○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명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m^2	

관련사진	
공사전	공사후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강인구 사무관 박희수	02-500-2301 02-500-2313
소속기관/단체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젓갈의 저장·가공시설, 체험, 젓갈거리조성으로 젓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2.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젓갈타운조성,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비율(%)	80	1,384 천톤	1,410 천톤	-	'11.2월	금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 전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00

※ '10년부터 측정방식을 생산량에서 전년 대비 비율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93,478	71,558	74,741	83,132	96,333
보 조	31,341	26,159	27,896	27,896	34,000
지방비	28,312	24,389	25,796	27,596	32,800
자부담	33,825	21,010	21,049	27,640	29,533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9,578	45,100	45,673	68,350	67,083
- 보 조(30%)	12,781	13,530	13,702	20,505	20,125
- 지방비(30%)	11,252	13,730	13,702	20,505	20,125
- 자부담(40%)	15,545	17,840	18,269	27,340	26,833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3,100	19,700	21,000	3,000	12,000
- 보 조(50%)	12,000	9,850	10,500	1,500	6,000
- 지방비(40%)	10,500	7,880	8,400	1,200	4,800
- 자부담(10%)	10,600	1,970	2,100	300	1,200
○ 굴박신장공장 시설	19,200	3,000	200	-	-
- 보 조(30%)	5,760	900	60	-	-
- 지방비(30%)	5,760	900	60	-	-
- 자부담(40%)	7,680	1,200	80	-	-
○ 젓갈타운조성	1,600	2,358	4,046	11,282	5,000
- 보 조(50%)	800	1,179	2,023	5,641	2,500
- 지방비(50%)	800	1,179	2,023	5,641	2,500
○ 전북진주산업센터	-	1,400	822	-	-
- 보 조(50%)	-	700	411	-	-
- 지방비(50%)	-	700	411	-	-
○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	-	3,000	-	7,500
- 보 조(40%)	-	-	1,200	-	3,000
- 지방비(40%)	-	-	1,200	-	3,000
- 자부담(20%)	-	-	600	-	1,500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	-	-	500	4,750
- 보 조(50%)	-	-	-	250	2,375
- 지방비(50%)	-	-	-	250	2,375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어업인 주식회사, 어업인, 법인체, 일반인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다. 젓갈타운조성

- 강원도(속초시), 전북도(부안군), 전남도(신안군) 지역 젓갈 가공시설 각 1개소

라.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경북도(영덕군) 1개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단, 건축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어업인후계자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 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관할 수협의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기타사항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농림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다. 젓갈타운조성

- 젓갈의 원료 주요 생산지인 연안 시군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라.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가공업체 종사자로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신규사업자 제외
 - 자담 능력이 있는 자
 - 동 순위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기관이 별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부지구입비 제외)
 -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시설 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공 기계류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냉동·냉장시설 신설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부지 구입비 제외) 수산용얼음제조시설이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냉동 5T/D, 냉장 500M/T)

다. 젓갈타운조성

- 젓갈타운 건축, 젓갈가공시설, 젓갈숙성·보관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라.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건축, 수산물 가공시설, 가공수산물 저장시설 및 기타 수산물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써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젓갈타운조성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수산물산지가공시설(60)	부산시(2), 경기도(3), 강원도(7), 충청도(3), 전북도(6), 전남도(20), 경북도(3), 경남도(8), 제주도(8)
수산물처리·저장시설(1)	강원도(1)
젓갈타운조성(3)	강원도(1), 전북도(1), 전남도(1)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1)	경북도(1)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신청인

- 동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 수산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매년 3월말까지)

시·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사업효과,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시·도 단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증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 시·도지사의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에 의거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물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비 ○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대비 당해연도 가공품 생산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 계획서

사업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위치	o		
시설 규모	o 부지 m^2 , 연면적 m^2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m^2)		
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비 세부내용	o 바닥공사 0원, 차양시설 0원 ...등		
사업추진 일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o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명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계	공사 규모	집행액
	m^2	

관련사진		관련사진	
공사전		공사후	

102	농산물유통개선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지원사업)
-----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조재호 주무관 정순일	02-500-1931 02-500-1944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유통조성팀	팀장 성장현 차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6
농협중앙회	연합마케팅팀	팀장 임규수 차장 서성권	02-2080-6251 02-2080-6227

I. 사업개요

1.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주요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2.0	14.0	17.0	20.0	2011.1	(APC 처리량 / 주요 원예 농산물 생산량)×100%

* 주요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07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이후
사업량(개소)	380	254	18	23	21	64
사업비(억원)	773,934	414,759	46,132	59,326	54,334	199,383
- 국 고	350,908	204,621	18,490	23,891	21,734	82,172
- 지방비	225,343	120,207	13,821	18,386	16,300	56,629
- 차부담	197,683	89,931	13,821	17,049	16,300	60,58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
 - 지방공사는 연간 총 매출액대비 농산물(쌀 제외) 취급비중이 60%이상인 조직
 - 일반 유통업체 등은 생산자단체에 출자, 사업비(자부담) 부담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여야 함)
- * 사업대상자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결과 하위 5% 이하 사업자(운영주체 포함) 및 거점APC(FTA기금) 설치 지역내 동일품목의 신규 A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 2011년부터는 원예농산물 매출액 30억 이상으로 상향 예정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38호, '08.7.23)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
- 기 지원한 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써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총 660㎡ 이상인 경우
- 지원제한기준
 - 보완·확장 APC는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류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 저온선별장, 차압식 예냉고, 저온저장고, 품질검사실, 전처리시설(저온공조),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전처리 및 단순가공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팔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

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3%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 단순가공시설은 잼, 과일쥬스, 가공시설 등을 말함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330㎡이상의 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최소 165㎡ 까지 가능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우선 지원함. 다만, 공정상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려는 수량이 물류표준화사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서 지원가능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07.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 신규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3)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5.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신규 : 국고 40%(광특회계),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사업만 지원가능(국고 30%, 지방비 70)
 -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며 지자체(시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증액가능
- 사업비에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사업기간 : 1~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 * 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조기 완료할 수 있는 경우 1년 사업으로 추진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시설은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기준사업비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매출규모,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물부

- 각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추진지침 시달(매년 1.31까지)

사업자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매년 2.15까지)
 - 회원농협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 2년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신청서를 제출
 -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첨부물과 함께 시·도에 제출(매년 3.15까지)
- 시·도지사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이 충족된 사업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매년 3.20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성진단일정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제출(매년 3.31까지)
 - * 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 협조로 유통공사에서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거점 APC권역내 원료확보 경합이 가능한 동일품목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지자체

- 시·도지사 조정점수(심사기준표 3-6항목)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매년 5.31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성진단 실시 후 사업성진단 보고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시도에 제출
- 사업성진단은 시·도에서 추천한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매년 5월 중순)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공동마케팅조직 및 최근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사업성 진단 없이 지원가능
* 10억원 미만 사업자중 농협조직의 보완사업자는 농협중앙회 자체 실시 가능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진단결과와 시·도지사 조정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매년 6월 초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신청자 현황, 신청자 심사기준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별 선정결과, 사업성진단보고서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① 공동마케팅조직, 시군 유통회사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③ 시도별 평가점수 상위순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의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유통회사, 농협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시설 설치 및 보완
 - * 출하물량 또는 매출액기준 50% 이상을 시군 유통회사, 농협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 기존 유타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려는 생산자단체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참여 조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농산물 자조금단체 가입 조직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결과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매년 6월 중순)
- 사업성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매년 6.30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확정예산 및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익년도 1월중)

사업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지자체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1월말)
 -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추가)선정시 사업성진단,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시도별 선정결과와 사업포기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 또는 자부담 추가된 사업계획·설계·사업부지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단,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 승인
결과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
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
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 조정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사업대상자 10%,
시군 20%, 시도 30%)하나,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상위 기관의 승인 필요(세부
사업계획의 대분류 항목 기준)

* 30%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
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 시설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일반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2011년부터는 검증장비 사용 의무화 예정

- 비파괴 선별기(당도, 선택, 중량)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의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장·군수)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공조냉동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술검토(진단, 감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 사항

- 시장·군수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됨

지 자 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지사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다음 해 3월말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 (3월)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2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평가》

가. 원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는 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2~10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은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 선정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350여명)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매년 11~12월경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10. 2. 15까지 시·군에 신청
- 시·군 : '10. 3. 15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 : '10. 3. 20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사업성진단(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성 진단 일정 수립 및 제출 : '10. 3. 31까지
- 사업성 진단 실시 : '10. 5월 중순까지

○ 시·도지사 조정접수 제출 : '10. 5월말까지

○ 우선순위 선정 제출 : '10. 6월초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10. 6월 중순

○ 사업비 조정·심의 : '10. 6월말까지

○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10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사업 신청자 현황 등의 서식은 [www. apcmanager.co.kr](http://www.apcmanager.co.kr)에 게시

<붙임 1>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 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5	4	3	2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유상표</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점</td> </tr> <tr> <td>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r> <tr> <td>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r> <tr> <td>시·군 공동브랜드 등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r> <tr> <td>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r> <tr> <td>고유상표 미개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E</td> </tr> </table> <p>* 시·군 공동브랜드 사용은 위탁사용권 획득시에만 인정</p>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시·군 공동브랜드 등 사용	C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D	고유상표 미개발	E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시·군 공동브랜드 등 사용	C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D																			
고유상표 미개발	E																			
1-2.공동계산률	20	16	12	8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계산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점</td> </tr> <tr> <td>매출액의 20%이상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r> <tr> <td>매출액의 15~20%미만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r> <tr> <td>매출액의 10~15%미만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r> <tr> <td>매출액의 10%미만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r> <tr> <td>공동계산제 미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E</td> </tr> </table>	공동계산제	평점	매출액의 20%이상 실시	A	매출액의 15~20%미만 실시	B	매출액의 10~15%미만 실시	C	매출액의 10%미만 실시	D	공동계산제 미실시	E		
공동계산제	평점																			
매출액의 20%이상 실시	A																			
매출액의 15~20%미만 실시	B																			
매출액의 10~15%미만 실시	C																			
매출액의 10%미만 실시	D																			
공동계산제 미실시	E																			
1-3.조직화 및 원물확보 실적	5	4	3	2	1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4,000-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5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4,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5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2,000-3,000톤 미만 E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2,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2.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5	4	3	2	1	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E : 평점 4점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계 책임경영	5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5					
							분사형 책임경영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2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1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5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E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1	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E : 평점 4점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10억원이상, 농협 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7~10억원 미만 농협 30~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3~7억원 미만 농협 10~3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3억원 미만 농협 2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4.자부담 능력	10	8	6	4	2	A :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70% 초과 C :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초과 D :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이하 E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사업계획의 적정성 (45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3% 이상 5% 미만 E : 투자효율성 3%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영업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0	8	6	4	2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 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 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설치불가	-5							
타인 명의	6									
3-3.입지조건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사업 물량확보 여건)	5	4	3	2	1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우수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E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E : 평점 4점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	12	9	6	3	【신규조직】 A: 매출액 100억 이상 공동계산 20% 이상(15점) B: 매출액 50~100억, 공동계산 10~20%미만(12) C: 매출액 30~50억, 공동계산 5~10% 미만(9) D: 매출액 10~30억, 공동계산 5% 미만(6) E: 매출액 10억 미만, 공동계산 미 실시(3) 【기존조직】 A: 평가결과 상위 25%이내(15) B: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12) C: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9) D: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6) E: 평가결과 상위 96~100% (3)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1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E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D,E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C,D,E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 B,C,D,E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5개소인 경우> A, B, C, D, E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6-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5%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30% D : 총 신청자 수의 20% E : 총 신청자 수의 15%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40% D : 총 신청자 수의 20% E : 총 신청자 수의 1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0% E : 총 신청자 수의 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 : - 기존 유희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5점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 <u>이하</u>가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 <u>이하</u>가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하위 5%(F등급)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조재호 사무관 박성기	02-500-1931 02-500-1941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가격안정 도모
 - 농축산물(청과, 축산) 매출액 증가율을 전년대비 3.0%이상 유지하고
 - 도매시장 경유시 보다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가격 인하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농축산물도매 매출액 증가율(%)	3.0	△4.0	4.7	3.0	'11. 2	· ('09매출액-'08매출액 /'08매출액)×100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11.2)
▪ 농가수취가격 제 고율(%)	18.0	20.5	16.2	18.0	'10. 2	· (유통센터-도매시장경 유/도매시장경유출하 시농가수취가격)×100 *“주요농산물유통실태” ('11.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합 계	530,300	6,727	5,000	7,000	10,440
- 보 조	455,400	6,727	5,000	7,000	
- 용 자	74,9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 지원요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여야 함
 - 부지는 20,000㎡, 건물은 10,0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필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물,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 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종합유통센터운영지침의 [별표] 참조)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파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신선도유지 및 상품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대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 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 선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축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①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 것
 - ②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③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 외 사용방지
 - ①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②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자금지원 배제(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입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한 것은 자금지원에 포함
 -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 기준
 - ① 단독추진

유 형	'95~'96 신청지역	'99~'02	'03년이후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용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 용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② 컨소시엄추진

- 각 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 사업 의무량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
- *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 년도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정하지 아니함
 - 총사업비 규모와 국가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원한도 결정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결정
 - 사업추진여부, 추진시기와 최적사업규모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 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 계속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임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주체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건설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안으로 제출
-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의 예산의결로 결정

시·도(지자체)

- 시·도 및 사업추진주체는 정부의 예산 심의와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 예산을 내시(전년도 12월까지)

- 신규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조치
 - 세부사업추진계획은 연차별계획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출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시·도(지자체)

(1) 계속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10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확정된 예산에 대해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예산배정계획)

시·도(지자체)

(1) 계속 사업

- 시·도는 2010년 1월 30일까지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2) 신규 사업

- 시·도는 2010년 1월 30일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는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건설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건설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11월)
- 점검항목
 - 정부자금 집행상황 및 건설 사업 추진실적

《제 재》

- 사업의무량 미이행시 :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가수취가격 제고율
 - 정의 :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농가수취가격 평균 증감율
 - 측정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유통실태'
- 농축산물 매출액 증가율
 - 정의 : 농축산물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 비교
 - 측정방법 : 종합유통센터 결산자료 조사
- 측정방법 : (당해년 농축산물 매출액 - 전년 농축산물 매출액) / 전년 농축산물 매출액 × 100

<만족도 조사>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태, 도·소매 실적,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종합유통센터 종사자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기존 유통센터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양산유통센터만 '11년까지 건설완료하고, 신규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완공으로 농산물도매시장(32개소)과 종합유통센터 (16개소)등 농산물 도매유통망이 완비되어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적음
 - ⇒ 정부의 자금 지원은 과잉투자로 인식될 수 있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인근 대형유통업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부처에 의견 제출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교육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3.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9년까지	2010년	2011년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9년까지	2010년	2011년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괄

(단위 : 백만원)

지목	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이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계 답 전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매입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물량	단가	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출하처 개발					
-거래처개발					
-전산시스템개발					
-운영시스템개발					
-기타 운영계획 등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강인구 사무관 이상영	02-500-2301 02-500-231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 '99.4.15 수산업법 개정으로 산지위판장에서의 강제상장 의무폐지에 따라 매년 위판율이 줄어들고 있어,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물량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10년도 산지위판장 취급물량을 986천톤으로 설정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산지위판장 취급 물량(천톤)	986	928	1,062	969	'11. 4월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48,060	23,072	31,535	31,948	34,685
보 조	17,204	10,103	13,714	14,122	15,020
지방비	12,590	9,110	11,241	11,730	14,217
자부담	18,266	3,859	6,580	6,096	5,448
○ 수산물 위판장	24,005	5,530	8,133	14,133	6,825
- 보 조(40%)	9,602	2,212	3,253	5,653	2,730
- 지방비(30%)	7,201	1,659	2,440	4,240	2,047
- 자부담(30%)	7,202	1,659	2,440	4,240	2,048
○ 수산물 직매장	22,127	4,400	5,200	2,193	1,200
- 보 조(30%)	6,638	1,320	1,560	658	360
- 지방비(20%)	4,425	880	1,040	439	240
- 자부담(50%)	11,064	2,200	2,600	1,096	600
○ 해양수산물복합공간	1,928	7,000	6,300	8,072	13,700
- 보 조(50%)	964	3,500	3,150	4,036	6,850
- 지방비(50%)	964	3,500	3,150	4,036	6,850
○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6,142	4,000	4,060	2,000
- 보 조(50%)	-	3,071	2,000	2,030	1,000
- 지방비(50%)	-	3,071	2,000	2,030	1,000
○ 임자전장포옛명성복원	-	-	1,000	-	-
- 보 조(50%)	-	-	500	-	-
- 지방비(50%)	-	-	500	-	-
○ 친환경김물류기지	-	-	600	450	-
- 보 조(50%)	-	-	300	225	-
- 지방비 또는 자담(50%)	-	-	300	225	-
○ 전복일류회상품개발기지	-	-	3,800	3,040	8,160
- 보 조(50%)	-	-	1,900	1,520	4,080
- 지방비(25%)	-	-	950	760	4,080
- 자부담(25%)	-	-	950	760	2,800
○ 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	-	400	-	-
- 보 조(50%)	-	-	200	-	-
- 지방비(30%)	-	-	120	-	-
- 자부담(20%)	-	-	80	-	-
○ 소형저온저장고설치	-	-	1,102	-	-
- 보 조(50%)	-	-	551	-	-
- 지방비(40%)	-	-	441	-	-
- 자부담(10%)	-	-	110	-	-
○ 수산물도소매장조성	-	-	1,000	-	-
- 보 조(30%)	-	-	300	-	-
- 지방비(30%)	-	-	300	-	-
- 자부담(40%)	-	-	400	-	-

II. 201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3. 지원대상

-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해양수산물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보조 50%, 지방비 50%
친환경김물류기지조성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과 붙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신청)한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수협 및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송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사업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보고(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비 ○ 건축물	5년 10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대비 당해연도 취급물량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비 배정시 반영

IV.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수요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말까지)토록 유도 및 작성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사업 계획서

사업명		
사업위치	o	
현시설 또는 사업규모	o 부지 m ² , 연면적 m ²	
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o	
사업내용	o	
사업추진 일정	신규 내역사업(예시) o '10. 0월 : 설시설계 o '10.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계속 내역사업(예시) o '08. 0월 : 설시설계 o '09. 0월 : 공사착공 o '10. 0월 : 준공 및 정산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o	
현재시설 전경사진	신축일 경우 '부지' 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집행액				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시행주체	
사업내용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m ²	

사진	
공사전	부지
공사후	건축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제 2권 식량·원예· 식품분야 [식량분야] 1. 영농규모화 사업			
○매입대상농지	○ 지원농지 중 76세 이상인 자가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농지 ○ 경영규모 5.0ha 미만의 자의 농지 ○ 전업·이농·은퇴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	<삭 제> <삭 제> <삭 제>	○ 76세 이상인 자도 지원농지는 매입하지 않음
○지원규모조정	* 우수경영체 15ha	<삭제>	○ 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의 농지는 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
○ 매도·임대 대상자	○ 주소지와 <u>동일 또는</u> <u>연접한</u> 시·군·구 지역의 농지를 매입·임차하고자 하는 자	○ 주소지와 <u>동일</u> 시·군·구 내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인 농지 소재지와 <u>연접한</u>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농지 지원 가능	○ 영농의 효율성과 집단화를 위하여 동일 주소지로 제한
○ 지원제외자	○ 공공목적으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동일 또는 연접한 도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 동일세대에서 논·밭을 중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신 설>	<삭 제> ○ 동일세대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수용 농지는 보상금으로 자력 확대하도록 예외 규정 삭제 ○ 중복 지원 방지 명확화
○ 매입가격	<신 설>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 매입가격 심사 강화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선정전 사전 통지 ○ 임차료 상한 조정 ○ 임차료 감면 기준 ○ 사 후 관 리 요건강화 ○ 사업비 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를 조사하여 결정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사전 통지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 중앙 행정 기관 에서 인정 한 재해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별 지원 적격 여부 등 사업추진실태 조사 결과 확인 후 보고(매분기말) -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 사 후 관 리 보 고 기 간 단축 : 10월 → 9월 ○ 70%는 배정하고 30%는 본사에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기준: 영농규모 확대계획 50%, 지역본부 요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전업농 등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 사업 추진 절차 강화 ○ 사 후 관 리 강 화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배정 기준 ○ 부채 농가들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 완화
<p>2. 경 영 회 생 지 원 농 지 매 입 사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농가들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 완화
<p><신 설></p> <p>○ 부채 규모 : 사업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포함)중 현금, 예·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30백만원 이상</p> <p>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의 부채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p> <p>*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p> <p>*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확인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 파악</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자산대비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기준	○ 자산대비 부채비율 40%이상인 농업경영체 -자산 : <u>소유 농지</u>	○ 자산대비 부채비율 40%이상인 농업경영체 -자산 : <u>농지, 임야 등 모든 부동산</u> *지방세 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 자산대비 부채비율 산정시 모든 자산 기준으로 개선
○ 지원제외자	○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 생활 등으로 주생계 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80%이상인 자	○ 농가세대원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 생활 등으로 주생계 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자	○ 농업소득이 많은 주업 농에 지원하기 위해 농외소득 비율 하향 조정
<p><신 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p> <p><신 설>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제외</p> <p>*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p>			
	○ 공사에 매도할 농지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황이 어려운 농가. 단, 잔여 부채보다 잔여 자산(부동산)이 많고 잔여부채는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는 지원가능	○ 소유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황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는 지원 가능 i)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ii)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부채를 농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한 경우	○ 매입규모 상한 인하에 따라 잔여 부채 인정요건 개선
○ 매입대상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u>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u> 축사, 버섯재배사	○ 매입대상 개선
○ 매입대상 제외농지	< 신 설 >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u>60,000원/m² 초과 농지</u>	○ 환매등을 고려하여 고가농지 매입제외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농지매입 방법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농지가격에 <u>합산하여 매입</u>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u>평가에서 제외</u>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과수목 관리 문제 및 환매의지 제고 등을 위해 과수목 매입 제외
○ 매입가격	○ 매입가격 -농지 : 감정평가액 -농업용시설 : 임대기간 만료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평액	○ 매입가격 : <u>다음의 금액 이내에서 공사와 지원신청자 간에 합의된 금액</u> -농지 : 감정평가액 -농업용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평액	○ 1배 한도 조정 등으로 가격 합의 추가
○ 환매가격	○ 농지 :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책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농지 :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책 금리(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	○ 정책 금리를 3%로 결정
○ 환매대금 분할납부 상환금리	○ 상환금리 : 환매당시 농협중앙회 여신규정에서 정한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	○ 상환금리 : 환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u>정책 금리(3%)</u> 적용	○ 조기 환매한 사람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 역차별 문제 해소
○ 지원한도액 기준및범위	○ 소유 농지의 매입금액이 해당 농가부채의 <u>1.2배</u>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도희망 규모까지만 매입 ※단, 매입 우선순위에 의한 필지별 매입으로 매입규모 상한 이상이 되는 동일 필지까지는 매입이 가능	○ 부채규모의 <u>1배 한도</u> 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u>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u> -다만, 필지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 지원신청자와 공사간에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입	○ 보다 많은 농가 지원을 위해 지원 한도액 인하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사업설명 및 확인서 징구	< 신 설 >	○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세부 지원 기준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	○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방지
○ 감정평가 대상자선정	○ 공사 지역본부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 지역본부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은행심의회에서 모든 농업경영체의 지원 적격성을 심의하여 본사에 추천	○ 최종 지원순위를 본사에서 결정
	< 신 설 >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 - 지역본부별로 추천된 지원적격자의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범위내 선정 ○ 감정평가법인 선정 - 허위 평가시 손해배상 책임 및 선정취소 등 이행각서 징구후 선정	○ 본사 업무 기능에 대한 구체적 명시
○ 감정평가	< 신 설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감정평가 대상자 순위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협약이 된 자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결과 검토: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 가격, 인근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 방법 개선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농업경영 실태평가 기준	○ 채무이행사항 <u>10+연체율×10점</u>	○ 채무이행사항 <u>연체율×0.3점(최고 10점) +이자 부담률 ×0.2점(최고 10점)</u> * <u>이자부담율=연간이자 부담액/연 농가소득 ×100</u>	○ 평가 기준 개선
7.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일부 변경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승인	○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8.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 사업시행절차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도) → 공고, 동의서징구 (사업시행자) → 사업 시행인가(시·도) → 고시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공고, 동의서징구(사업시행 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 → 고시	○ 농어촌정비법 개정 에 따라 절차 간소화
○ 용지매수 보상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용지매수·보상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 변경사례가 없도록 함	○ 수원공 및 평야부에 대한 용지매수·보상을 가급적 공사착공에 앞서 우선 추진	○ 용지매수·보상을 우선 시행하여 지장물 등으로 인한 용수로 노선 등 계획변경 억제
○ 사업 계획 고시	<신 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에 사업 계획을 등재하여 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09.2월)에 따라 규정 명문화, 용수로 노선 등 계획변경 억제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신품종개발 비용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품종당 500백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5품종까지 지원	○ 1품종당 300백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3품종까 지 지원	○ 신품종개발 품종수는 매년 증가하나 예산은 예년 수준이어서 향후 육종가당 품종 개발비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혜택 범위를 확대 지원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12.우수품종 증식사업 ○세부사업	<신설>	○ <u>우량묘 증식시설</u> (4개소)	○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품질 저가 우량묘를 공급
	<신설>	○ <u>천마종균 배양센터</u> (1개소)	○ 고품질 저가 천마 종균의 원활한 수급 을 위해 천마종균 배양센터 신설
	시·도	○ <u>시·도, 농협, 농업법인, 중요업체</u>	○ 민간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 확대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지원대상	<신설>	○ <u>1개 시·도의 화훼재배 면적 500ha 미만인 경우 2개 시·도 이상 사업 구역 공동 신청가능</u>	○ 국내 화훼재배규모 를 감안하고, 효율 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요건 확대
○ 화훼종묘 보급센터 -지원요건			
13.해외농업 개발지원 사업			
○ 용자조건	○ 금리 1.5%	○ 금리 2.0%	○ 2010년도 용자조건 조정기준에 의함
○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5~10년거치/3년상환	○ 3년거치/7년상환	(조정기준) -대출금리 : 농어업인 3%, 업체 등 4% -대출기간 : 장기 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원칙
○ 지원 자격 및 요건		○ (추가) 수급조절, 가격 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 업무 대행기관 포함) 의 사업 우선 지원	○ 정부자금은 공익 우선사업을 위해 공공의 목적 달성에 있으며, 이는 정책 목적과도 일치함
Ⅲ.표준프로 세스(SP)에 따른 담당 기관역할			
1.사업신청 단계 (한국농어촌 공사)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 개발자금 융자(대출) 신청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대상국 현지의 서류는 현지 공관의 확인 등 의견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대상국 현지의 서류는 현지 공관의 확인 등 의견을 첨부 하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 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제출서류의 검토애로 해소 및 원문서의 추가확인 가능 부수효과
<p>14. 농 기계 임대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브랜드, 조사료 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브랜드, 고품질쌀 브랜드, 들녘별경영체 육성, 조사료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쌀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하여 사업 효율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농협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농사용 농기계로 직접 임작업을 대행 하는 직영농협에는 벼농사용 부속작업기 등을 임대하여 농기계 은행사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이식·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와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위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용으로 벼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와 구입자금 융자 상한액 설정규격 보다 큰 규격(트랙터 91마력 이상, 승용이앙기 8조~10조, 콤바인 6조)은 구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기계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 ○ 벼농사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대상기종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는 벼농사용 임대농기계(본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기간도 단기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기계 사후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연간 20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 연간 30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상향조정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역실정에 맞게 800백만원~1,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 ○보관창고 설치기준 - 660㎡ 이상, 4~5억원 이내 - 825㎡ 이상, 6억원 이내	○신설(추가)사업 : 사업단가 1,200백만원(추가 1,000)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증설사업 : 사업단가 6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사후관리 장비 지원 ○보관창고 설치기준 -신설사업 : 보관창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총사업비의 50%이내 -증설사업 : 보관창고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사업과 증설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보관창고 규모는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사업신청	○임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임대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농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신청서로 변경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가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량내에서 사업 시·군·구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가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신청 시·군의 사업계획과 운영방향 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사업자 선정을 주관
○사업자 선정 기준	<신 설>	○사업자 선정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최초신청 여부 또는 그 동안의 지원액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선정시에는 임대사업 운영실적, 보관창고·운영조직 확보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시 반영	○사업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농기계임대사업장 명칭	<신 설>	○ 『농기계임대사업소』	○ 농기계 임대사업장 명칭이 지역별로 달라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필요 ○ 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명칭 중복으로 인한 농업인 혼란방지
○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기준	<신 설>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을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기계 안전사용 의식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농기계 사용법 교육을 통해 고장 방지
○ 임대농기계 표시 규격	○ 가로20cm×세로10cm, 아크릴판	○ 부착기계에 알맞은 규격, 아크릴판 또는 알루미늄판 등	○ 임대농기계 표시판을 기계에 알맞은 크기로 조절하여 기계와 어울리도록 개선
○ 사업계획서	<신 설>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계획	○ 창고부지 미확보로 사업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부지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시 반영
○ 사업정산 보고서	○ 정산실적 및 임대농기계 구입내역 등 제출	○ 정산실적만 제출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 임대농기계 구입 실적, 활용 실적 등이 포함되므로 농기계 정산실적 보고는 단순화시킴.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신 설>	○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10. 12.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매년 공문으로 시행하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요청을 사업지침에 포함하여 업무간소화
○ 사업수요 조사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계획서 제출	○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세부계획 불필요)	○ 세부사업계획은 사업신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간소화
15.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①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 ○ 지원 단가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계 설비 기준 ○ 사업계획서 작성주체 ○ 브랜드육성 사업 계획 내용 ○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단계 ○ 시설 성능 검사	○ 시설현대화 : 20억원 ○ 교육·홍보·컨설팅비 : 연 2억원 ○ RPC경영체 ○ 처리용량 5톤이상 ○ 시·군 <신 설> <신 설> <신 설>	○ 시설현대화 : 30억원 ○ 교육·홍보·컨설팅비 : 4년간 2억원 ○ RPC간 통합 등으로 규모화된 RPC경영체 -요건 : 원료곡 취급물량 15천톤이상(단, 한 사군에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초과 못함) ○ 기 지원된 대규모 브랜드 경영체는 기존라인에 대한 증설 지원 가능 -요건 :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 ○ 처리용량 7.5톤이상 ○ 브랜드경영체 -브랜드경영체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고품 질 브랜드쌀 중장기 육성계획(5개년)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대표브랜드 관리규약, 자금확보계획 방법 등 ○ 세부사업계획 지자체 승인 -농협 및 전문평가기관 에 사전협의 규정 ○ 시설설치 후 전문공공 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	○ 사업비 현실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 ○ RRPC규모화 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상향조정 ○ 지원 예산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상향 조정 ○ 브랜드경영체에 역할 부여 ○ 실제 사업을 추진 할 브랜드경영체로 계획작성 주체를 변경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보완 ○ 시설설치관련 농협 및 전문평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효율성 증대 ○ 사업효율성 증대
②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성과목표 ○ 지원 단가 ○ 사업대상자	○ 2013년까지 벼 유통량 대비 70% ○ 증설(위성)시설 5.5억원 <신 설>	○ 2019년까지 벼 유통량 대비 60% ○ 6.0억원 ○ 비RPC농협은 '11년부터 대상자에서 제외 -관내 RPC가 없는 곳은 지원	○ 목표 현실화 ○ 사업비 현실화 ○ RPC위주 지원으로 개편, 사전고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설 설치 기준 <p>1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비 지원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온통풍 건조인정 <p>○ 지원액 : 20백만원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곡 취급규모 33천톤 이상 RPC도 통합시설 지원가능 ○ 건조전용시설 설치 <p>○ 지원액 : 20백만원 이내('09년도 사업참여 들녘별경영체 : 1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RPC외에 규모가 큰 RPC도 지원가능토록 개정 ○ 사업비 상향조정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로 효율성 증대 도모 <p>○ '09년도 사업자에 대한 조직화·규모화를 유지·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시기 ○ 농 식품 부 의 보조 금 교부 <p>17. 농 작 물 병 해 충 방 제 지 원 사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매년9월 말 까지 신청)→시·도지사(매년10월말까지 추천) ○ 컨설팅비 지원(당년 3.15일까지), 시설·기계·장비지원(당년6.1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전년8월 말까지 신청)→시·도지사(전년9월 말까지 추천) ○ 컨설팅비 지원(당년 3.15일까지), 시설·기계·장비지원(당년8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 소요기간을 감안조정 ○ 사업비 조기배정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 및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배 농가에 피해가 많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조기 박멸로 국산과실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으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추가에 따름 *“과수폐원작업비지원 사업”이 '09년 폐지됨에 따라 내역사업인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을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가. 병 해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방제비 -방제대상 : 흰잎마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배 농가의 과수 가지검은 마름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경기, 강원지역으로 제한) 가. 병해충방제비 ○ 대상병해충 :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으로 “과수 가지검은마름병방제 사업” 추가에 따라 지원자격 및 요건 명시 ○ 기후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 돌발병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방제비	줄무늬잎마름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도열병, 키다리병,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해충	<u>등으로 인해 발생한 돌발 병해충</u> ----- ----- ----- -----.	해충 추가
○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손실보상금 ○ 지원단가	○ 실제 손실규모 조사를 통하여 지원단가 별도 산출	○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준」의 손실보상액 산출방법 (농림수산식품고시제 2009-58호, '09.6.30)을 적용하여 산출	○ “외래병해충 공적 방제 손실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기준의 구체적인 제시
[원예·식품 분야]			
18.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 지원조건	○ 물류기기구입지원 보조율 50% ○ 물류기기공동이용 보조율 60%	○ 물류기기구입지원 보조율 40% ○ 물류기기공동이용 보조율 50%	○ 예산규모,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조정
19.농산물표준 규격 공동 출하사업			
II-1.사업대상자	<신 설>	○ 사업신청액이 30만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산지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화 유도
○ 사업대상자 범위		○ 기타 출하처 중 출하 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사업량으로 인정	○ 판매방법의 다양화로 택배·인터넷 등 출하 물량의 사업 인정범위 확대
II-2.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 업체 출하물량만 사업량 으로 인정	○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의 판매가격이 차별화 되므로 산지조직의 현실여건 반영	○ 최근 3년 표준규격 출하율 90%이상 품목에 대한 지원 제외
○ 공동선별비 지원	○ 전 조직원의 출하물량 으로 하되, <u>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인정</u>	○ '09년 지원제외 품목에 <u>감귤,방울토마토,풋고추, 감자,참다래,토마토, 단감(7품목) 추가</u>	○ 표준규격출하율 향상으로 제외
○ 공동계산의 범위는 전 조직원의 출하물량임	○ 사과,배,포도,팽이버섯, 곡류,두류,축산물,임산물, 콩나물,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수박,마른고추,부추 (4품목)	
II-3.지원대상 품목	○ 사과,배,포도,팽이버섯, 곡류,두류,축산물,임산물, 콩나물,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u>수박,마른고추(2품목)</u>	
○ 포장재비 지원제외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수박,마른고추,부추 (4품목)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u>수박,마른고추(2품목)</u>	
II-5.지원형태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수박,마른고추,부추 (4품목)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u>수박,마른고추(2품목)</u>	
○ 포장재비 지원	○ 포장재비 10% 지원품목	○ 표준규격출하율 80%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10% 지원 품목 -감귤 등 22 품목 ○ 신 설	-메론 등 16품목(감귤 등 신규 지원제외 품목 반영) ○ 신선편이농산물은 품목에 상관없이 10% 지원	이상인 품목은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90%이상인 품목은 지원제외 ○ 품목이 복잡·다양하여 품목 구분없이 단순화 함	
II-5.지원형태 ○ 공동선별비 지원	○ 수탁선별 40%, 매취선별 30% 지원 ○ 가산지원 조정 -공동마케팅조직 10% 가산지원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한하여 지원비율을 20% 가산하여 지원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 가산지원 조정 -삭 제 -지원비율을 30% 가산하여 지원하되, 당도 선별·표시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부담자에게 지원	○ 사업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 사업조건이 동일하므로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지원비율 적용, 당도 표시 시범사업의 정착을 위해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실제 비용부담자에게 보조금 지급
II-5.지원형태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지원비율 조정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시 골판지상자 50% 그물망·PE·PP대 70%지원	○ 지원비율 조정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포장재 종류에 상관없이 50%지원	○ 포장화 진전으로 지원비율을 축소하되, 하역기계화 등의 축진을 위하여 골판지상자 지원비율은 현행 유지
III-3. 사업 시행단계 ○ 공동선별비 지원	<신 설>	○ 수출농산물은 지원을 제외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PB농산물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지원요건을 명확화
○ 사업대상자 의무	<신 설>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준수	○ 속(소)포장화 증가에 따른 표시방법 명시
	<신 설>	○ 산물 출하품은 날개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준수	○ 다단식목재상자 등의 출하농산물 표시방법 명시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생산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으로 표시	○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을 표시하되, 각종 인증농산물은 관련법에 따른 생산자표시의 병기 가능	○ 각종 인증농산물은 관련법에 따른 생산자 표시 필요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통한 규격출하시 산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	○ 삭 제	○ 산물출하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개선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2.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II.201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사업대상자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신 설>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공동마케팅조직, 산지 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 일반조직, APC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공영도매시장(농안법 17조에 명시된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 또는 市)	-산지유통일반조직을 사업대상자에 추가 -소비지 저온시설 부분 추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신 설>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대표성이 있고 저온 유통과급효과가 큰 공영도매시장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계획 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사업부문 추가
3.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예냉설비(예냉실, 예 냉기),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신 설>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예냉설비(예냉실, 예 냉기),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 원예농산물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기존 경매장의 저온 경매장으로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	-중점지원품목을 명시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소비지 저온시설 부분 추가
	<신 설>	마) 기 타(홍보 및 교육) ○저온유통 기술보급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홍보	-홍보 및 교육사업 추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4.지원형태	<신 설>	○ 소비지 저온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소비지 저온시설 부문 추가
Ⅲ.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신 설>	신청조직 ○ 소비지 저온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비지 저온시설 사업자 신청서류 명시
1.사업신청 단계		나) 소비지 저온시설 - 시범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시범사업자의 선정 절차 명시
2.사업자 선정 단계	<신 설>		
23.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			
○사업명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	○계열화사업 대상에 약용작물을 추가하여 약용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 도모
Ⅱ.201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계약재배참여농가 -4년근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계약재배참여농가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계약재배참여농가에 약용작물 재배농가 포함
2.지원자격 및 요건			
3.지원대상	○인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지원대상에 약용작물 포함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에 해당농협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1호 서식)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에 해당 농협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1호 서식)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 서식 제공
1.사업신청 단계			
5.이행점검 단계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관리>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관리>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충당금 계정의 사용 용도를 최소한의 경비외에 판매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25.소비자유통 활성화사업</p> <p>○사업대상자</p> <p>○지원한도액 및 배정기준</p> <p>26.농식품소비 산지상생 협력사업</p> <p>II.2010사업 시행주요 내용</p> <p><소비지·산 지협력></p> <p>2.지원자격 및 요건</p>	<p>다음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정성 분석비 등 행정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추진 및 사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p><추 가></p> <p>○ 친환경농산물, 파렛트 브랜드농산물 우수 거래자 50%이내서 추가 지원 가능</p> <p>○ 유통업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매장을 운영 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소매 유통업체. 또는, 공동 구매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소매유통업체 연합체 (조합, 체인본부, 자회사 포함)</p> <p>○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 업체 및 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p>	<p>다음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한의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 · 인삼계열화사업 수매 물의 판매와 관련된 홍보비, 판매촉진비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p>○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p> <p>○ 추가지원 가능자에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거래 실적 추가</p> <p>○ 유통업체 : 농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고 농 수산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소매유통업체. 또는,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 소매 유통업체 연합체(조합, 체인본부, 자회사 포함)</p> <p>○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p>	<p>활성화에 집중사용 토록 하여 사업대상 조직의 경쟁력 강화</p> <p>○ '09년부터 도입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결제 자금 지원</p> <p>○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확대 추진</p> <p>○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유통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업체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도모</p> <p>○ 실수요자인 식품업체가 산지 조직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전처리 업체 제외</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5.사업의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유통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급금 지급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급금 지급 *직거래매입의무 기준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추가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유통업체 : 지원액의 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급금 지급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급금 지급 *직거래매입의무 기준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추가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식품·외식업체 등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매입 의무액 기준 완화(125%→25)
27.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II.2010사업 시행주요 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신규사업체가 지역 통합브랜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예 작물은 6월말까지 법인 설립등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신규사업체가 지역 통합브랜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예 작물은 2월말까지 법인설립등록 완료 ○ '11년 신규사업 신청자는 사업 발표평가(9월말) 전까지 법인 설립 완료 ○ '12년 이후 신규사업 신청자는 법인설립 완료후 사업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및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예방
5. 지원 형태 및 사업의무량 -조직운영 및마케팅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원한도 명시 없음. ○ 원료확보, 개별 생산 시설, 기타 경상경비 : 기금용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 한도는 10억원 기준 ○ 생산기반 및 종합처리 시설 : 사업비 지원 한도는 85억원 기준 ○ '10년 선정사업자 부터는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용자사업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 지원 한도 기준액 명백히 설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차별 사업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원예브랜드 사업은 책임성 강화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사업을 유사 사업으로 통합 자금 활용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사업추진 유도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2차년도 집중투자 여건 마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 기관 역할</p> <p>1. 사업신청 단계 지방자치단체</p> <p>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 기관역할원 자격 및 요건</p> <p>2.사업자 선정 단계</p> <p>3.'10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p> <p>-시·도 및 시·군</p> <p>-브랜드경영체</p> <p>6.성과측정 단계</p> <p>-성과지표 측정</p>	<p>○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쳐 대상경영체(원예작물은 1개소로 한정)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09년 3월말까지)</p> <p>○신설법인은 '09. 6월말까지 참여조직간 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에 포함</p> <p>○매년 브랜드 경영체의 전년도 경영 성과를 평가 하여 성과지표 측정</p> <p>-평가일정 : 연차 평가 시행시 성과 측정병행 (매년 3월)</p>	<p>○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여·부를 판단 적격자는 농식품부에 제출('10년3월말까지)</p> <p>○'11년 사업신청자는 참여조직간 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하여 '10년 발표평가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에 포함</p> <p>○도,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발주 가능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p> <p>○도, 시군에서는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조례 등) 지원방안은 마련</p> <p>○사업계획 수립시 일괄발주 가능한 사업은 일괄발주 계획 수립</p> <p>○브랜드경영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p> <p>○매년 사업성과 지표 측정시 부진 사업(기성고 및 집행을 70%미만)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위해 페널티 및 인센티브시행</p>	<p>○시·도 단수 추천은 사업적정여·부보다는 지역안배로 사업선정추진과정의 문제사전예방</p> <p>○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된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지연을 사전예방</p> <p>○연차 지원에 따라 예산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신속한 사업진행 및 사업목적 달성</p> <p>○연차 지원에 따라 예산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신속한 사업진행 및 사업목적 달성</p> <p>○지방자치단체의 원예브랜드사업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p> <p>○사업추진중 또는 후 자금경색에 의한 사업추진 어려움 해소</p> <p>○연례적인 사업추진 부진탈피와 사업목적 조기 달성</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8.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방식 ○사업 지원 대상 자 선정 방법 ○난방기사후 관리	- - ○단지 증·개축은 2개년 지원 방식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제품 장려	○양액 재활용 시설 추가 ○전기 냉·난방기 추가 ○당해년도 지원 방식 으로 변경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차 대상자 선정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제품 사용	○양액 재활용을 통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방지 및 물·비료 재사용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전기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이를 개선함. ○증·개축사업을 당해 연도에 완료하여 농가의 생산시설로 이용토록하고 예산 집행 효율 향상을 위함 ○지원대상 확정기간 축소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토록 함 ○보증 제품 의무사용 으로 검증된 장비구매 및 사후관리를 보장 토록 함
29.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대상 농가 ○사업 내용 ○고 효율 난방기 지원 대상	○채소·화훼 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및 고효율 난방기 지원 ○전기·경유·중유·석탄 난방기 등	○과수 농가 추가 ○지열난방설비 및 목재 펠릿 난방기 추가 ○경유·등유 난방기 *전기·석탄·중유 난방기 제외	○과수농가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시설원예용 신재생 에너지 신규 보급 ○시설원예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난방기 보급은 점차 축소 ○전기 난방기의 경우 전기 생산시 화석연료가 이미 사용된 후 2차 에너지원인 전기를 사용하므로, 국가 전체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 사후 관리 ○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대상 다점보온 커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제품 장려 ○ 5겹 이상인 다점보온 커튼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제품 사용 의무화 ○ 5겹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짐 ○ 석탄증유는 수요가 적고, 환경에 부담이 큼 ○ 보증 제품 의무사용으로 검증된 장비구매 및 사후관리를 보장 ○ 시설원예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
<p>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업체 지원대상 ○ 사업자 선정 ○ 식품업체 시설지원 성과지표 ○ 지원기준 ○ 대출기한 ○ 소비자유통 시설활성화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인증업체 - ○ 지원업체의 매년도 매출액 증가율(%)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용자 70%(자부담 30)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5년 거치 10년 상환 ○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지역 ○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GMP 등 인증, 개·보수 및 농식품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 생산자 융·복합업체 및 CO₂ 경감량이 가장 큰 업체 경우 선정시 우선 순위 부여 ○ 식품업체의 지원 개소수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용자 80%(자부담 20)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3년 거치 7년 상환 ○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대상 확대 -생산자 융·복합사업과의 연계 및 녹색 시설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 증대 -시설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의 파악이 장기간 소요 및 기준설정 불분명 -타분야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조정 " -상권 형성된 10만 이상지역도 충분한 경쟁력 확보 가능 *133개 시군중 20만 이상 지역은 41개 (19%) -세부사업 명칭을 포괄적 사업대상에 맞도록 변경 - 지원자격 및 출자 범위를 완화하여
<p>34.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원 자격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및 출자 범위를 완화하여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요건	- 출자범위 25%	운영하거나, 계획중인 업체 - 출자범위 10%	사업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대상자선정 기준	○영업개시일 2년 이상 및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업체	○참여 희망업체 및 운영 중인 용·복합형 식품업체	- 대상자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대상	○생산자 및 식품제조업체	○생산자, 식품제조업체 및 지자체	- 지자체의 경우 사업 참여 및 업무협력시 참여 확대
○지원규모 및 조건	○업체당 50억원	○총사업비의 80%	-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
35.농산물우수 관리(GAP) 제도 운영 사업			
○사업대상자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체 -지자체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체 또는 <u>지정받은 사업체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체</u> -지자체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작목반 <삭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노후시설·기계·장비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 -GAP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생산 유통 시설 에 도 GAP시설보완사업 지원('09.10.6장 관 방침) - 제도활성화를 위해 진입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36.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Ⅲ. 표준프로	○시장·군수는 적정한 설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추가신설) ○시장·군수는 국내 및 해외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천일염산업의 민간 투자 촉진 유도 및 공정기간 단축 (중전 지방자치단체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2)건축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설계 나.시공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3.지원대상자 37.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II. 201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2. 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종류) 5.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 조건) III. 담당기관 역할 1.사업신청단계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건설 법령상 설계 유자격자 선정 및 설계서 이용이 원칙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천일염 작목반, 천일염 일반단체 -천일염 생산을 위해 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 선정원칙 ○기타 : 시설포도, 시설 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 <신 설>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신 설>	체결한 천일염법인 사업자에게는 투자협약 기업들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추가 신설) ○임차 생산자의 경우 임대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선정 가능 ○기타 : 시설포도, 시설 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 *기타 시설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등은 20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단, 천재지변 등 과수 발전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계약대행인 경우 6개월 소요) ○염전생산시설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 생산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시설과채류 등은 ‘11년 지원 제외 예시 ○기획재정부 협의결과에 따라 장기 용자조건을 조정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 경우 예외 조항 신설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2 사업자 선정 단계</p> <p>4.보조금 배정 단계</p>	<p><시·군> -<신 설></p> <p><신 설></p> <p>[선정 순위] ⑥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p> <p>⑩ <신 설></p> <p><요건 확인> <신 설></p> <p><시·도(시·군)> <신 설></p>	<p>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시·군> -과수발전협의회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예)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시·군 담당자는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p> <p>[선정 순위] ⑥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⑩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p> <p><요건 확인> ○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G4C,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 <시·도(시·군)>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p>	<p>○사업관련이 있는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지원자격이 적절하지 않는 농가는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지원 제외 규정 신설</p> <p>○'11년부터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p> <p>○미개시 사유가 과수발전협의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p> <p>○국내 육성 우량품종 보급 확대 도모</p> <p>○농림수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건 확인 명문화</p> <p>○보조금 신청, 집행 상황 등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붙임> 지원 단가</p> <p>38. 과수생산 단지기반 조성사업 II. 201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p> <p>5. 지원형태 및 사업 의 무 량 (지원조건)</p> <p>39.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설지원 사업 I. 사업개요</p> <p>II. 2010년 사업 시행주요내용</p> <p>2. 지원 자격 및 요건</p> <p>3. 지원대상</p>	<p><세부사업별 지원단가></p> <p>1.6. <신 설></p> <p>3.3. <신 설></p> <p>14.3. <신 설></p> <p>○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u>50%</u>, 2년차 <u>50%</u>)</p> <p><목적></p> <p>○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p> <p>○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1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2 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p> <p><신 설></p> <p>(1) 지원대상 사업규모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p>	<p>수 산 정 보 시 스템 (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p> <p><세부사업별 지원단가></p> <p>1.6. 지중관수 시설</p> <p>3.3. 농산물운반기(동력)</p> <p>14.3. GAP</p> <p>○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u>30%</u>, 2년차 <u>70%</u>)</p> <p><목적></p> <p>○선별·저장·<u>가공시설</u>· 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p> <p>○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 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 주체를 확보한 경우</p> <p>○<u>추가·보완사업은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u></p> <p>(1) 지원대상 사업규모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p>	<p>○세부사업 추가</p> <p>○연도별 지원비율 조 정을 통한 집행 및 사업 효율성 도모</p> <p>○사업내용을 명료화</p> <p>○선별 및 원료조달 물량을 확대</p> <p>○보완사업은 부지확보가 필수 사항임</p> <p>○선별물량 확대</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p>	<p>5천톤~1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 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 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으로 변경 가능 <참고사항> <신 설>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1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부지 매입비 제외</p>	<p>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u>가공시설</u>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 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u>가공시설</u>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u>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u>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으로 변경 가능 <참고사항>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 매입비 제외)</p>	<p>○ 거점APC 운영활성화를 위한 필수 장비 지원을 명문화 ○ 사업내용을 명료화 ○ 일부 품목의 경우 저온저장고가 330m² 이하로 필요한 경우 인정 ○ GAP관리시설 기준 요건을 명문화 ○ 자구 수정</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5. 지원 형태 및 사업의 무량 (지원조건)</p> <p>III.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p>	<p>○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한·미 FTA 비준 이후 신규사업자부터는 지원비율 변경(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되 총 사업비가 증가시 지방비 추가 부담은 가능</p> <p>○ 사업기간 : 3년 -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p> <p><시군> ○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신청</p> <p><시도지사 고려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p>	<p>○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되 총 사업비 증가시 지방비 추가 부담은 가능</p> <p>-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p> <p>○ 사업기간 - 신규사업 : 3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단, '11년 신규사업부터는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사업 조기 시공 및 완료할 수 있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1년차 50%, 2년차 50) - 추가·보완사업 : 1년</p> <p><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신청</p> <p><시도지사 고려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대형산지유통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p>	<p>○ 일반유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비율 조정</p> <p>○ 공공유형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p> <p>○ 신규 및 보완사업의 사업기간을 각각 별도로 적용</p> <p>○ 추가·보완사업 대상을 명료화</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 사업자선정 단계	단체 추천조직 등 마. 사업계획 최종 선정 <신 설>	전문조직·자조금 조성 단체 추천조직 등 마. 사업계획 최종 선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사업포기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 기준 신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성능검사> ○선별시설 :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의 형식 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성능검사> ○선별시설 :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라 종합검정으로 수정하고, 전문기관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추가, 성능검사를 성능시험으로 용어 명료화
5. 이행 점검 단계	- (설치 전) 형식검사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시·도(시·군)> <신 설>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시·도(시·군)>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부지와 건물, 장비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또는 운영조례 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함		○거점APC 운영조례 제정 명문화 및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이 상이한 경우 향후 분쟁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별지심사·평가기준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 심사·평가 기준> ※ 가감점 부여 ①사업성 진단결과 반영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 심사·평가 기준> ※ 가감점 부여 ①사업성 진단결과 반영	○가감점 점수 조정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41. 과원영농 규모화 사업 II. 2009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p> <p>3. 지원 대상 농지</p>	<p>현황(-3~3점 부여) ③ <신 설> * <신 설> ○서면, 공개발표평가 기준 동일</p> <p>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추가 신설> *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u>이장</u> 등의 확인</p> <p>(2) 지원 제외자 ○<u>기존 경작지나 지원 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 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 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u></p> <p>가. 과원매매사업 (3) 매입 제외과원중 -<u>전매동의 사유에 해당 하는 다음의 과원</u> • <u>세대주 또는 동거</u></p>	<p>현황(-2~2점 부여) ③<u>자치단체 자율통합 시 군소재 사업신청자 : 2점</u> * <u>상기 가감점은 서면평가 기준에만 적용</u>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심사·평가기준 별도 기준 신설</p> <p>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u>과원 경영규모가 0.1ha 이상인 농업인</u>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u>이장</u>등의 확인</p> <p>(2) 지원 제외자 ○<u>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 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 규모확대를 위하여 주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u></p> <p>가. 과원매매사업 3) 매입 제외과원 <<u>삭 제</u>></p>	<p>및 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자체 가점 추가하고 서면평가와 공개발표기준을 각각 별도로 적용</p> <p>○1.5ha 이상 과수전업농 24천호 육성,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50%를 담당하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달성하기 위해 최소경영규모 설정 필요(단, 개정 시행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p> <p>○(기존) 경작지와 지원 대상자 주소지들 다 지원 → (변경)지원 대상자 주소지 및 연접 시·군으로 한정</p> <p>○농촌공사의 재 매입 기준 축소 -영농 종사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p>

구 분	현 행 (2009)	변 경 (2010)	변 경 사 유
<p>6. 지원한도액 및 기준 및 방법</p> <p>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 분야]</p> <p>43.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p> <p>○ 사업대상자 평가표 점수 조정</p> <p>○ 사업비집행에 있어 작물의</p>	<p><u>가족의 질병·사고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u> • <u>파산등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u></p> <p>○ 각종 개별법에 의한개발 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u>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 시행규정</u>」 제5조 제2항제1호부터 제12호</p> <p>나. 과원임대차사업 (3) 임차 제외과원</p> <p>○ 각종 개별법에 의한개발 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u>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 시행규정</u>」 제5조 제2항제1호부터 제12호 까지의 내용과 같음)</p> <p>나. 지원방법 (2) 과원임대차사업</p> <p>○ 임차계약의 체결 <별표 신설></p> <p>○ 천적(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10점, 실천의지 20점 등)</p> <p>○ 미생물농약은 1~5순위 (①무농약인증이상 천적 활용 해충방제농가 등)로 되어있음</p> <p>○ 사업비는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가능(작물의</p>	<p>○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과원(「<u>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u>」 제19조의7제2항 에 따른 농지)</p> <p>나. 과원임대차사업 (3) 임차 제외과원</p> <p>○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 지내의 과원(「<u>한국농 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u>」 제19조 의7제2항에 따른 농지)</p> <p>나. 지원방법 (2) 과원임대차사업</p> <p>○ 임차계약의 체결 *<u>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u></p> <p>○ 천적(친환경농산물인증 여부 20점, 실천의지 10점 등)</p> <p>○ 미생물농약도 천적사업 대상 평가표 방식 활용</p> <p>○ 사업비는 회계연도(1. 1~12.31)기준으로 해</p>	<p>농어촌공사와 농업 인간의 분쟁 최소화 * 허위 진단서 발급 등으로 농지를 불 법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근절</p> <p>○ 농지법 개정 관련, 농지수탁제의 농지의 기준과 일치시킴</p> <p>○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보증할 수 없 도록하여 연대 보증 으로 인한 피해예방</p> <p>○ 친 환 경 농 산 물 인 증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p> <p>○ 단년도 사업인 경우, 사업연도 1.1~12.31</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작기 관련 내용 수정	재배기간이 사업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에 끝나는 경우 예도 한 작기로 간주하여 예산 집행 가능)	당작물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한 사업부분에 대 하여 집행토록함	사이에 사용하는 사업 예산을 집행 하는게 바람직함(민원, 예산 관련부서 지적)
○ 시 군 에 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등 농 업 기 술 센터의 역할 강화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 필요시 협의를 거쳐 평가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 심사, 평가 실시 ○신설(사후관리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실사, 컨설팅지원 협조토록함)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 전문기관인 농업기술 센터와 협조하여 지원 자격 심사, 평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사, 컨설팅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 *농진청 건의사항을 반영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			
○공급초종	○6종류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수단글래스, 들묵새)	○4종류 (클로버, 수단글래스는 제외하고 청보리 추가) *제주에서 요청한 들묵 새는 기타품목 운영	○수요가 적은 품종은 제외하고 국내자급 가능한 청보리 추가 ※ 2011년부터 국산 헤어리벳치종자 공급을 위한 체제 구축 (농진청 협조)
○밭아울검정 기준	○없음	○밭아울 80%이상	○종자 품질향상을 통 해 농가민원 해소
45.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①유기질비료 지원			
○지 원 대 상 비종	○유기질비료(3종) : 혼합 유박·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 그린 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 현행과 같음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일반퇴비 *10.1.1~6.30까지는 그린 퇴비 및 퇴비지원	○퇴비의 종류를 사용 원료에 따라 분류
○지 원 단 가	○1,160원/20kg	○유기질 1,500원/20kg ○가축분퇴비: 1등급 1,200원/20kg, 2등급 1,100, 3등급 900 ○일반퇴비 : 1등급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매겨 등급별 지원단가 차등화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품질 평가 및 차등지원 ○ 생산 능력 초과 공급 물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 ○ 품질검사 	-	<p>1,000원/20kg, 2등급 900, 3등급 700 *퇴비는 7.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09년과 같은 단가(1,160원/20kg)로 지원</p> <p><농촌진흥청> ○ 퇴비의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 ○ 업체별로 퇴비의 종류 및 품질 등급 확정 보고 ○ 검사업체수, 기준 미달 업체 등 연간 품질검사 실적을 사업종료 즉시 보고</p> <p>○ 농협 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 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p> <p>○ 연3회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평가 및 차등 지원을 위해 평가지침 마련, 평가실시, 평가 결과 통보 등 추가 ○ 생산능력을 초과 시의 제제기준을 사업참여 제한에서 보조금지원 제외로 조정
<p>46.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p> <p>① 농축산업 경영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10%이상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 연2회 이상 ○ 축산경영자금 -지원조건 : 1년이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경영자금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p>품질검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자금과의 지원조건 통일
<p>② 농기계구입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대출금이 없는 경우 융자지원 가능 ○ 가격변동 신고 : 연2회 ○ 지자체 보조액이 포함된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 지원한도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 ○ 가격변동 신고 : 연1회 ○ 지자체 보조액이 포함된 농기계구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운영관리 효율화 ○ 융자지원 및 농기계 이용의 효율적 제고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농기계 용자기준 ○ 용 자 지 원 대상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미만) 90%, (1천만원 이상) 70% ○용자기준율 -트랙터(4년차) : 37% ○형식검사 및 검정대상 농업기계 -형식검사, 종합검정, 안전검정, 자유화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지원을 한도내에서 지원 ○용자기준율 -트랙터(4년차) : 42% ○검정대상 농업기계 -종합검정, 안전검정, 자유화로 구분 (예)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은 종합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09.4.1)에 따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부 지 원 대상농기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사후검정 결과 임의개조 또는 변경시 해당모델을 포함한 동일 기종은 3년간 지원 제한 ○지자체등에서 보조등 으로 지원한 농기계가 규격품 미달 또는 덤핑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해당 모델을 포함한 동일기종은 3년간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피해 방지 ○농업인 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조 번 호 전 산 입 력 대상 농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터 등 13개 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터등 16개 기종 -모우어, 사료배합기, 사료작물수확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용부품 지원한도액 -농협부품센터, 사후 관리업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용부품 지원한도액 -중고농기계거래업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및 이용을 증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미곡종합 처 리 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지 원 자 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벼 매입실적이 3천톤 미만인 업체는 지원제외 -'11년은 벼 매입실적 5천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RPC규모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 원 대 상 및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벼 매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벼 확보(매취 및 수탁) 에 필요한 자금 ○매입 및 수탁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자금을 매취 및 수탁으로 구분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무량 ○담당기관 역할 ○의무사항 준수 및 벌칙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신규RPC 사업자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PC별 당해연도 지원 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 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단, 통합 RPC는 1.0배 이상을 의무 매입) ○벼 매입자금배정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벼 매입실적 확인(보고) : 시장·군수 ○규정없음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상 정상운영 - '06.1.1 신규 신청제외 - 부도인수업체는 2년 이상 정상운영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능력:1,500톤이상 - 저장능력:1,500톤이상 - 가공능력 : 20톤/일 이상 ○운영능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기간 : 2년 이상 -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 실적 : 2,000톤이상 또는 쌀 매출액이 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RPC별 당해연도 지원 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 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5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지원자금 중 15%이상은 의무적으로 수탁선도금으로 활용 ○벼 매입자금배정기관 : 농관원 ○벼 매입실적 확인(보고) : 농관원장 ○수탁의무량 미 준수 하거나 수탁실적 등을 허위보고한 경우 차년도 지원예정자금의 20% 삭감 조치 ○자금을 지원받은 후(대출실행 후) 반납할 경우 포기한 금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 조치 ○신청자격요건 : 3년이상 정상운영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능력:3,000톤이상 - 저장능력:3,000톤이상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운영능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기간 : 3년 이상 -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쌀 판매 실적 : 쌀 매출액이 연 120억원(세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의무량 부과로 수탁 확대유도 ○농관원으로 업무이관 ○수탁의무량 등 의무사항 위반경영체 벌칙 규정 삽입 ○전면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내용 확인 ○신청 자격요건 간소화 ○인정 시설기준 강화 ○인정 운영능력기준 강화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세무 신고자료) 이상인 업체</p> <p>-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500톤 이상</p> <p>-운영자금 : 10억원이상 확보가 가능한 업체</p> <p>○지역기준</p> <p>-시·군별 RPC개소당 논면적 : 3,000ha이상 확보</p> <p>-원료벼 확보가능 논 면적 규정</p> <p>-가공시설과잉지역</p> <p>-동일읍면 2개 RPC설치 지역</p> <p>-RPC처리량 50%이상 지역억제규정</p> <p>○심사절차</p> <p>○시장·군수 → 시·도지사 선정여부 결정</p> <p>○RPC인정 취소기준</p> <p>○신규DSC사업자 인정 기준</p> <p>○통합RPC우대지원세부내용</p> <p>○수탁사업시행요령</p> <p>⑤농업종합자금지원</p>	<p>(세무 신고자료) 이상인 업체</p> <p>-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500톤 이상</p> <p>-운영자금 : 10억원이상 확보가 가능한 업체</p> <p>○지역기준</p> <p>-시·군별 RPC개소당 논면적 : 3,000ha이상 확보</p> <p>-원료벼 확보가능 논 면적 규정</p> <p>-가공시설과잉지역</p> <p>-동일읍면 2개 RPC설치 지역</p> <p>-RPC처리량 50%이상 지역억제규정</p> <p>○시장·군수 → 시·도지사 선정여부 결정</p> <p>○규정없음</p> <p>○신청자격요건</p> <p>-규정없음</p> <p>○규정 없음</p>	<p>자료) 이상인 업체</p> <p>-취급규모 : 쌀 7천톤 (벼 1만톤) 이상,</p> <p>-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3,000톤 이상</p> <p>-운영자금 : 15억원이상 확보가 가능한 업체</p> <p>○지역기준</p> <p>-시·군별 RPC개소당 논면적 : 2,000ha이상 확보</p> <p>-벼 가공시설 과잉지역 등은 신규 RPC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p> <p>· 화성, 이천, 안성, 철원, 청원, 당진, 연기, 금산, 김제, 부안, 고창, 군산, 완주, 해남, 나주, 영광, 강진, 무안, 의성, 김천, 김해, 창원</p> <p>· 이미 설치된 읍면의 RPC 신규 선정은 제외</p> <p>○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식품부 선정여부 결정</p> <p>○부도 RPC와 2년 연속 벼 매입자금 지원한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p> <p>○신청자격요건</p> <p>-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추가</p> <p>○수탁사업 시행요령 추가</p>	<p>○인정 지역기준 하향 조정</p> <p>○일정자격 요건 충족 되면 신규RPC로 인정됨에 따라 RPC경영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토록 개정</p> <p>○취소기준 규정 마련</p> <p>○RPC중심의 유통체제 구축</p> <p>○전면개정</p> <p>* 지침내용 확인</p> <p>○수탁사업시행요령 추가 반영</p> <p>* 지침내용 확인</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가공, 쌀가공육성지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 회계기록 제출대상 상향 조정 ○ 축산업 등록제 대상 농가 변경 ○ 농촌가공 사업 운영 자금 지원 한도 폐지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개보수 자금 지원(운전자금 지원 규모 제한 폐지)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 법인 ○ 쌀가공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꿀·녹용가공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제외 <신 설>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이상으로 농업 경영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 지원대상자 : 사업영체별(개인법인)로 자금 지원하고, 운영자금은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 ○ 대출 용도 : 시설자금(운전자금은 최소화(20%이내))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쌀가공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꿀·녹용가공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로 확정(지원 결정)되기 전 이미 사업을 착수한 자(단,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3억원이상으로 농업 경영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 소는 가축사육시설 300㎡ 초과 보유농가. 돼지,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50㎡ 초과 보유농가 ○ <삭 제> ○ 대출 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합자금 지원 취지 반영(지원대상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 ○ 사업성검토를 거쳐 대출결정 후 자금지원 원칙 준수 ○ 농업인 서류제출 부담 완화 ○ 축산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자금 수요 및 소요 자금 산출에 의한 지원(원활한 자금 지원 도모) ○ 기존시설 현대화로 농가 경쟁력 강화(용도 구분 없이 수요에 따라 지원) ○ 대출금리 상승 시 농가 대출이자 부담 경감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대출금리 최고한도 설정 ⑥농어촌주택 개량사업 I.사업개요 1. 목적 2.근거법령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사업대상자 ○용자대상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출대상 주택>	<신 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제28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과 무주택자 ○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도시민 유치 목적 추가 ○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근거법 및 근거조문 변경 ○ 문구수정 ○ 자금통합 운영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적용 일원화 ○ 대출 대상으로 다세대형주택 구체화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대출한도></p> <p><사업비></p> <p>나)빈집정비 사업 <지원기준></p> <p>III. 담당기관 역할</p> <p>1.사업추진 체계</p> <p>농림수산식품부</p> <p>3.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p>	<p><신 설></p> <p>○신·개축: 세대당 4,000만원 이내</p> <p>○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00만원 이내</p> <p>○6,000동, 2,400억원</p> <p>- 주거환경개선자금 1,800억원(농특 180,주택 기금 1,080, 지방비 540)</p> <p>- 농촌주택정비자금 600억원</p> <p>○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p> <p>○다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경관개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빈집은 철거비(석면 등 방진시설 설치 포함) 지원(농촌생활환경정비 면당 지원액 범위 내)</p> <p>-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보조율: 국비 70% 지방비 30%</p> <p>○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농어촌주택개량 중장기 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 계획 확정, 사업비조달 계획수립 및 확보,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p> <p>○ 당해연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p>	<p>○<u>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u></p> <p>○신·개축: 세대당 5,000만원 이내</p> <p>○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500만원 이내</p> <p>○8,000동, 4,000억원</p> <p>-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000억원(농협자금 2,800, 지방비 1,200)</p> <p>○(현행과 같음)</p> <p>○다만, 농산어촌지역(마을)의 <u>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환경보전 등을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철거비(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포함)를 해당 사업비에서 지원</u></p> <p>- (삭제)</p> <p>○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농어촌주택개량 중장기 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사업비조달 계획수립 및 확보,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p> <p>○ 당해연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계획이 확정 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p>	<p>○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 반영</p> <p>○'10년 예산 반영</p> <p>○'10년 예산 반영</p> <p>○빈집철거지원 범위 확대</p> <p>○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해당사업 지원 기준 적용</p> <p>○ 문구수정</p> <p>○ 문구수정</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시·군·구</div>	<p><u>개량사업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u> <신 설></p> <p>①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확정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다만, 신청자 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20%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희망자에게 배정 가능</p> <p><신 설></p> <p>③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에 배정하는 물량(舊 농촌 주택정비자금)은 아래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선정</p>	<p><u>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중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u></p> <p>①<u>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특별배정물량)에 대해서는 특별배정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u> *특별배정물량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배정물량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시 전환물량 만큼 제외할 계획임</p> <p>②특별배정물량 이외의 배정물량(농어촌지역 개발사업지역 배정, 일반배정)에 대해서는 아래 대상자를 배정 물량의 25%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p>	<p>○물량 특별 배정에 대비한 항목 신설</p> <p>○우선선정 범위 상향 조정 ○슬레이트 주택 우선 선정 근거 반영</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 농산어촌 마을종합개발 등) 안에서 주택 개량 희망자</p> <p>-수해지구, 재해위험지구, 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p> <p>*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자금으로 사업자 선정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필요</p> <p>②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 대해서는 i) 주택노후도(노후도가 높을 수록 우선 지원) ----- 등을 고려하여 ----- 선발</p> <p>○(생략) ○(생략) <신 설></p>	<p>④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일반배정)에 대해서는 i) 주택 노후도(노후도가 높을 수록 우선 지원) ----- vi) 슬레이트 주택 여부 (슬레이트 주택개량시 우선지원)등을 고려하여 ----- 선발</p> <p>○(좌동) ○(좌동)</p> <p>-사업대상자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선정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시 이 사실을 표기하여야 함</p> <p>*사업대상자가 주택 완공 후 신용불량, 부지 미소유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p>	<p>○ 일반 배정 물량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 지원 근거 설정</p> <p>○ 시·군·구와 대출 기관간 협력 강화</p>
<p>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어촌주택 개량></p> <p>주민(사업대상자)</p>	<p><신 설></p> <p>○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완공 이후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p> <p>○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p> <p>*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p> <p>○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이를 이행하여 함</p>		

구 분	현 행 (2009)	변 경 (2010)	변 경 사 유
5. 자금 배정 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농협중앙회 (일선조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농어촌빈집 정비> 시·군·구 /시·도</div>	<p>○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p> <p>- (생략)</p> <p>○농협중앙회장은 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중앙회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p> <p><신 설></p> <p>○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p> <p>-동당 10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설정</p>	<p>○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p> <p>- (현행과 같음)</p> <p>○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중앙회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p> <p>-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재원 중 농협의 자체자금(정부 이차보전대상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p> <p>○(현행과 같음)</p> <p>-지원액은 빈집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p>	<p>○'10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추가 반영</p> <p>○동당 지원금액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함</p>
6.이행점검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제재> 주민(사업대상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시·군·구/시·도</div>	<p>○사업대상자가 용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용자금 지원 철회</p> <p>-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 철거 미이행 등</p> <p><신 설></p> <p>○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개량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용자금 지원 철회 대상으로 통보</p>	<p>○(삭제)</p>	<p>○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시·군·구에 수정반영</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농협중앙회 (일선조합) 7.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9.사업 완료 이후 용자금 사후관리 시·군· 구/시·도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신 설> ○대출기관(농협)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성과지표 - 불량주택정비(%) : 80 - 주민만족도(%) : 72 ○ (현행과 같음)	○성과지표 상향조정
	○성과지표 -불량주택정비(%) : 78 -주민만족도(%) : 70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당해 주택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 관리		
농협중앙 회 (일선조합)	<신 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최초 용자금 수령자)가 용자금 거치기간(5년) 중에 증축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관련지침에서 정한 대출대상 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농협) 및 사업대상자에게 용자금 회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 *2009년 이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와 2008~2009년 농촌주택정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농협(대출기관)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 주택개량 용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 관계 규정에 따라 용자금 잔액을 회수 -대출기관에서는 용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회수대상 용자금 잔액을 일반자금으로 전환 조치 가능 ○농협(대출기관)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용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 제14조 제1항	○용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관의 조치 사항 반영
	○농협(대출기관)에서는 사업대상자(최초 용자금 수령자)가 용자금 거치기간(5년) 중에 증축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관련지침에서 정한 대출대상 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자금 잔액 회수 조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자금 : 2009년 사업 대상자 및 2008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 모두 적용 *농촌주택정비자금 : 2008년 이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적용 (2007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비적용)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IV.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p> <p>2.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p> <p>⑦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p> <p>○ 지원 방식 변경</p> <p>○ 도축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자격 강화</p> <p>○ 도축장시설 보완 사업의 지원 자격 강화</p>	<p>○대출한도 -신·개축 : 세대당 <u>4,000만원</u>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u>2,000만원</u></p> <p>○재정융자사업 -재원: 축산발전기금</p> <p>○기존 도축장 2개소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p> <p>○소·돼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다만, 중위등급은 '08년도축실적이 소 6천두, 돼지 180천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p>	<p><u>제1호에 의한 부당 사용사유를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u></p> <p>○사업대상자가 건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u>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u>」 제11조에 따라 조치</p> <p>○대출한도 -신·개축 : 세대당 <u>5,000만원</u>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u>2,500만원</u></p> <p>○이차보전사업 -재원: 일반회계 *민간금융기관 자금을 활용, 정책금리와 기준 금리와의 차액 보전</p> <p>○일반도축장(소·돼지)을 통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정부지원 LPC·축산물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운영자 등</p> <p>○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p> <p>○소·돼지 도축장 -정부지원 LPC·축산물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운영자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일반도축장 영업자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p>	<p>○'10년 예산반영</p> <p>○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및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p> <p>○「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 강화</p> <p>○「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 강화</p> <p>○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지원</p>

구 분	현 행 (2009)	변 경 (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사업의 지원자격 강화 ○ 도축장운영 자금의 지원 자격 강화 ○ 오리도축장 운영 자금의 지원자격 강화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 자금의 지원 자격 강화 ○ 계란등급시설 운영 자금 지원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 도축장 -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 오리 도축장 - 도축실적이 1,500천수 이상인 도축장 ○ 닭 도축장 -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 '08년 도축실적이 1,500천수 이상인 오리 도축장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농림기술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 도축장 -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다만, 중위등급은 '09년 도축실적이 닭 15백만수, 오리 3백만수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닭 도축장 -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다만, 중위등급은 '09년 도축실적이 15백만수 이상인 경우만 지원 ○ HACCP 운용수준 상위, 중위등급인 도축장. 다만, 중위등급은 '09년 도축실적이 3백만수 이상인 경우만 지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란집하장을 운영 하면서 냉장유통을 하거나,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자 ○ 농림수산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 강화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 강화 ○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지원 ○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과 연계 강화 ○ 계란의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된 평가원에 농림기술관리센터 의무, 권리 등을 승계
<p>47. 농림기술 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 기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및 규정 ○ 성과 목표 및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7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사업 운영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5조 ○ 기술개발 성과활용율 ○ 기술이전율 ○ 기술료 납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6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 농림수산식품 연구 개발사업 운영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 기술실시계약실적 ○ 국내특허출원/등록실적 ○ SCI논문 게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개정 (2009.5.27, 전부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 (2009.4.1, 제정) ○ '09 성과관리 시행 계획서(2009.6.) 성과 지표 반영
<p>4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등록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제출 ○ 등록금 대체 및 학생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생략 ○ 원칙적으로 등록금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토록 조정 ○ 학자금을 지급받고 등록하지 아니하는 학생이 있어 제도 변경
<p>50.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도우미 지원 연령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 영농도우미 지원조건 ○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세 이하 ○ 사고·질병 농업인 그 배우자 ○ 사고 : 2주이상 상해진단 ○ 질병 : 2주이상 입원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하 (1935.1.1 이후 출생자) ○ 사고·질병 농업인 ○ 사고 : 2주이상 상해진단 ○ 질병·사고 : 10일이상 입원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현실을 반영 하여 연령 상향 조정 ○ 농업인에게 지원 ○ 지원조건 완화 ○ 단독가구는 복지부 서비스 이용
<p>51. 쌀소득 등보전직접 지불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해석에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농지의 전용 등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임	혼란이 있으므로 지급 대상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안내
○각종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지정된 경우의 지급대상 여부	-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 가능	○지급대상 농지를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쌀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기준 안내
○농농업 종사의 개념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 분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인정	○각종 개발지역으로 고시·지정된 농지의 경우 보상의 범위를 정립하여 안내
○신규진입 요건	○논농업에 종사의 개념에 일부 위탁을 포함	○일부 위탁이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일부 위탁의 개념을 안내하여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및 농업인들의 혼란 최소화
○신규진입 요건	○신규진입 요건 중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시 2년이상 주소를 함께해야 함	○2년 이상 주소 요건 중 사망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망 직전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논농업에 종사 한 사실을 증명(이장 확인서)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쌀직불금 수령자가 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위해 주소를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보완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농촌 외의 거주자 자격 요건	○농촌 외의 거주자의 주소 기준 시점 미비 ○농촌 외의 거주자는 해당 시구에 있는 논을 2년이상 경작---	인정할 수 있음 ○주소 기준 시점은 등록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2년 이상 경작기간 중 비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는 예외 인정 연접한 읍·면·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을 말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도시거주자의 자격요건 중 도시지역은 농촌에 비하여 이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정 보완
○등록신청 기간	○2009.6.25~2009.8.10일	○등록신청 기간 : 2010.4.15~2010.6.15일	○자격요건 확인 및 이행점검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정
○쌀직불금 신청자격 요건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2인 이상 공동소유농지 또는 동일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각각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경작의 경우 신청요건을 정확히 하고자 함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장(마을 주민)의 확인서 제출	○군사지역 안의 농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군사지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장(주민)의 확인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영농기록	○휴경하는 농지도 제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경작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목적임을 감안 생략 ○실제 논농업에 종사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인정범위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하는 영세농업인들의 서류 준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기록으로 인정하는 서류를 확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인정	○'09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0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 부터 확인 가능	○농촌의 임차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실제 경작자들이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농지의 형상 및기능 점검	○4가지 점검항목 및 쌀의 재배여부만 확인	○이행점검 시 동일 필지의 농지에 2인 이상이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 점검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52.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65~74세(2009년 한 시적으로 71~74세 인정)	○사업대상자 -65~70세	○시행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 한시적 사업대상자(71~74세) 제외
○지급기간	○지급기간 -75세 까지 2~10년간	○지급기간 -75세 까지 6~10년간 <삭제>	○71~74세 사업대상에서 제외
○종전규정에 따른 약정자 경과 조치 (재약정 관련 사항)	○종전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매도, 임대약정 종료되지 않는 자에 대한 재약정)		○시행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09년 한시적 시행한 재약정 체결기한 완료
5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요청 (시군구→인)	○1회 요청 (5.20일까지)	○2회 요청 - 1회 (5.10일까지)	○원활한 이행점검 결과 확인을 위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증기관) ○ 이 행 점 검 결과 통보 (인증기관→ 시군구) ○이행점검마감 및 소요예산 신청 ○임야의 경우 직불금 지원 여부 ○공지사항 -	○1회 통보 (10.20일까지) ○10.30일까지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 관리	- 2회 (8.15일까지) ○2회 통보 - 1회 (7.15일까지) - 2회 (9.15일까지) ○10.15일까지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 관리 -단,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외 ○ 10년중 인증만료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인증기관) ○ 인증기관변경사항 시군구 통보 고지(시군구) ○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을 선정 여부통지서에 명시	-다량의 자료 확인 수정 작업에 필요한 기간 확보 ○원활한 이행점검 결과 확인을 위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기조정 ○친환경재배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필지로 한정 ○ 이 행 점 검 결 과 중 부적격 처리에 대한 사전 조치 대비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 해소
54.조건불리 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자격	○지원자격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자격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
○지급단가 ○약정신청서 구 비 서 류 예시	○지급단가 : 밭·과수원 40원/m ² , 초지 20m ²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m ² , 초지 25m ² ○신청인이 해당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신청자 명의의	○지급단가 인상 ○실경작 확인 서류의 예시 추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p> <p>55.경 관보 전 직 접지 별 제 ○‘농업인등’의 정의</p> <p>○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p>	<p>-</p> <p>○농업인등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 (농업법인 포함)</p> <p><신 설>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 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p>	<p>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 조성 허가증 등</p> <p>○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Agrix를 통해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p> <p>○농업인등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 법인을 우선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지원요건 강화에 따른 확인 절차</p> <p>○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우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11년부터 연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09.4.1)</p> <p>○그간 명시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등)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서식의 주민 등록 번호 개선 57.농어업재해 보험사업 ①농작물재해 보험 ○대상 품 목 확대 ②가축재해 보험 ○대상 축 종 확대 ③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어 종 확대 ○정부지원을 확대 59.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업외 소득 요건 완화 ○조손가정 등의 범위 명확화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번호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벌	○생년월일(남/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u>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 및 농업시설</u>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벌, <u>토끼</u>	○개인정보 보호 ○대상품목 확대의 일환으로 “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 및 농업시설” 추가 ○대상축종 확대의 일환으로 “토끼” 추가 ○대상어종 확대의 일환으로 “전복 및 그 시설물” 추가 ○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요건 완화 ○지원의 형평성 제고 *2000만원(3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육상수조식 녘치 및 그 시설물 ○운영비 : 70% 지원 ○농어업외소득 35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손가정 경우 아동의 한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육상수조식 녘치 및 그 시설물, <u>전복 및 그 시설물</u> ○ <u>운영비 : 80% 지원</u>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의 한 부모 의 소득 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확인 절차 명확화 ○시설이용료 납입 ○예산 집행 과정 ○중복 지급 관련(복지부 저소득 지원 신청시)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농업인 2인의 확인 ○농어업인에게만 지급 ○예산집행시 농림사업 통합시스템(AgriX) 이용하지 않음 ○사후 확인하여 이중 지급 확인시 반납 ○둘째아 이상 양육비 타부처 추가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대체(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제출) ○고의로 미납시 시설 계좌로 입금가능 ○예산집행시 농림사업 통합시스템(AgriX) 이용토록 함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과 타부처 두자녀 이상 추가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임·어업인은 현행 유지) ○시설의 안정적 경영 도모 ○AgriX시스템 활용으로 사업의 효율화 도모 ○예산집행의 안정성 등을 고려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하여 전액 지원
<p>60.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관광 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 추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지정신청 →지정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신고 →신고필증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관광휴양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p>61.한계농지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해제 	<p><신 설></p>	<p>2. 사업 지정단계</p> <p>다.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지정의 행위 제한에 따른 농어촌 정비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신설('09.12.10.부터 시행)
<p>62.농어촌뉴타운조성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등'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등 : 자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등 : 농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 등록제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정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 (농업법인 포함)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 법인을 우선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사업 추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우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11년부터 연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09.4.1)
○입주대상자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신 설>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 자녀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 ○향후 입주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농업 경영체 등록제 참여)	○입주대상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자구 수정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 추진하기 위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09.4.1)
○마을정비 구역 지정 승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	○시·도지사 승인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	○농어촌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09.12.)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	○시장·군수 승인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승인	
○임대주택 유지기간 등(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신 설> ○임대주택 유지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1/2로 하되, 유지기간 내에 임대주택 건축에 투입된 국고융자액과 그 이자분, 국고보조 40%에 해당하는 주택의 현재액(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처분(분양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임대주택 유지기간 명시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후 관리기준을 명시 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등)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p> <p>·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 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p> <p>·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p>			
[임업·산촌 분야]				
63.산림경영 계획사업	○지원단가 조정	○단가 : 10,800월/ha	○단가 : 11,800월/ha	○현실 노임여건을 반영한 작정 단비로 조정
64.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의 기준 변경	○금융기관 총부채(금차 지원액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개인(전문임업인 제외)	○금융기관 총부채(금차 지원액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개인(전문임업인 제외)	○지원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용자지원을 확대
○단기산림소득 지원사업 용자 비율 조정 및 용자한도 변경	○용자비율 -표고생산자금(용자70) -단기임산물생산(용자70) -임산물생산장비(용자70) -조경수·분재(용자70) -수액자원생산(용자70)	○용자비율 변경 -표고생산자금(용자80) -단기임산물생산(용자80) -임산물생산장비(용자80) -조경수·분재(용자80) -수액자원생산(용자80)	○용자비율 조정 -표고생산자금(용자80) -단기임산물생산(용자80) -임산물생산장비(용자80) -조경수·분재(용자80) -수액자원생산(용자80)	○용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용자지원 확대
○용자한도액은 세 사업 별 별도 규정 -2백만원~설계의 80%이내	○용자한도액을 용자비율액으로 일괄 적용 - 사업비의○%이내	○용자한도액을 용자비율로 일괄적용하여 용자조건을 단순화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용자한도 상향	○사업자당 10억원 이내. (단, 신청업체가 적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5억원 추가지원 가능)	○사업자당 15억원 이내 (단,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용자한도액 상향 및 추가 지원 내용 조정으로 수출활성화 기대
○해외산림투자 지원 지원 자격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산업조림, 탄소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 개발 사업계획(산업조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및 요건	배출권조립, 바이오조립, 별채, 임산물가공시설)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	탄소배출권조립, 바이오조립, 별채, 임산물가공시설)을 신고한 자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기대
65.산림소득 증대사업			
○사업명칭변경 (사업통폐합)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산림소득증대사업 ○전통산지약용식물소득원화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통폐합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임산물 유통 지원	<신 설>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자격요건 : 지리적표시 등록임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운영 -HACCP제도 지원사업비 : 100백만원 ○명품브랜드화 지원 - 자격요건 : 지리적표시 등록임산물 및 친환경인증임산물	○HACCP 제도 도입을 통한 임산물 안전성 강화 ○자격요건 확대를 통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세세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지원 - ①표고재배시설, ②툽밥 표고배지시설, ③밤나무 노령목관리, ④밤 지상 방제장비, ④밤 작업로 시설, ⑤친환경 밤생산 지원, ⑥밤 등 생산장비 지원, ⑦산림복합경영 <신 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요건 : 등기부등본 (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세세사업별로 구분 없이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세세사업에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지원, 잔디 생산 토양개량 및 장비 지원, 감 선별기 지원 등 신규로 추가 <삭 제>	○지자체별 지역여건, 주요 재배품목 등을 고려하여 임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고품질, 규격화, 대량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됨

구 분	현 행 (2009)	변 경 (2010)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는 지원 제외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지원에서 통합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생대추 생산을 위한 기반마련
○ 전통산지약용 소득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추진방식 : 단년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추진방식 : 2개년도 * (1차년도) 설계·감리, 기반조성 * (2차년도) 체험시설, 테마 공원 등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가 대규모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
66.산림바이오 매스사업			
○ 펠릿 보일러 보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보급기준(병행) -열효율(80%)이상, 역화방지 기능 등 최소한의 보급기준 시달(6. 26) -목재펠릿보일러의 성능· 구조 및 설치기준(9 .28, 에너지 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성능·기준 등(강화) · 목재펠릿보일러의 성능·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된 보일러 설치 및 명판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불량보일러 보급 차단을 위함
○ 펠릿 보일러 보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1대당 : 43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1대당 : 3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보일러 생산량이 증가하여 초기 보일러 시장이 형성되었고, 보일러 업체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짐
69.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 경영비 보조를 통한 사유림활성화 기대
○ 지원자격 및 요건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독립가, 임업 후계자, 신지식임업인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 설>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 시설, 유통시설, 재배 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 시설, 관리시설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신 설>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인원 : 32명내외 ○ 자부담 능력에 따라 1억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가능	
70. 임산물 해외 시장개척사업			
○ 수출기반 구축	<신 설>	○ 수출선도조직 육성 - 2품목 369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100% - 신청서식 추가 ○ 품목별 수출협의회 - 2품목 4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100% - 신청서식 추가	○ 수출선도경영체 육성을 통한 임산물 수출확대
71. 조림·숲 가꾸기			
○ 조림	○ 경제수조림(생태조림, 속성경 제수조림 등)	○ 경제수조림(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 <u>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u>)	○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및 산주소득증대
제4권 축산·수산·광특 회계분야 [축산분야]			
72.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 조사료 사일 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 사일 리지를 제조하여 축산	○ 제조 및 운반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제조 경영체와 축산농가의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6.지원한도액 기준및범위</p> <p>○ 조사료 용 기계·장비 지원(보조 사업)</p> <p>3. 지원대상</p> <p>5.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p> <p>-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 관리</p>	<p><u>비용</u></p> <p>○사일리지 제조비(생략) - 시·군(생략)</p> <p>○조사료 생산·유통(생략) - 기계·장비(생략)</p> <p>○개별농가:(생략) - 조사료 저장용(생략) - 기타 조사료(생략) · 농기계 및 (생략)</p> <p>○지원기준 : <u>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u></p> <p>○개별농가 : <u>용자 80%, 자담 20%</u></p> <p>-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 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 되지 않도록 조치</p>	<p><u>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u> (하계작물은 수확 후 트레치 사일로 보관분 포함)</p> <p>○사일리지 제조비(생략) - 시·군(생략)</p> <p><신설>생산 실명 표기 <신설>조사료 품질등급 표기</p> <p>○조사료 생산·유통(생략) - 기계·장비(생략)</p> <p><별표3> <신설>하베스트 지원(1~3조)</p> <p>○개별농가:(생략) - 조사료 저장용(생략) - 기타 조사료(생략) · 농기계 및 (생략)</p> <p><신설>섬유질 가공공장의 사일로 용량은 1기당 500톤 기준으로 하되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 (절단 기능 및 소포장 기계 등 포함)</p> <p>○지원기준 : <u>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u></p> <p>○개별농가·섬유질사료가 공공장 : <u>용자 80%, 자담 20%</u></p> <p>-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 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 (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p> <p><신설>사·도(시·군·구)는 기계 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등의 용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 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에서 조사료용 기계·</p>	<p>반복 민원 발생요인 제거</p> <p>○양질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규격화 유도</p> <p>○하계작물 재배활성화를 위한 지원장비확대</p> <p>“</p> <p>○실수요자 지원을 통한 부실 경영체 난립 방지</p> <p>○하계작물 재배활성화를 위한 지원장비확대</p> <p>-기계·장비이중지원방지 강화</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벗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p> <p>3.지원대상</p> <p>5. 지원형태 및 사업의 무량</p> <p>○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p> <p>5. 지원형태 및 사업의 무량</p> <p>○ 조사료 가공 시설</p> <p>○ 사업 평가 및 환류단계</p> <p>○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p> <p>75.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p> <p>II.2010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p> <p>1.사업대상자</p>	<p>○암모니아 처리비 및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p> <p>○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p> <p>○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p> <p>○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하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생산자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p> <p>○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항목에 “조사료 생산 대책 추진”이 반영</p> <p>○ 3.<개별농가(생략) <조사료(생략) - 시·군은 사업비 집행 후 그 결과를 <서식1>~<서식5>에 의거 농식품부에 보고</p> <p><신 설></p> <p>○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p>	<p><u>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용자 집행 여부 결정</u></p> <p><삭제>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p> <p>○ 지원비율 : 보조 30%, 자부담 70%</p> <p>○ 지원비율 : 보조 30%, 자부담 70%</p> <p>○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삭제></p> <p><삭제></p> <p>○3.<개별농가(생략) <조사료(생략) - 시·군은 사업비 집행 후 그 결과를 <서식1>~<서식7>에 의거 농식품부에 보고 및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p> <p>○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p> <p>○액비유통센터 : 지역</p>	<p>○암모니아 가스 처리비 지원 대상 제외</p> <p>○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비율 조정</p> <p>○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비율 조정</p> <p>○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항목에서 제외에 따른 삭제 조치</p> <p>○사업 진척도 모니터링 및 전산화(DB구축)</p> <p>○‘10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p> <p>○액비유통센터의 규모화</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 지원 자격 및 요건	<p>작목반, 민간전문 유통 주체</p> <p>○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p> <p>○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 1일 100톤 이상 <신 설></p> <p>○공동 적용사항 - 법인 운영실적 1년 이상</p>	<p>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화 후 지원</p> <p>○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p> <p>○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 대상자</p> <p>○공동 적용사항 - 법인 운영실적 6개월 이상</p>	<p>및 전문화 도모</p> <p>○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업체 등의 전문화 촉진</p> <p>○지원자격 요건 완화</p> <p>○'10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p>
3.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p>○공동자원화시설 <신 설></p>	<p>○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단, 사업비 중 5%는 상용화 기술 연구개발비로 사용)</p>	<p>○'12년 가축분뇨 해양 배출 전면 금지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신청자격 완화</p> <p>○'10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p>
4. 지원 형태 (조건) 및 사업 의무량	<p>○지원비율(%)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 < 신설 ></p>	<p>○지원비율(%)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 국고30%, 지방비30%, 융자20%, 자담20% *단. 지방비의 경우 50% 이내에서 민간기업 투자 가능</p>	<p>○'10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p>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p>○사업비 산정기준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p>	<p>○사업비 산정기준 ※ ① 축 사 면 적 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III.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p> <p>1.사업자 선정 단계</p> <p>3. 세부계획 수립</p>	<p>기준 <신 설></p> <p>○사업비 지원 한도액 -공동자원화시설 : 3,000백만원</p> <p>-액비살포비:200천원(ha)</p> <p>○공동자원화시설 -선정방식 : 친 환경 축산전문심의회에서 선정</p> <p>○우선순위 <신 설></p> <p>보조사업자</p>	<p>축사면적 기준</p> <p>- 단, ‘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면적 기준</p> <p>○사업비 지원 한도액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4,000백만원(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 100톤 초과는 2천만원)</p> <p>-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 7,000백만원(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톤당 7천만원)</p> <p>-액비살포비 :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p> <p>○공동자원화시설 - 선정방식 : 축산환경 자원화협의체에서 선정</p> <p>○우선순위 -‘개’ 사육 농가의 경우 ‘09년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농정심의 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치의 시급성 등을 감안, ‘10년 사업 신청시 당해연도 우선 지원(‘10년도에7 한함)</p> <p>보조사업자</p>	<p>○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규정에 따라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하도록 규정</p> <p>○사업비 단가 및 처리 물량 탄력적 적용</p> <p>○‘10년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p> <p>○액비유통센터 운영 실적 등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p> <p>○“가축분뇨 에너지화 실행계획(‘09.9월)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은 축산환경 자원화 협의체에서 추진</p> <p>○‘개’ 사육농가의 경우 ‘10년 10월 27일까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 ‘10년도에 한해 우선지원</p> <p>○가축분뇨의 수집·</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4. 사업시행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계획수립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로 계획수립	운반 및 퇴·액비 유통 활성화
라. 기타사항 3)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신 설>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 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 (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명 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 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책임시공)
5. 자금 배 정 (집 행) 과 정산 시·도(지자 체) 나.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농진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시스템 중에서 선정 <신 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신 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한 ‘처리 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를 받은 퇴·액비화 시스템의 경우 평가시 가점부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 인증’을 받은 퇴·액비화 시스템의 경우 우선 선정 할 수 있음 ○시설설치 기준 : 가축 분뇨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 2]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 반납 조치	○신기술 등의 현장 적용 촉진 ○시설설치 기준 구체화 ○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7항 관련하여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5. 이행정검 단계 《사후관리》 ○공동자원화 시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IV.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신 설>	- 공동자원화 시설은 2~6개월 수준(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 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생산된 퇴·액비 및 방류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공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정상가동 확인 후 시설 준공 및 정산을 통한 책임감 있는 시공 유도
	<신 설>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페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참여 농가 계약 위반시 페널티 부여
	<신 설>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 의뢰하고, 결과 비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의 안전성 확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사후관리기간 : 5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사후관리기간 : 10년 (블록조·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10년) * 기계·장비 : 5년 * 공동자원화시설 조직체는 가동률 등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사후관리기간 강화 ○공동자원화시설 조직 평가를 통한 운영 효율성 도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사항 2. 2011년 사업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76.마필산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신 설> -경주마(제주마 포함) · 승용마 사육농가 -마필관련 전문 교육 과정 이수자 -농·축협, 영농조합 법인, 마필생산자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비농업인(승마체험장 · 승마장 설치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차등 지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 협회, 지자체, 한국마 사회 및 승마체험장· 승마장 설치·운영(말 입식 포함)을 (희망) 하는 비농업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 ○사업대상자 명확화 - 농업회사법인도 대상에 포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씨암말 도입	- 말 구입(씨암말 구입 포함)	○국내산 말 거래 활성화 유도
○용자조건 - 말 구입	-씨암말 : 용자90%, 자 부담10%	- 말 구입 : 용자70%, 자부담 30%	- 유사사업과 용자조건 통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승마체험장 ·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	-신규설치	-시설보완 포함	-시설보완 지원을 통한 승마장 경영 활성화 도모
80.브랜드육 타운조성 사업 ○사 후 관 리 기간	○준공후 5년	○사업완료보고 후 10년	○사후관리기간 연장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81.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u>계란집하업 등록자</u>	○사업대상자 확대로 계란 냉장유통 확대도모
82.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 지원대상 ○사업내용 (양계·오리 분야)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폐사축 처리 시설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u>계란 세척기 등</u>], <u>계란 냉장보관 창고</u> , 폐사축 처리시설	○계란의 위생수준 제고와 신선도 유지를 통한 콜드체인시스템 유도 (어름철 상온 노출 방지)
○선정기준표 (별표) - 육계	○평시사육수수 : 50점 ○교육실적 : 50점 ○계열주체와 계약기간 : 50점	○평시사육수수 : <u>20점</u> ○교육실적 : 50점 - <u>협회등 교육도 인정</u> ○ <u>자조금 납입율 : 100점</u> - <u>납입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u> ○ <u>대형닭 생산실적 : 50점</u>	○의무자조금 전환에 따른 납부농가 인센티브 부여 ○농가 교육 참여 증대도모
○선정기준표 (별표) - 산란계	○HACCP 지정 : 40점 ○수상경력 : 30점 ○추진가능성 : 30점 * 총점 : 250점 ○평시사육수수 : 50점 ○교육실적 : 50점 ○계열주체와 계약기간 : 50점	○HACCP 지정 : <u>30점</u> ○수상경력 : <u>20점</u> ○추진가능성 : 30점 * <u>총점 : 300점</u> ○평시사육수수 : <u>30점</u> ○교육실적 : <u>60점</u> - <u>협회등 교육도 인정</u> ○ <u>자조금 납입율 : 100점</u> - <u>납입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u>	○대형닭 생산확대로 생산비 절감 유도 ○의무자조금 전환에 따른 납부농가 인센티브 부여 ○농가 교육 참여 증대도모
○선정기준표 (별표) - 오리	○HACCP 지정 : 40점 ○수상경력 : 30점 ○추진가능성 : 30점 * 총점 : 250점 ○교육실적 : 50점	○HACCP 지정 : <u>40점</u> ○수상경력 : 30점 ○추진가능성 : <u>40점</u> * <u>총점 : 300점</u> ○교육실적 : 50점 - <u>협회주관 교육도 인정</u>	○농가 교육 참여 증대도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83. 브랜드 경영체 중합지원사업 ①가축계열화 사업 ○우 선 지 원 요 건 ○지 원 비 율 ○사 업 추 진 절 차	<추 가>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농식품부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 -시·도는 농식품부의 지정 업체중에서 컨설팅업체를 선정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업체 ○육계 계열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업체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시·도에서 컨설팅업체를 직접 공모하여 선정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양계분야 의무 자조금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금보조 비율 조정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여 브랜드경영체의 원활한 컨설팅 사업 추진 및 자금 조기 집행 도모
84. 축산종합 지도(HACCP)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H A C C P 지 도 지 원 사 업 비 지 원을 ○컨설팅 완료 보고서	○축산농가 - 소, 돼지, 닭 ○축산물작업장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보조 3백만원, 지방비 2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개별 업소별 완료 보고서 제출(붙임2 서식)	○축산농가에 오리 추가 ○보조 30%(2.4백만원), 지방비 30%(2.4백만원), 자부담 40%(3.2백만원)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시·도별 총괄 완료 보고서 제출(붙임2 서식)	○오리농장 HACCP 신규 적용('09.5) ○축산컨설팅지원사업 지원을 통일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 사업실적은 시·도 자체적으로 관리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3. 성과목표 및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1,500개소까지 확대 추진 - “13년까지 배합사료 품질 개선 및 어가당 지원한도 확대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1,000개소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량을 <u>매년 10% 확대 추진</u> - 배합사료 품질 개선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u>최근 3년간 평균사용량 보다 10% 확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사용어가는 예산규모 및 어가당 지원한도의 변경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크므로 성과목표를 수정
II.2010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권 처분관청인 자자체(시·군·구)로부터 양식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을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단, 양식어업권 관련 행정처분관청(지자체)으로부터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당해 사업 자격 박탈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 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단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신고는 어업 권으로 볼 수 없고, 해면양식어업 중 어류양식에 국한하여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사업제한대상과 중복으로 단서규정 삭제
5.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과목 변경
III.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 기관 역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시·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시·도</div>	
1.사업신청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시기:연 3회(1,4,7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 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시기 : 연 1회(2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 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내용을 통합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 사업자 선정 단계	<p><u>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u>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선정기준 <신 설></p> <p>○우선순위 ①전년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②당해연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③당해연도 2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p> <p><신 설></p> <p>④~⑦ (내용생략)</p> <p>○사업자 변경 <신 설></p>	<p><u>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u>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선정기준 - <u>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u></p> <p>○우선순위 ①전년도 배합사료를 <u>년간 100%</u>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②당해연도 배합사료를 <u>년간 100%</u>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③당해연도 2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④<u>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장에게 등록된 위해 요소 중 점 관리 기준 (HACCP) 양식장</u> ⑤~⑧</p> <p>○사업자변경 - <u>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경우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받아야 함</u></p>	<p>○탈락자 발생시 예비 사업자를 즉시 사업자로 교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p> <p>○100% 범위를 명확히함</p> <p>○상동</p> <p>○양식장 HACCP 등록을 권장키 위함</p> <p>○번호정리</p> <p>○예비사업자가 사업자 모집단계시 제출한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를 사업자 선정일에 맞추어 변경하여 시행케 하기 위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4.자금배정 단계	<p>○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p> <p>○시·도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배정을 통해 자금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p> <p>○사업자 선정 : 배합 사료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3회 사업자 선정 -선정시기 : 1, 4, 7월</p> <p>○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 부터 2009.12월말일 까지 -계속등록업자 : 2009.1.1 ~ 2009.12월 말까지 ※ 기존 2009.11월말까지 적용기간을 둔 사업자는 2009.12월말까지로 조정 지원되는 것으로 봄.</p>	<p>○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p> <p>○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p> <p>○사업자 선정 : 연간 1회, 3월말까지 -예비사업자 소진시 상기“2. 사업자 선정 단계”에 따라 재선정 가능</p> <p>○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 부터 2010.12월말일 까지 -계속등록업자 : 2010.1.1 ~ 2010.12월 말까지 ※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 당해 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기간 (예: 12월20일까지</p>	<p>○보조금을 입금시키는 통장의 확인을 명확히 하고자 함</p> <p>○사업자선정은 년회로 간소화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대처</p> <p>○12월말일경에 집행된 배합사료 사용금액을 보조금지급에 필요한 원인행위를 12.31까지 처리키 곤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며, 단축된 기간은</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기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사업비 정산 월 : 6회 (3, 5, 7, 9, 11월, 익년1월) ※어업인 경영지원 효과 증대를 위해 2개월마다 정산 지급</p> <p>-대상어종 및 양식 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p> <p>○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사업자(또는 배합사료 회사)는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 첨부)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달의 15일까지 시·도에 제출</p> <p>-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사료회사(대리점)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p>	<p><u>적용기간을 두었을 경우 12.21부터 12.31까지</u>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p> <p>○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정산시점 : 매 분기말 (3, 6, 9, 12월) ※매 분기말 적용시 1월이 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정산 완료를 위해 12월로 정함 -정산방법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p> <p>○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사업자(또는 배합사료 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 (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에 제출</p> <p>-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p>	<p>보조사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서 민원소지 방지</p> <p>○정산시기를 배합사료 공급업체의 세금시기와 맞추어 분기별로 처리하여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고자 함</p> <p>○정산시점 익월 15일 까지 정산처리하되, 12월은 사업기간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당해 월에 정산처리토록 함</p> <p>○문안을 명확히 하고자 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Ⅲ.5.《사후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공급업체 등록기준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 사료를 취급하는 사료 회사 또는 대리점)</p> <p>-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 회사(또는 대리점 등)</p> <p>-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p> <p>○등록시기 및 공급범위 -시·도는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업체(사료회사나 대리점 등)를 수시로 등록받을 수 있음</p> <p>-시·도는 등록된 공급 업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타 시·도에 통보(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함</p> <p>-통보받은 시·도에서는 등록된 모든 업체 명단을 관리하고, 1개소(시·도)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전국적으로 사료공급이 가능함</p> <p>○공급업체 등록기준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 사료를 취급하는 사료 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함)</p> <p>-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별표2)</p>	<p>○제재규정에 있는 내용을 배합사료 공급업체관련 내용을 이관하면서 문안 조정</p> <p>○등록한 경우 타시도에 통보토록하는 임의 규정을 의무화함</p> <p>○통보받은 공급업체를 즉시 기록관리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함</p> <p>○공급업체 등록기준을 명확히 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Ⅲ.5. <<제재>></p> <p>88.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p> <p>①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p> <p>○ 지원기준</p> <p>②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p> <p>○ 지원기준</p> <p>90. 고효율 어선유류</p>	<p>즉시, 그에 상응하여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 회사(또는 대리점 등)</p> <p>시·도</p> <p>○ 해당 시·도는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나 대리점 등)를 수시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공급업체를 타 기관에 공문 통보시에는 별도로 재등록을 하지 않는다.</p> <p>○ 등록된 업체는 1개소(시·도) 등록시 전국적 사료공급이 가능함</p> <p>○ 지원기준 : 생분해성 어구와 기존 나일론 어구의 차액만을 지원 *기존 나일론가격 자부담</p> <p>○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 어장에서 총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의 20% 이하로 함(다만 사업신청이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p>	<p>시·도 (삭제)</p> <p>○ 지원기준 : 생분해성 어구와 기존 나일론 어구의 차액 지급 및 <u>자부담중 20%추가 지원</u></p> <p>○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에서 총 사용할 수 있는 부표물량 이하(삭제)</p>	<p>○ 제재규정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사후 관리 규정으로 이관</p> <p>○ 참여 어업인 증가 및 참여 어선 확대를 위하여 자부담중 일부를 추가지원</p> <p>○ 어장에 사용가능한 부표의 물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효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절 감 장 비 지 원 사 업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비에 대한 지원사업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사업(수발기금)을 고효를 어선 유류 절감사업 내역사업 으로 통합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선정)	○임대사업소 선정대상 : 해당 지역내 농업기술 센터, 수협, 민간 임대 업자 등	○임대사업소 선정대상 : 해당 지역내 수협, 수산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민간 임대업자 제외)	○본 사업은 공익적 성격으로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간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소를 운영 하는 것은 부적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소규모(최고 3만원 이내) 부품 무상교체	○소규모(5만원 이하) 무상 교체비 ※5만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현장 어업인의 요구 대로 무상교체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반영 3만원⇒5만원 인상
94.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수산인 안전 공제사업 규모	○예상가입률 : 20%	○예상가입률 : 30%	○수산인 안전공제 판매확대로 인한 예상가입률 확대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 ○국고보조율 변경	○부가보험료 70%	○부가보험료 75%	
97. 농어업기 반정비사업 ○신규작성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 정리 등 개별사업별 시행지침 운용	○농어업기 반정비사업 으로 통합하여 시행 지침 운용	○회계변경 (균특→광특)
98.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 I.사업개요 ○목적, 추진 방향, 법령	○단위사업별로적시 -15개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목적, 사업추진방향	○2010년부터 도입되는 포괄보조금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등 II.2010사업 시행주요 내용 ○지원형태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다름	등에 부합되게 수정 ○계속사업지구는 종전 보조율 적용 ○신규사업지구는 통합 보조율 적용 - 국고 70% 지방비 30%	취지에 맞게 수정
III.표준프로 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관리 -제제	○단위사업별로 다름 ○미 규정 ○관련법에 따름	○내역사업이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사후관리기간을 명시 -차량, 장비 5년 등 *용도변경,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사항 명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허가취소,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등 -농어촌정비법제116조 및 제117조 참조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등 반영
IV.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수요조사, 사업신청	○단위사업별로 신청	○신규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신청 ○신규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사업성 검토신청서는 '10년 3월3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010년부터 도입되는 포괄보조금사업 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강화
○일반농산 어촌개발	○단위사업별로 규정	○포괄보조사업에 맞게 기본적인 사항 규정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신청시 전원마을 조성 부지 100%확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를 2/3 이상 확보(11년 신규지구 부터 적용) ○문화마을, 전원마을 조성 지구의 주택건축 비율이 계획가수구의 60%미만 이거나 마을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해당 시군은 전원마을 신규지구 신청지양(11년 신규 선정지구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원마을조성 사업 관리강화
99.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 ①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배제	○추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축제지원 ○단순 박물관, 홍보관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에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 홍보성 행사 방지 ○박물관, 홍보관의 활용도 증진
○자부담조건	○추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자부담이외 추가 자부담시 인센티브 평가시 가점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추가 자부담 유도
○집행잔액	○추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사업비 가 정산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가급적 당해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단 불용예산이 지자체 세입으로 환수되는 사례 방지 하고 사업비의 효율성 증대
○보조금집행	○추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단은 지자체에서 직접집행 토록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집행 방식 구체화
○취득자산의 관리기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및 부속설비 : 10년 ○주요 기계·장비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자산의 관리 기간을 명확히 하여 관리기관의 혼란 방지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② 향토 산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사 후 관 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사업자가 가공업체인 경우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 ○사후관리기간: 건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주요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처분제한기준: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특혜시비 방지 ○사후 관리의 철저 및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 제한(감사원 지적사항)
102.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건립 지원사업 II.2010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여야 함	-일반 유통업체 등은 생산자단체에 출자, 사업비(자부담) 부담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 이상 점유하여야 함)	-국경위 의견(민간 자본 참여 활성화) 반영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명확히 표현
2.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 <u>최근년도 원예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u> *2011년부터는 원예농산물 매출액 30억 이상으로 상향 예정	-신청자격을 산지유통조직 수준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자제하고, 경영 및 원물 확보 능력이 있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지원
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제한기준 -2년 연속 보완·확장을 지원받은 APC는 2년간 지원제한	○ 지원제한기준 -보완·확장 사업대상 APC는 5년간 지원 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비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제한 기준 강화
	○ 세부시설 및 사업비 기준단가(단위: 백만원/3.3m ²)	○ 건축물류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 저온선별장, 차압식	-물가인상 및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5.지원형태	<p>-건축물류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1.5), 저온선별장(2.2),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3), 차압식 예냉고(3.8), 저온저장고(3.3), 품질검사실(2.0), 전처리시설(저온공조, 3.0)</p> <p>*기준단가와 다른 단가를 적용할 경우 산출단가 및 근거서류 구비하여 제출</p> <p>○ 지원형태 : 국고40%(균특회계), 지방비30, 자부담30</p> <p>*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 사업만 지원가능(국고40%, 지방비60)</p> <p>○ 사업기간 : 1년</p>	<p>예냉고, 저온저장고, 품질검사실, 전처리시설(저온공조),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p> <p>*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 근거(중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p> <p>○ 지원형태</p> <p>-신규 : 국고40%(광특회계), 지방비30, 자부담30</p> <p>-보완 : 국고30%(광특회계), 지방비30, 자부담40</p> <p>*기 지원한 지자체형 APC는 보완·확장 사업만 지원가능(국고30%, 지방비70)</p> <p>○ 사업기간 : 1~2년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p> <p>*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조기 완료할 수 있는 경우 1년 사업으로 추진가능</p>	<p>지원단가 삭제 및 사업비 산출 근거 활용 기준 제시</p> <p>-APC 사업대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보완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하향 조정(40%→30%)</p> <p>-회계변경 : 균특 → 광특</p> <p>-사업비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1~2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p>
Ⅲ. 담당기관 역할	<지자체>	<지자체>	
1. 사업신청 단계	<p>○ 시장·군수는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첨부 후 시·도에 제출 (3.15일)</p>	<p>○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첨부물과 함께 시·도에 제출(매년 3.15일)</p>	<p>-사업추진방식 변경 (지자체 자율편성 → 국가직접편성)에 따라 사업신청절차 변경</p>
2. 사업자 선정 단계	<p><지자체></p> <p>○ 시도지사는 「APC지원</p>	<p>○ 시도지사는 「APC 지원 3원칙」에 따라</p>	<p>-기본요건 충족여부를 서류심사를 통하여</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2.사업자선정 단계	<p>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p> <p>*단, 동 지침의 『사업 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예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처 광특회계 예산신청서 검토시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p> <p>○시·도지사는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안 한도를 최종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보고한 시도별 선정결과를 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p> <p>1.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 작성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성진단일정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시·군에 제출(통보)(3월말)</p> <p>*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실시</p> <p><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성진단은 시·도에서 추천된 모든</p>	<p>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이 충족된 사업자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매년 3.20일)</p> <p><삭제></p> <p><삭제></p> <p><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성진단일정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제출(매년 3.31일)</p> <p>*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 협조로 유통공사에서 실시</p> <p><지자체> ○시·도지사 조정점수(심사기준표 3-6항목)를</p>	<p>확인토록 개정</p> <p>-사업추진방식 변경(지자체 자율편성 →국가직접편성)에</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시·도별 광특회계사업 예산 신청 기한(5월중순) 이전까지 완료</p> <p><지자체> ○ 시·도지사는 <u>사업성 진단결과 및 심사를 선정에 반영하고, 최종 사업신청자 선정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우선 보고(5월말까지) 후, 시·군에 통보</u></p> <p>*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신청자 현황, 신청자 심사 기준표, 사업성 진단 결과 반영현황, <u> 시도별 선정결과, 사업성진단 보고서</u></p> <p>○ <u>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u></p> <p>① 공동마케팅조직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④ <u>농협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협(출하물량 또는 매출액 기준 50% 이상을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경우)의 시설 설치 및 보완</u></p>	<p><u>작성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통보(매년 5.31일)</u></p> <p><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성진단은 시·도에서 추천한 신청자 중 <u>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매년 5월 중순)</u></p> <p>○ <u>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진단결과와 시·도지사 조정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년 6월 초순)</u></p> <p>*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신청자 명세서, 시군별 신청자 현황, 신청자 심사 기준표, 사업성 진단 결과 반영현황, 사업성 진단보고서</p> <p>○ <u>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u></p> <p>① 공동마케팅조직, <u>시군 유통회사</u>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③ <u> 시도별 평가점수 상위순</u></p> <p>※ <u>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의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u></p> <p>· <u>시군 유통회사, 농협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협·영농조합법인·</u></p>	<p>따라 사업선정절차 변경</p> <p>-시군 유통회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APC 시설 우선지원 기준 설정</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p>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p> <p>《설계 및 시설 업체 선정》</p>	<p>*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불가</p> <p>*단, 사업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현저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단순 사업계획 변경일 경우 총사업비의 25%이내까지는 시·도 지사가 변경가능 여부 판단</p> <p><신 설></p>	<p>농업회사법인의 시설 설치 및 보완</p> <p>*출하물량 또는 매출액기준 50% 이상을 시군 유통회사, 농협연합사업단에 출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p> <p>*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p> <p>*단, 사업비 증감조정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사업대상자 10%, 시군 20%, 시도 30%)하나,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상위 기관의 승인 필요(세부사업계획의 대분류 항목 기준)</p> <p>*30%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p> <p>*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p> <p>-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지문실시</p>	<p>-세부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각 기관별로 사업비 조정 범위 등을 위임하여 자율성 확대</p> <p>-설계단계 검증강화로 내실있는 시공기반 마련</p>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심사기준표	<p>○장비업체 선정방법</p> <p>1-1. 규격상품화로 발전 가능성(3)</p> <p>1-2. 공동계산율(12)</p> <p>1-4. 공동사업실적(5)</p> <p>3-2. 부지확보 계획(15)</p> <p><신 설></p>	<p>○장비업체 선정방법</p> <p>*2011년부터는 검증 장비 사용 의무화 예정</p> <p>1-1. 규격상품화로 발전 가능성(5)</p> <p>1-2. 공동계산율(20)</p> <p>1-4. <삭제></p> <p>3-2. 부지확보 계획(10)</p> <p>-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5점</p>	<p>-2011년부터는 검증 장비 사용을 의무화 하여 품질이 보증된 장비를 구입·설치 기반 마련</p> <p>-농관원의 규격출하 사업 축소에 따른 지표 삭제 및 원물 확보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한 지표 개선</p> <p>-“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행안부)”에 따라 자율통합 시군의 사업신청자에게 가점 부여</p>